

2011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브라질

2012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TI 무역투자연구원
Institute for Trade & Investment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DI 한국개발연구원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11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브라질

2011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브라질 사업 기획 및 관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CID)	차문중(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이태희(협력사업실장) 이세원(협력사업실 연구원) 윤재현(협력사업실 연구원)
브라질 사업 수행 및 연구진: 무역투자연구원(IT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허수빈(무역투자연구원, 연구원) 조경원(무역투자연구원, 연구원)
브라질 연구진 및 현지 전문가	최대원(PM, 한국외대 브라질연구센터 소장) 권기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충남미 팀장) 마재신(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이미정(한국외대, 교수) Helson Braga(브라질수출가공지역협회 / ABRAZPE - Associação Brasileira de Zonas de Processamento de Exportação, 협회장)
현지 협력기관	SUDENE(북동부 경제개발기획청) / The Superintendency for the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CZPE(국가수출가공지역위원회) / Brazilian National Council of Export Processing Zones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282-01

ISBN 978-89-8063-645-7
978-89-8063-656-3 (세트)

Copyright © 기획재정부 2012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282-01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1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브라질

2012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DI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ITI 무역투자연구원
Institute for Trade & Investment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Preface

서문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연구원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신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의 일환으로 사업집행총괄기관인 한국개발원(KDI)의 주관 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남미의 거대시장인 브라질을 대상으로 무역투자연구원이 진행한 7개월간의 연구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2011년 KSP의 지정 사업으로 지정되어 ‘브라질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s : EPZ) 개발정책과 실제 : 한국사례와 지식전수의 시사점’을 주제로 하여 과거 한국의 투자 수출 정책, 정부의 역할, 자유무역지대(FTZ) 및 수출가공지역(EPZ)의 법적, 재정적, 행정적 제도 및 운영체제 등을 공유하고, 브라질 EPZ 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습니다.

동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과거 한국의 자유무역지대 경험의 브라질 전수 차원보다도, 브라질 경제의 특수성 내에서 한국정책의 성공 요소의 일반적 전이 가능성 진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브라질 EPZ 정책 이외에도 EPZ 제도를 둘러싼 산업, 무역, 기술, 인력 정책에 대한 제반 연구가 심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향후 對브라질 국책사업 수행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1년 7월 본 연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래 정책자문 수요조사, 현지 협력기관 선정, 주제별 세부 실태조사, 정책 세미나, 중간보고회 및 정책 실무자 연구,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대상국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마련된 최종안은 현지에서 열린 고위정책 대화와 최종보고회를 통해 성공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발간을 앞두고, KSP에 참여하여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의 공유를 위해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준 한국외대 브라질연구센터 소장인 최대원 박사, KIEP 미주팀장인 권기수 박사, 이화여대 국제학부 경제학 교수인 마재신 박사,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초빙연구원인 이미정 박사, 그리고 브라질전문가의 국내연수를 맡아주신 KOTRA의 이정순 차장, 또 모든 단계에서 협조를 하여 주신 대상국의 협력기관 및 현지 전문가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보고서의 중간 및 완성 단계에서 값진 조언을 해주신 검토자와 자문위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연구가 브라질 북동부 지역의 EPZ 개발정책사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함은 물론 향후 KSP 및 여타 對브라질 국책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2년 6월
무역투자연구원 원장
정 동 식

Contents

2011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8
브라질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s) 개발정책과 실제: 한국사례와 지식전수의 시사점	
브라질 KSP 사업의 진행과정	32
브라질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35
총 론	37
제1장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및 수출증진 정책과 대브라질 정책 제언	39
제1절 서 론	40
제2절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	42
제3절 한국의 수출증진정책	47
제4절 정책 제언	54
참고문헌	59
제2장 브라질의 EPZ 개발 정책	62
제1절 서 론	63
제2절 브라질 북동부 지역 수출가공구 개발현황	64
제3절 브라질 EPZ의 법령, 행정조직과 인센티브 및 규정	71
제4절 비교 및 정책적 제언	77
참고문헌	80
제3장 한국의 수출가공구 개발과 브라질에 대한 의미	82
제1절 서 론	83
제2절 배경, 행정조직과 인센티브 및 의무규정	84
제3절 운 영	91
제4절 정책적 제언	98
참고문헌	101

Contents | 표목차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실적	13
〈부표 1〉 2004~11년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14
〈표 1-1〉 Invest Korea를 통한 FDI 유치 규모	43
〈표 1-2〉 신성장동력 관련 중점 유치분야	44
〈표 1-3〉 브라질의 FDI 유치 추이	46
〈표 1-4〉 관세환급의 추세	51
〈표 1-5〉 한국과 브라질의 FDI 정책 비교	55
〈표 3-1〉 연도별 수출 추이	92
〈표 3-2〉 마산수출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 해외투자유입액	93



Contents | 그림목차

[그림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10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 단계: 중점지원 사업의 경우	11
[그림 1-1] 매출, 고용, 수출, R&D에서 외국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45
[그림 2-1] 브라질 EPZ 조성 현황	65

201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¹⁾

제1절 사업 추진배경 및 구성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에 맞춰 정책연구·자문·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협력대상국의 제도 구축(institution building)과 역량 배양(capacity development)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집약적 개발협력사업이다. KSP는 기존 한국 국제개발협력사업²⁾들이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현황 및 정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시작되었다. KSP는 협력대상국과의 지식공유를 통해 정책자문·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가정책자문사업, 한국의 발전경험을 주제·분야별 사례연구(Case Study) 형태로 정리하는 체계화·모듈화³⁾ 국제개발금융기구(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과의 공동컨설팅⁴⁾ 사업 등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본 글의 내용은 2010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국문보고서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성과와 과제' 및 KDI-WBI 공동 연구 *Using Knowledge Exchange for Capacity Development: What Works in Global Practice?* (Seoul and Washington, DC: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World Bank, 2011)에 기초하고 있다.

2)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198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도국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국제개발연찬사업(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IDEP)을 출범시키고, 1987년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1991년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각각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3) 경제발전경험 체계화 사업은 새마을운동 등 대표 정책사례를 '체계화' 하여 정책의 형성과정과 성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3개 세부과제가 추진되었다.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은 협력대상국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제도, 기구, 프로젝트 사례를 '모듈화' 하여 정책자문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2010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12년까지 총 100개 과제가 정리될 예정이다.

4) 국제개발금융기구와의 공동 컨설팅사업은 2011년 세계은행(World Bank) 등 4개 기구와 10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2절 사업 목적과 특성

KSP는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자문과 연수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점증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하에 경제협력 전략국들과의 정책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은 물론, 유·무상 원조 사업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전략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이다.

KSP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협력대상국 경제정책의 개발, 집행 및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지원하고 사업의 결과를 유·무상 원조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정부의 대외정책, 기업의 세계화 전략, 그리고 국내 기관의 국제협력사업과 연계시켜서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한다. 셋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데 기여한다.

아울러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협력대상국의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현지 여건에 맞춰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중심의 자문사업’이다. 이를 위해 과거 정책을 입안했던 고위 정책담당자와 이를 자문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그리고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전문가들이 사업에 참여한다. 둘째, 협력대상국의 개발전략, 고위 정책담당자의 주요 관심사 등 협력대상국의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협력대상국의 고위 정책담당자와 현지 전문가들이 사업에 참여·기여하는 ‘수요 중심의 맞춤형 사업’이다. 셋째, 분야별 연구, 자문, 연수 등을 통해 협력대상국의 정책 수립 및 이행 능력을 제고하는 ‘역량배양사업’이다. 특히 협력대상국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를 한국에 초청하여 관련 부처 및 기관을 방문하고 연수를 받게 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넷째, 제도 구축과 역량 배양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한국과 협력대상국의 정책담당자와 전문가가 매칭이 되어 수차례 양국을 오가며 실태를 파악하고, 상호 발표 및 의견교환을 통해 공동집필을 하게 함으로써 ‘현지 정부의 주인 의식 및 권고안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러한 특징은 기술지원협력, 초청연수, 정책대화 등으로 나뉘는 기존 지식집약적 개발협력사업이 갖는 일방성·일회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 다섯째, 협력대상국의 정책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한 후 다양한 협력수단을 동원하여 이의 실현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개발협력사업’이다. 여섯째, 대상국의 요청에 따른 계속사업을 적극 수용하고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며, ODA 대상국 외에 대외정책상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포함하는 등 ‘유연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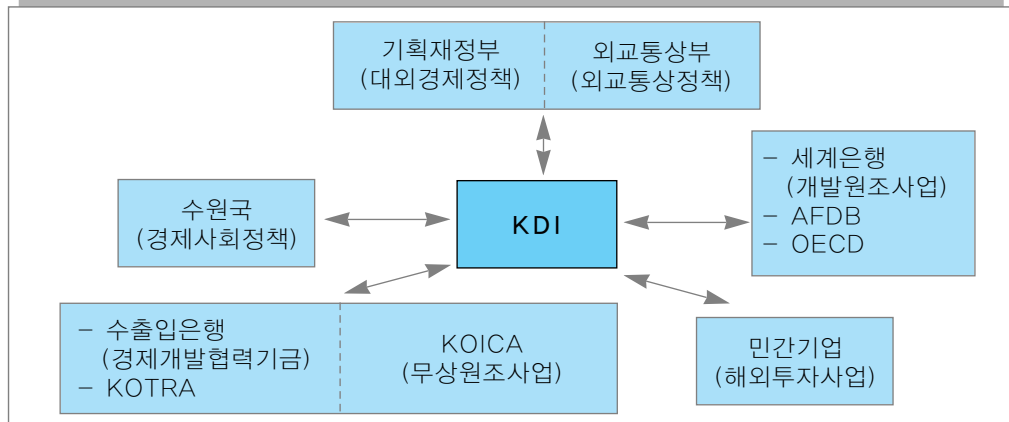
제3절 사업 추진체계와 주체 및 역할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에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총괄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외주기관, 국별 정책자문팀, 국내외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로서 정부의 대외정책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을 선정하고 사업진행을 감독한다. 총괄

기관인 KDI의 국제개발협력센터(CID)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KSP 연구·자문·연수 사업을 기획·실시하고 세부지침 등을 마련한다. 다만, 모든 국별 사업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으며 민간의 자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등을 통해 외주기관을 선정한다. KDI와 외주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별 각 1명의 기획·조정책임자(Program Manager: 관리 PM)와 사업관리자(Program Officer: PO)를 배정하여 정책자문팀을 조직·운영한다. 국별 정책자문팀은 연구책임자(Project Manager: 연구 PM)를 포함한 연구진, 정책자문내용의 신뢰성 제고 및 협력대상국 고위 정책담당자와의 협력 등을 위한 수석 고문, 현지 전문가(Local Consultant)로 구성된다. PM을 포함한 연구진은 정책자문의 세부주제 수에 맞춰 통상 4~6인으로 구성되며, 현지 전문가도 기본적으로 세부주제 수에 맞춰 선정된다.

또한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유관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수출입은행 및 KOTRA와 협력하여 국별 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사무소를 통해 현지 정보 및 현지 활동의 지원을 확보한다.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의 현지 사무소와의 교류를 통해 KSP 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며 관련 인사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외교부 및 해외공관과 KOICA의 현지 사무소를 통해 현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술협력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 여부를 검토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 밖에 국내 민간기관(기업, 단체, NGO)이 실시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해외에 진출한 민간 기업(지사, 상사 등)과도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그림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제4절 사업 내용과 유형 및 진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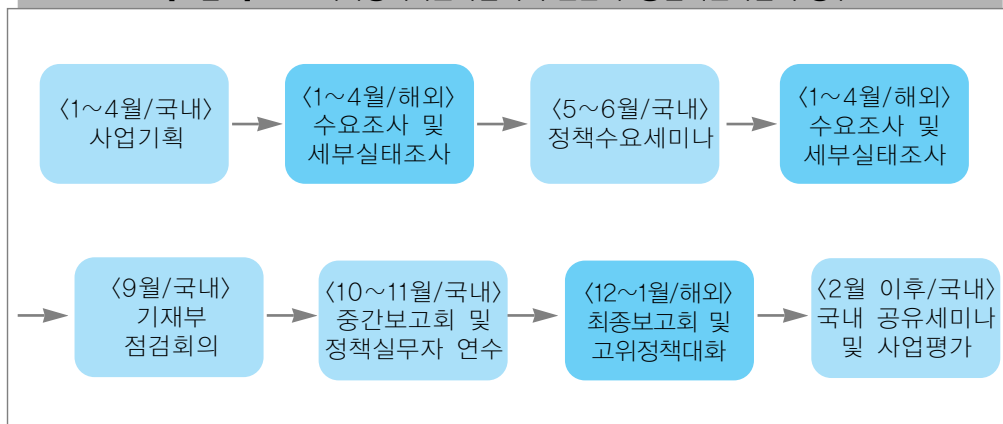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은 사업내용상으로 가) 협력대상국의 종합적인 경제현황과 정책 과제 분석 및 연구와 사례조사, 정책권고안을 제시하는 정책연구(Policy Research), 나) 사업 결과의 적극적인 활용 및 정책입안 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책자문(Policy

Consultation), 다) 정책실무자들의 역량배양(Capacity Development), 라) 사업 결과 전파(Dissemination)로 구성된다. 사업 유형으로는 사업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투입예산 및 전략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중점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일반지원사업이 1~2개 정책분야에서 3~5개 세부주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데 반해, 중점지원사업은 2~3개 정책분야에서 5~10개 세부주제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수행기간도 2+1년으로 운영한다.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은 사업예산이 편성되기 전 해에 실시되는 협력대상 후보국 선정작업과 함께 시작된다. KDI에서는 2008년부터 협력대상 후보국의 (1) 교육수준, 인구, 자원 등 성장잠재력을 반영하는 정량적 변수로 구성된 KSP 지수와 (2) 정책수요와 협력의지, 사업의 연속성, 대외전략상의 중요성 등 정성적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서면수요조사 대상국을 체계적으로 선정해 왔다. 협력대상 후보국들을 대상으로 서면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서 내용의 충실성과 그 국가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KSP 협력대상국이 선정된다. 이처럼 협력대상국 선정의 단계가 완료되면, 국별 정책자문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KSP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8개 단계로 진행되며, 일반지원사업 중 신규사업의 경우 정책수요세미나를 제외한 7개 단계로,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정책수요세미나와 추가 조사 및 현지 보고회를 제외한 6개 단계로 진행된다.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단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 1) 사업기획(1~4월, 국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KSP 사업에 대한 정책 용역 발주와 경쟁 입찰이 이뤄진다. 국별 서면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잠정적인 연구주제와 한국 측 정책자문팀이 선정되며 협력대상국 현지 방문을 준비한다.
- 2)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4월경, 1주간, 현지 방문): 한국 측 정책자문팀이 현지를 방문하여 KSP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력대상국의 정책 수요 및 현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세부주제를 확정한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세부주제와 현지 협력기관

을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아울러 KDI 등 KSP 사업수행기관과 연구진 및 현지 전문가 간의 계약도 체결한다.

- 3) 정책수요세미나(5~6월경, 1주간, 국내 초청): 협력대상국의 고위 정책담당자 및 현지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주제 및 협력대상국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 시간을 갖고 관련 부처 및 기관을 방문한다.
- 4) 추가 조사 및 현지 보고회(7~9월경, 1주간, 현지 방문): 정책분야별로 잠정 연구 결과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협의가 필요할 경우 현지를 방문하여 협력대상국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한다.
- 5) 점검회의(9월경, 국내): 국별 정책자문팀이 국문으로 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 후 기획재정부는 외부 전문가를 토론자로 초빙하여 연구의 중간 결과를 점검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서면으로 대체한다.
- 6)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10~11월경, 1주간, 국내 초청): 협력대상국의 정책담당자 및 현지 전문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잠정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실무자의 역량배양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7)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12~1월경, 1주간, 현지 방문): 영문 최종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고위 정책담당자에게 주요 정책자문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에서 수렴된 현지 의견과 의뢰의 국내 검토자의 의견은 최종보고서의 수정본에 반영된다. 차년도 사업이 계획된 경우 현지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 8) 국내 공유세미나 및 사업평가(2월 이후, 국내): 국내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에게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최종보고서를 배포하는 한편, 정책자문사업의 종료 평가와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제5절 사업의 실적 및 주요 성과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은 2011년까지 총 35개국 300여 개 세부주제에 대한 자문을 완료하였다. 2011년에는 26개국을 대상으로 KDI가 총괄기관으로서 9개국(표 1 참고)을 직접 담당하고, 17개국의 정책자문사업은 경쟁 입찰 등을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였다.

KSP 사업은 2004년 출범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다년간 진행된 중점지원국인 베트남의 경우 2011~20 경제사회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였고, 동 전략은 2011년 1월 제11회 전당대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2009년 캄보디아 KSP에서 다루어졌던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권고안은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2010년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에 관한 연구·자문·연수는 캄보디아 정부의 산업정책 수립과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용평가체계와 감사 및 회계 기준 확립이 강조되었고, 2011년 KSP에서 다루고 있는 국고금 관리시스템 개혁 및 중앙은행 PCR 시스템 기반의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주로 산업·혁신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자문이 이뤄졌는데, 2004년 KSP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육성 및 수출 진흥을 위하여 경제특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있었고, 2007년에는 경제특구 후보지들에 대한 타당성 평가, 2009년에는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 설립 및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실적

연도	국가 수	신규사업	계속·후속 사업
2004	2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2005	2	인도네시아, 터키	-
2006	4	알제리,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2007	5	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가나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2008	8	오만, 도미니카(공), 우크라이나, 모잠비크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터키
2009	10	리비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도미니카(공),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알제리, 가나
2010	15	UAE,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페루, DR콩고,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가나, 아제르바이잔, 도미니카(공)
2011	26	가나, 브라질, 가봉, 남아공, 미얀마, 볼리비아, 스리랑카,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적도기니, 탄자니아, 필리핀, 파나마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UAE,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페루, 도미니카(공), 라오스, 카자흐스탄

운영에 대한 정책자문이 이뤄졌다. 또한 2010년 몽골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예금보험에 관한 자문은 몽골 정부가 관련 법안과 지침을 작성하고 기구 설립을 구상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도미니카 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사업 등이 훌륭한 성과를 보였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수출 진흥에 대한 지식공유가 이뤄져 개발연대 한국의 월레 수출진흥회의와 유사한 민관협의체의 도입, EDCF와 연계한 수출진흥 기반시설의 구축, 한전의 배전개선사업 참여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는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WTO 가입전략, 협상기법, 분야별 후속 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자문이 이뤄졌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2008년 중장기 경제개발전략을 주제로 정책자문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맞게 되자, 원래 주제 외에도 1997~98년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경험에 대한 지식공유가 이뤄졌다. 또한 2009년에는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략에 관한 집중적인 정책자문이 실시되었다.

이 외에도 2006년 알제리에 대한 신용카드시장 활성화에 관한 자문이 협력대상국의 높은 평가를 받았고, 쿠웨이트의 5개년개발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자문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터키의 경우 2008년 국가혁신체계에 관한 공동연구가 진행되어 터키와 한국의 연구진이 서로에게서 배우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10년 사우디 초등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이어 2011년 한국의 EBS 모델을 적용시킨 공교육 및 평생교육 향상 방안에 대한 자문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사우디 정부와 EBS는 교육채널 기획에 대한 협력 및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교류했다.

앞으로도 KSP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자문을 제공하여 협력대상국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표 1〉 2004~11년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중점지원사업	
2011	베트남의 2011~20 경제사회발전전략과 한국의 발전경험 남상우(PM, KDI 국제정책대학원)
	베트남의 세입 분석 및 전망 남상우(PM, KDI대학원)
	베트남과 한국의 국영기업 평가시스템: 비교연구 이원희(한경대)
	베트남의 장기 거시경제 예측모델 구축 지원 김종일(동국대)
	베트남의 공항 현대화 전략: 한국의 경험 공유 이영혁(항공대)
	베트남의 항만 현대화 전략: 한국의 경험 공유 김범중, 전형모(KMI)
	캄보디아의 중소기업, 산업 및 수출 부문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강문수(PM, 前 금융통화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통한 중소기업금융 지원방안 최재령(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의 역량 배양 오성연((주)피앤제이)
	캄보디아 전자산업 육성전략 정진하(정보통신정책연구원)
	캄보디아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장재봉(영남대, 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캄보디아의 수출 다변화 방안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나윤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도네시아의 핵심 정책분야 지원: 공공 재정, 신용인프라, 수자원 관리 권오규(PM, 前 경제부총리, KAIST 금융대학원)
	인도네시아 국고관리 및 예산집행 시스템 개혁방안 - 한국의 경험과 정책 제언 강경훈(동국대)
	인도네시아 정부의 회계 및 결산 제도에 관한 KSP 배득중(연세대)
	인도네시아 재정정보시스템 분석 및 정보전략기획 최용락(송실대)
	PCR 시스템 기반의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방안 이욱재, 전성준(KCB)
	수자원 계획과 재원조달에 관한 지식 교류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고익환(한국수자원공사)
우즈베키스탄 국가혁신시스템의 강화전략 박병원(수석 고문, 前 청와대 경제수석, 전국은행연합회장)	
우즈베키스탄의 과학기술정책 정선양(PM, 건국대)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 김왕동(STEPI)	
우즈베키스탄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기술혁신활동 촉진방안 이종일(남서울대)	
우즈베키스탄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방안 연구 임덕순(CEWIT KOREA)	
수출지향적 중소기업의 육성 김정흠(UST)	

〈부표 1〉의 계속

2011	몽골	몽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현정택(수석 고문, 인하대·무역위원회)	
		자본유출입 급변동하에서의 거시경제 정책조합	조동철(PM, KDI 국제정책대학원)
		자본유입과 외환정책	이항용(한양대)
		예산절차 개선을 통한 재정개혁	이명현(인천대)
		몽골의 부실자산 정리체제 구축방안	신인석(중앙대)
		수익형(BTO) 도로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 개발	김강수(KDI)
	페루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페루 남부경제회랑지역 중소기업 발전 방안: 커피, 알파카,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김호식(수석 고문, 시장경제연구원) 이재훈 (PM, 시장경제연구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 알파카 산업	김문겸(송실대)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 커피 산업	김선우(중소기업연구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 자동차 부품 산업	김주미(중소기업연구원) 김창대(동서대)
		지역특화전략 개발 계획: 중소기업을 위한 협동화사업 및 농공단지 개발 사업	오성연(피앤제이)
	가나	가나 국가 차원의 행정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역량강화 과제	
		권오규(수석 고문, 前 경제부총리, KAIST 금융대학원)	
		가나 공화국의 경제·사회에 대한 이해	이광열(삼정KPMG 경제연구원)
		대한민국의 정부업무 평가	공동성(성균관대)
		가나 M & E의 현황 및 도전과제	윤지웅(경희대)
		가나 M & E 발전방향	공동성, 윤지웅, 박영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반지원사업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 역량강화 및 수출산업 육성 경험전수 사업		
	(연수사업)	이한구(한국수출입은행) 김영석(한국수출입은행) 이기수(한국수출입은행)	

〈부표 1〉의 계속

2011	라오스	라오스 민자 인프라 사업 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윤대희(수석 고문, 前 국무조정실장)	
		라오스의 인프라와 경제개발	장형수(한양대학교)
		라오스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민자 유치 제도	반기로(피닉스자산운용)
		한국 및 주요 주변국의 민자 인프라 촉진제도 비교 및 시사점	반기로(피닉스자산운용) 안우진(법무법인 율촌)
	라오스 민자 인프라 사업 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반기로(피닉스자산운용) 송경순(한국전문가건설그룹)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신용보증 및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김영주(수석 고문, 前 산업자원부 장관)	
		카자흐스탄 산업구조와 중소기업 현황	유명호(한국개발전략연구소)
		한국 신용보증제도의 발전과정과 성과	박용평(신용보증기금)
		카자흐스탄 신용보증제도 현황 및 분석	이종구(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제도 및 신용평가시스템 운용 제언	권의종(PM, 신용보증기금)	
	브라질	브라질 수출가공지역 개발정책과 실제: 한국 사례와 지식전수의 시사점	
		최대원(PM, 한국외대 브라질 연구센터 소장)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및 수출증진 정책과 대브라질 정책 제언	권기수(KIEP) 마재신(이화여대)
		브라질의 EPZ 개발 정책	이미정(한국외대) 최대원(한국외대)
		한국의 수출가공구 개발과 브라질에 대한 시사점	마재신(이화여대)
	가봉	가봉 경제의 다각화: 한국의 시사점	
		김교식(수석 고문, 前 여성부 차관, 前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법인 광장 고문)	
		가봉 산업 다각화 및 중소기업 육성방안	강정모(PM, 경희대)
식량자금 및 농업생산 다각화를 위한 가봉 농업의 성장전략		오현식(지역아카데미)	
가봉 관광산업 발전방안		송재호(제주대)	
가봉 ICT 분야 발전방안	전홍민(한국개발전략연구소)		
남아공	남아공 통합 인프라 구축전략 및 농촌개발계획 수립		
	윤대희(수석 고문, 前 국무조정실장)		
	남아공의 통합인프라계획 및 인간거주분야 정책	김창현(PM, 아랍아프리카센터)	
	농촌발전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	윤호섭(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프라(에너지/수자원과 위생)	홍준희(가천대)	
	인프라(ICT)	배준석(한국개발전략연구소)	
인프라(교통 및 운송)	유명호(한국개발전략연구소)		

〈부표 1〉의 계속

2011	미얀마	미얀마의 경제개발을 위한 우선과제	
		장태평(수석 고문,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미얀마의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공공부문 역량 강화	조동호(PM, 이화여대)
		농업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미얀마 농촌개발계획	김경량(강원대)
		경제발전전략으로서 미얀마의 바람직한 경제특구정책	최용석(경희대)
	볼리비아	볼리비아 중기 재정안정화 방안	
		김영주(수석 고문, 前 산자부 장관, 법무법인 세종 고문) 조성익(PM, 시장경제연구원)	
		중기 재정안정화 방안	류덕현(중앙대)
		공기업 합리화 방안	정연호(시장경제연구원)
	스리랑카	스리랑카의 성장과 금융, 산업 및 수출을 위한 정책 제언	
		김학수(수석 고문,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 이사장, 前 UN ESCAP사무총장)	
		스리랑카의 수출진흥정책	한홍렬(한양대) 이시욱(명지대)
		스리랑카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전략	강문성(고려대)
		스리랑카의 중소기업정책	유진수(숙명여대)
	에콰도르	전략산업의 수출촉진정책 수립 및 역량강화	
		서장원(수석 고문, 국제경제연구원 이사장, 前 KIEP 부원장)	
		글로벌 시장수요 및 에콰도르 산업 잠재력에 기반한 전략산업의 선정	한홍렬(PM, 한양대) 이시욱(명지대)
		에콰도르 수출촉진정책의 현황 및 평가	이호생(명지대) 송유철(동덕여대)
		전략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제안	한홍렬(PM, 한양대) 강인수(숙명여대)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소규모 기업의 육성방안 및 아디스아바바 교통시스템 개선	
윤대희(수석 고문, 前 국무조정실장) 송경순(고문, 한국전문가건설링그룹) 장형수(PM, 한양대학교)			
에티오피아 소규모 기업의 육성방안		원용걸(서울시립대)	
		아디스아바바 교통시설 개선	박동주(서울시립대)

〈부표 1〉의 계속

2011	온두라스	ICT 마스터플랜	
		신국환(수석 고문, 前 산자부 장관) 최준영(고문,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e-Government	장승관(한국산업기술대)
		ICT Awareness	노성호(한국산업기술대)
		ICT HRD	최성연(한국산업기술대)
		ICT Legal Framework	이훈, 윤원창(한전KDN)
		ICT Standardization	김준수(한국산업기술대)
		ICT Infrastructure	윤창원(한국산업기술대)
	Business Awareness	윤종선(한국산업기술대)	
	적도기니	Horizon 2020의 적도기니 국가경제개발	
		김교식(수석 고문, 前 여성부 차관, 前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법인 광장 고문)	
		적도기니 관광산업 개발	송재호(PM, 제주대)
		적도기니 농업 개발	오현석(지역아카데미)
		적도기니 수산업 개발	이주(국립수산과학원)
	적도기니 금융 개발	전홍민(한국개발전략연구소)	
	탄자니아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독립 예금보험기구의 설립 및 역량강화 지원	
		이승우(수석 고문, 예금보험공사장, 前 금융위 부위원장)	
		탄자니아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 현황	오승곤(예금보험공사)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예금보험제도 변화 추이	오승곤(예금보험공사)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 현황 및 문제점	오승곤, 김택동 (예금보험공사)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오승곤, 김택동 (예금보험공사)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 수립	김경호(PM, 예금보험공사) 김택동(예금보험공사)
	필리핀	필리핀의 국가재정정보 시스템 강화 전략	
		강태혁(수석 고문, 한국은행 상근감사) 최용락(PM, 송실대)	
		필리핀의 재정관리제도의 개혁	배득중(연세대)
		한국과 필리핀의 발생주의 회계시스템	강인제(재정공학연구소)
		국가재정관리정보시스템 분석	최용락(PM, 송실대)

〈부표 1〉의 계속

2011	알제리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지원	
		전홍택(PM, KDI)	
		부문별 통합계획 수립	박명호(한국외대) 오완근(한국외대)
		중기 재정운용계획 개혁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경제운영방식 개선	
	국토개발계획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주요 ICT 정책과제 자문	
		이태희(총괄 PM, KDI) 오광석(연구 PM,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의 e-Literacy 발전 경험과 시사점	오광석(한국인터넷진흥원) 박원재(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의 국가 GIS경험과 양국 협력 방안	정문섭(국토연구원)
		한국의 그린 ICT 발전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신재식(NIPA)
		한국의 정보보호 역량개발 경험과 시사점	김정덕(중앙대) 김영준(한국인터넷진흥원)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	
		이형구(수석 고문, 前 노동부 장관)	
		한국의 지식경제 전환 과정과 교훈	서중해(PM, KDI)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단지의 비전 및 역할: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임덕순(CEWIT KOREA)
		한-사우디 기술협력과 중소기업 육성방안	이상목(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우디아라비아 공교육 및 평생교육 향상: 한국의 EBS모델 적용	정현숙(EBS)
	파나마	파나마의 농산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오세익(수석 고문, 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우제량(PM, 시장경제연구원)			
파나마 농식품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임정빈(서울대)	
수출 물류		김성훈(충남대)	
수출 농산물 식물검역		정연호(시장경제연구원)	
제도 및 프로그램		김성훈(충남대)	

〈부표 1〉의 계속

중점지원사업			
우즈베키스탄: 혁신기반 및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현정택(수석 고문, 무역위원회 위원장) 이덕훈(총괄 PM, 서강대)			
혁신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한국의 국가혁신체제와 우즈베키스탄에의 시사점	정선양(섹터 PM, 건국대)	
	민간부문의 혁신활동 증진기제: 한국의 기술이전활동 경험 및 시사점	이종일(남서울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과 산학연 연계 활성화	임덕순(경기개발연구원)	
수출진흥 및 산업개발 전략	수출촉진정책과 수출금융: 한국의 경험이 주는 교훈	박정수(섹터 PM, 서강대) 허정욱(수출입은행)	
	수출 중심 산업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허정(서강대)	
	전자통관시스템의 도입: 나보이 경제특구를 Pilot Program으로	김종호(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 영연합회)	
거시경제 안정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통화정책 운용체계: 한국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조동철(섹터 PM, KDI 국제정책대학원)	
	중기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한국의 경험	김홍균(서강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전망 및 통계역량 개선	이항용(한양대)	
2010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중기 개발계획을 위한 핵심과제		
	권오규(총괄 PM, 카이스트 금융전문대, 前 부총리)		
	금융자본시장	인도네시아의 외환시장 안정성과 민간외채 관리 개선	박대근(섹터 PM, 한양대)
		회계 및 감사 시스템 발전방안 및 회계 인적자원 개발	김진태(삼정 KPMG)
		소비자 금융 선진화를 위한 개인신용평가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준(한국크레딧뷰로)
		중소기업 신용정보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류중현(한국기업데이터)
	에너지 관리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	인도네시아의 에너지절약 정책 방향	강승진(섹터 PM, 한국산업기술대)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정책	김수덕(아주대)
		인도네시아의 물관리정책 방안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고익환(한국수자원공사)
	무역 · 투자	인도네시아의 FDI 촉진전략	최병일(섹터 PM, 이화여대)
		싱글윈도우를 통한 인도네시아 무역 활성화	김종호(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 영연합회)
		인도네시아 SME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송정석(중앙대)

〈부표 1〉의 계속

2010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성장과 금융, 산업 및 무역 부문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강문수(PM, KDI, 前 금융통화위원)		
거시경제정책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평가 및 중장기 성장전망	한진희(섹터 PM, KDI)
	성장궤도상의 주요 과제: 구조전환과 정부의 역할	김종일(동국대)
금융정책	중소기업과 정미소 육성을 위한 대출 활성화	손욱(섹터 PM, KDI 국제정책대학원)
	캄보디아 소액보험의 발전방안	유경원(상명대/보험연구원)
	캄보디아 신용보증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진용주, 김효의(신용보증기금)
산업기술 개발정책	기업 관리 경험 공유: 공장 인허가 및 검사 절차	최영락(섹터 PM, 고려대)
	캄보디아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선 및 강화	류경임(한국표준협회)
무역정책	수출 진흥방안	차문중(섹터 PM, KDI)
	수출 진흥절차의 역량 배양	나윤수(코트라)
2010 베트남: 베트남의 2011~20 경제사회발전전략과 한국의 발전 경험		
윤대희(수석 고문, 前 국무조정실장) 남상우(PM, KDI School)		
개발전략 및 국가 역할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구조조정 전략	김종일(동국대)
	베트남의 공공부문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	김동욱(서울대)
	베트남 공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남일총(섹터PM, KDIS)
거시경제 운영 및 금융정책	베트남의 조기경보시스템구축	이항용(한양대) 김명직(한양대)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김동환(금융연구원)
	베트남의 협동조합 법률체계 개선방안	김준경(섹터 PM, KDIS)
기업효율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기업 혁신능력 강화	서중해(섹터 PM, KDI)
	베트남 기업의 경쟁력과 HRD 전략	진미석(한국직업능력개발원)
	특별 경제구역 발전을 위한 재평가	정형곤(KIEP)

〈부표 1〉의 계속

정규 및 계속 사업																							
2010	<p>한국의 8대 ICT 발전경험과 아부다비의 3대 ICT 정책과제</p> <p>오해석(수석 고문, IT 특보) 이태희(총괄PM, KDI)</p>																						
	<table border="1"> <tr> <td>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의 변천</td> <td>박성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td> </tr> <tr> <td>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td> <td>지경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td> </tr> <tr> <td>한국정보통신기술 법·제도</td> <td>권현영(광운대)</td> </tr> <tr> <td>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 인적자원 개발</td> <td>박성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td> </tr> <tr> <td>유관산업의 경제성장과 정보통신기술의 역할</td> <td>김창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td> </tr> <tr> <td>디지털 사회</td> <td>고윤석 (한국정보화진흥원)</td> </tr> <tr> <td>한국의 녹색 정보통신기술</td> <td>이효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td> </tr> <tr> <td>한국의 정보보호활동</td> <td>윤재석 (한국인터넷진흥원)</td> </tr> <tr> <td>아부다비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지원</td> <td>윤재석 (한국인터넷진흥원)</td> </tr> <tr> <td>에미리트 무선 브로드밴드 구축지원</td> <td>김창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td> </tr> <tr> <td>아부다비 정보통신기술 R&D 센터 구축지원</td> <td>지경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td> </tr> </table>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의 변천	박성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	지경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 법·제도	권현영(광운대)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 인적자원 개발	박성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유관산업의 경제성장과 정보통신기술의 역할	김창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 사회	고윤석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의 녹색 정보통신기술	이효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의 정보보호활동	윤재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아부다비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지원	윤재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에미리트 무선 브로드밴드 구축지원	김창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아부다비 정보통신기술 R&D 센터 구축지원	지경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의 변천	박성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	지경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 법·제도	권현영(광운대)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 인적자원 개발	박성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유관산업의 경제성장과 정보통신기술의 역할	김창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 사회	고윤석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의 녹색 정보통신기술	이효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의 정보보호활동	윤재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아부다비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지원	윤재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에미리트 무선 브로드밴드 구축지원	김창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아부다비 정보통신기술 R&D 센터 구축지원	지경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우디아라비아 (정규)	<p>사우디 정부의 경제 우선분야 개발을 위한 정책사문</p> <p>이형구(PM, 前노동부 장관) 김동석(KDI)</p>																						
	<table border="1"> <tr> <td>경제개발계획 집행의 효율성 강화</td> <td>이형구(PM, 前노동부 장관) 김동석(KDI)</td> </tr> <tr> <td>사우디아라비아의 초등교육 개선방안</td> <td>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차문중(KDI)</td> </tr> <tr> <td>원자력에너지 개발</td> <td>하재주(한국원자력연구원)</td> </tr> <tr> <td>스마트그리드 시스템 소개</td> <td>김창섭(경원대학교)</td> </tr> </table>	경제개발계획 집행의 효율성 강화	이형구(PM, 前노동부 장관) 김동석(KDI)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등교육 개선방안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차문중(KDI)	원자력에너지 개발	하재주(한국원자력연구원)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소개	김창섭(경원대학교)														
	경제개발계획 집행의 효율성 강화	이형구(PM, 前노동부 장관) 김동석(KDI)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등교육 개선방안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차문중(KDI)																					
	원자력에너지 개발	하재주(한국원자력연구원)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소개	김창섭(경원대학교)																						
몽골 (정규)	<p>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전략과 예금보험제도</p> <p>현정택(수석 고문, 무역위원회)</p>																						
	<table border="1"> <tr> <td>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절차적 개선방안</td> <td>김강수(PM, KDI)</td> </tr> <tr> <td>몽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운용 절차적 개선방안</td> <td>김형태(KDI)</td> </tr> <tr> <td>몽골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td> <td>이재연(금융연구원) 오승곤(예금보험공사)</td> </tr> </table>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절차적 개선방안	김강수(PM, KDI)	몽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운용 절차적 개선방안	김형태(KDI)	몽골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이재연(금융연구원) 오승곤(예금보험공사)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절차적 개선방안	김강수(PM, KDI)																					
	몽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운용 절차적 개선방안	김형태(KDI)																					
몽골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이재연(금융연구원) 오승곤(예금보험공사)																						

〈부표 1〉의 계속

2010	쿠웨이트 (계속)	5개년 개발계획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정책자문	
		조원동(수석 고문, 前 국무조정실 차장)	
		5개년 개발계획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SCPD 시스템 개혁	임영재(PM, KDI)
		거시예측모형 개발 자문	백용기(상명대)
		교육시스템 개혁 및 정책제언	정기오(한국교원대)
		전략기획 국가기구의 개혁을 위한 정책제언	박헌주(KDI School)
	외주 사업		
	가나 (계속)	가나의 국가재정운용 혁신방안-국가예산회계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윤대희(수석 고문, 前 국무조정실장)	
		예산·회계 제도의 의의 및 관리의 중요성	박용만(PM건국대)
		예산·회계 시스템	최용락(송실대) 임동진(대원 C&S)
		가나의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박용만(PM건국대) 최용락(송실대) 임동진(대원 C&S)
	아제르바이잔 (계속)	아제르바이잔 원조조정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정보체제 구축 및 기업가 정신제고(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윤대희(수석 고문, 前 국무조정실장)	
		원조조정 역량 강화	송경순(PM, 한국전문가컨 설팅그룹) 남기찬(서강대)
		기업가 정신 함양	백낙기(한국산업기술대)
	카자흐스탄 (계속)	카자흐스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발전 전략(한국개발전략연구소)	
		김영주(수석 고문, 前 산업자원부 장관)	
		카자흐스탄의 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	신상협(경희대)
		카자흐스탄의 기업발전을 위한 혁신 전략	정연승(한국개발전략연구소)
	카자흐스탄의 종합적 기업발전을 위한 전략 로드맵	전승훈(PM, KDS) 이은경(KDS)	
라오스 (정규)	라오스의 위기 시 거시경제 안정화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윤대희(수석 고문, 前 국무조정실장)		
	라오스의 거시경제정책 수행 메커니즘과 NERI의 역할	장형수(PM, 한양대)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화정책 내용이 라오스에 주는 시사점	방만기(연세대)	
	한국의 위기 시 거시경제 안정화정책 수행 메커니즘 평가 및 라오스에 주는 시사점	원용걸(서울시립대)	

〈부표 1〉의 계속

2010	DR콩고 (정규)	혁신적인 국가개발체제 및 신발전전략수립 방안 (한국개발전략연구소)	
		김대유(수석 고문, 前 청와대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콩고 민주공화국의 혁신적 국가개발계획 수립 전략	정재호(PM, S&R 경영경제연구원)
		국가 전략기획기관 설립·운영 방안 모색	이경규(한국개발전략연구소)
	페루 (정규)	CEPLAN과 통합정보시스템 (시장경제연구원)	
		김인호(수석 고문, 前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CEPLAN, SINAPLAN 그리고 통합정보시스템	이재훈(PM, 시장경제연구원) 주재훈(동국대)
	도미니카공화국 (계속)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진흥을 위한 수출신용기구 설립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김동수(수석 고문, 한국수출입은행) 김영석, 이기수(한국수출입은행)	
	2009	중점지원사업	
베트남의 2011~20 경제·사회 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정책자문			
남상우(총괄 PM, KDI 국제정책대학원)			
거시경제정책		장기 성장동력 확보 및 성장 경로상의 주요 과제	한진희(SPM, KDI)
금융·재정 정책		금융·자본 시장 개방을 위한 로드맵과 환율 모니터링 시스템	이항용(한양대)
		신용시장 제도화에 있어서의 상호금융의 역할	김명직(한양대)
		신용보증기금 기능 강화 및 수출금융 지원	신인석(중앙대)
		공간계획체계	김현식(SPM, 국토연)
국토이용정책		도시개발정책	박은관(국토연)
		토지이용정책	서순탁(서울시립대)
		R&D 비전과 로드맵 작성	신태영(STEPI)
산업기술 개발정책		기업의 혁신능력 강화	서중해(SPM, KDI)
		산업 클러스터	임덕순(경기연)
		국영기업 효율성 제고	남일총(SPM, KDIS) 김우찬(KDIS)
기업정책		인력개발 및 산업구조 개선 관련 기업의 역할	최영락(고려대)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관계 강화	김현중(중기연)

〈부표 1〉의 계속

정규 및 계속 사업		
우즈베키스탄 (정규)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설립 정책자문 현정택(수석 고문, 무역위원회)	
	우즈벡 내수시장과 나보이 FIEZ 연계강화전략	이시욱(KDI)
	투자진흥 전략 및 투자진흥 시스템	박두규(KOTRA)
	나보이 FIEZ 성공을 위한 운영시스템 및 정책	정형곤(KIEP)
	우즈베키스탄 법체제에서 FIEZ 특별법의 지위	Shadikhojaev Sherzod(KIEP)
인도네시아 (정규)	인도네시아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 권오규(PM, KAIST)	
	경쟁법, 경쟁정책의 발전	신광식(김앤장)
	유동화 및 파생상품시장 구축 방안	김필규(자본시장연)
	금융감독 강화	송준혁(KDI)
	중기 재정계획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수립과 운영	박노옥(조세연)
캄보디아 (정규)	마이크로파이낸스와 민간투자사업 개발	
	마이크로파이낸스와 민간투자사업	강문수(PM, KDI)
	캄보디아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의 안정적 자금흐름 확보	박창균(중앙대)
	농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역할	연대훈(KDI)
	캄보디아의 PPP 사업을 위한 법적·절차적 개선방안	김강수(KDI)
캄보디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자원조달 개선방안	허석균(KDI)	
카자흐스탄 (정규)	카자흐스탄의 산업혁신개발계획 이형구(수석 고문, 前 노동부 장관)	
	카자흐스탄의 경제 및 발전 전략	임원혁(PM, KDI)
	발전경험 비교: 호주, 캐나다 등	김종일(동국대)
	경제개발계획: 한국의 경험 소개	이형구(前 노동부 장관)
	산업별 분석 I: 건축자재 및 농기계	송병준(산업연)
	산업별 분석 II: 자동차(상용차)	장하원(고려대) 박준경(前 KDI) 모세준(하나금융연)
	산업별 분석 III: 농업	윤호섭(농촌연)
도미니카 공화국 (계속)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기반시설과 전력체계 개선	
	전력체계 개관과 현안과제	임원혁(PM, KDI)
	발전부문의 문제점과 해법	유갑준(한진)
	배전부문의 문제점과 해법	박중신(한진)
	EDCF와 연계된 수출기반시설과 확충	최성규(수은)
우크라이나 (계속)	우크라이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전략	
	에너지효율 향상 전략	박희천(PM, 인하대)
	우크라이나 석탄 이용기술 개발전략	김재호(예기연)
	풍력 개발 전략	김현구(예기연)
	바이오연료 개발 전략	오유관(예기연)

2009

〈부표 1〉의 계속

2009	가나 (정규)	가나의 예산과 국가발전계획의 연계방안 -한국의 경험과 가나에의 정책적 시사점(한국개발전략연구소)	
		가나의 국가발전계획과 예산	박화수(KDS) 김진영(건국대)
		가나의 재정정책	박용만(건국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과 예산편성에 관한 경험	이원희(한경대)
		가나와 한국의 재정운영의 비교	박화수(KDS) 김진영(건국대)
		예산과 국가발전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정책권고	연구진 공동
	알제리 (계속)	알제리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알제리 개발은행의 역량 제고 방안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알제리의 경제상황과 FNI-BAD 추진배경	한재준(인하대)
		한국산업은행 사례	강석인(한영회계법인)
		FNI-BAD 역량 제고 방안	한재준(인하대) 유명호(KDS) 박용수(산은*자문역)
		정책제언	연구진 공동
	리비아 (정규)	리비아의 공공부문 개혁과 고용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방안 (한국개발전략연구소)	
		리비아의 기술 수요 예측	전홍민(KDS)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정책	장자순(前 사단법인 국경없는 교육사회, 現 국무총리실)
		직업교육훈련 체계 및 운영	엄준철(한국폴리텍)
2008	도미니카공화국 (정규)	수출진흥 및 수출역량 배양	
		수출진흥정책과 추진체계 확립	임원혁(PM, KDI)
		교육 및 직업훈련 발전방안	이병훈(중앙대)
		수출발전을 위한 무역산업구조 분석	김종일(동국대)
		수출금융 지원과 수출입은행 설립 지원	최성규(수출입은행)
	오만 (정규)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김인호(수석 고문)
		전략산업개발을 위한 민관협력	이재훈(PM, 시경연)
		오만 경제현황과 미래 비전	이태희(KDI)
		전략산업, 제도적 기반 및 국가개발 전략	최성호(경기대)
	기술이전과 정착화 방안	박천홍(기계연)	

〈부표 1〉의 계속

2008	우크라이나 (정규)	중장기 경제개발전략	
		권오규(수석 고문)	
		중장기 경제개발전략 검토	조동호(PM, 이대)
		수출진흥정책	최용석(경희대)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함준호(연세대)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개발	허석균(KDI)
	아제르바이잔 (후속)	WTO체제 수용과 이행을 위한 후속 이슈	
		일반 협상기술 분야	성극제(PM, 경희대)
		농업분야	임정빈(서울대)
		수입 및 관세 분야	안덕근(서울대)
		수출진흥정책 분야	이시욱(KDI)
	터키 (후속)	국가기술 및 혁신능력 개발 모델	
		개발전략 및 혁신체제 비교	서중해(PM, KDI)
		기술, 기업가정신, 인큐베이션	강병수(충남대)
		클러스터 및 산업고도화 정책모델	임채성(건국대)
		산학협력 강화방안	양준모(연세대)
	모잠비크 (정규)	모잠비크의 농업생산성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한국개발전략연구소)	
		모잠비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접근전략	김석동(공주대)
		농업기술의 혁신과 그 전파방안	김석동(공주대)
		농업생산성 혁신을 위한 농지이용의 효율화 방안	김정부(친환경농업연구원)
		농업생산 및 분배의 지원을 위한 농산물 유통의 개선	윤호섭(연세대)
		농업금융 접근성 강화 방안	김진우(KDS)
	알제리 (정규)	알제리 전자결제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카드 거래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알제리 전자결제시스템의 현황 및 주요 이슈	이장혁(고려대)
		전자결제와 경제발전	이장혁(고려대)
		국내외 전자결제시스템 사례 분석	나준모(BC카드) 전홍민(KDS) 정대성(금결원)
		알제리 전자결제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연구진 공동
	베트남 (계속)	수출금융 관련 운영지원 및 신용보증제도 자문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신용기구 운영지원/수출보험제도 도입 자문		손승호(수은)	
국내 개발금융 운영지원		손승호(수은)	
신용보증제도 구축자문		박찬기(신보)	

〈부표 1〉의 계속

2007	쿠웨이트 (정규)	국가발전계획 수립 및 집행자문	
		현정택(수석 고문)	
		쿠웨이트 5개년 개발계획을 위한 정책제언	임영재(PM, KDI)
		교육 및 인적자원 제도의 개혁	우천식(KDI)
		국가발전전략 수립 · 집행의 정치경제	박헌주(KDI School)
		노동시장 개혁	이종훈(명지대)
	쿠웨이트의 재정 및 예산제도 개혁	현진권(아주대)	
	가나 (정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발전기반 구축	
		김인호(수석 고문)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	전승훈(PM, KDS)
		가나의 법 · 규제 환경 개선	이재훈(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의 자본과 기술 접근성 향상	송치승(중소연) 박재필(군산대)
	인력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강기원(서원대)	
	아제르바이잔 (정규)	WTO 가입전략	
		WTO 가입협상의 서비스분야 주요 이슈	성극제(PM, 경희대)
		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 분석	안덕근(서울대)
		WTO 가입과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이재민(한양대)
		수출진흥을 통한 산업다각화 방안	이시욱(KDI)
	우즈베키스탄 (계속)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KIEP)	
		한국의 경제특구 경험과 시사점	이상철(성공회대)
우즈베키스탄 주요 특구 후보지 평가		이정협(STEPI) 박복영(KIEP)	
경제특구 설립을 위한 제도적 마련		정형곤(KIEP)	
특구정책과 국제규범과의 조화		Shadikhojev Sherzod(KIEP)	
우즈베키스탄 경제환경과 경제성장 전망		Akhmedov, Sadikov, Saidakhmedov, Taipova (CSER)	
베트남 (계속)	베트남 개발은행 운영 자문 및 신용보증기금 설립방안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베트남 개발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지식 전수	수승호(수은)	
	베트남 신용보증기금 설립방안 제시	박찬기(신보)	
2006	캄보디아 (정규)	캄보디아 재정적자 보전 및 생명보험 도입방안	
		캄보디아 재정수지 예측 2007~11	유일호(PM, KDI 대학원)
		정부채 발행을 통한 정부재정적자 보전방안	박종태(주메인스트림)
	생명보험업 도입에 따른 정책 및 구조	김석영(보험개발원)	

〈부표 1〉의 계속

2006	알제리 (정규)	알제리 소비자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신용카드 시장을 중심으로	
		신용카드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박창균(PM, 중앙대)
		알제리 신용카드 결제망 구축방안	나준모(BC카드)
		알제리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구축방안	신인석(중앙대)
		알제리 신용카드업의 감독 및 규제 방안	강동수(KDI)
2006	베트남(계속)	베트남 수출신용기구 설립 및 운영지원	
		손승호(수은)	
2006	인도네시아(계속)	인도네시아 채권시장 개발관리 자문 및 연수	
		기재부,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거래소	
2005	터키 (정규)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 본 터키 경제의 발전전략	
		민간부문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좌승희(PM, 경기연)
		기술개발과 혁신시스템 정책	이원영(서울대)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행정개혁과제	박진(KDI 대학원)
		산업화와 인적자원 개발정책	김관영(한양대)
2005	인도네시아 (정규)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기관의 개혁	
		양수길(PM, 국가경영전략연구원)	
2005	인도네시아 (정규)	인도네시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지원	오창석(국제금융센터)
		인도네시아 수출기업 육성과 외자유치 방안	김도훈(산업연구원)
		인도네시아 채권시장 개발방안 연구	박종태(주메인스트림)
		인도네시아 국제, 관세, 예산 공무원 교육제도 개선방안	유일호(KDI 대학원)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	이재민(輸銀연구소)
2004	베트남 (정규)	베트남의 개방경제체제하에서의 주요 정책과제	
		최종찬(수석 고문, 전 장관) 송희연(PM, 인천대)	
		베트남 공기업 개혁의 진행과 과제	강신일(한성대)
		세계무역체제로의 통합: WTO 가입 과제	이재민(한양대)
		베트남의 인적자원개발 전략	이종훈(명지대)
		베트남의 거시경제 안정화	백응기(상명대)
		베트남의 외자조달방안-FDI 중심으로	손승호(수은)
2004	우즈베키스탄 (정규)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육성 및 수출촉진방안	
		이경운(수석 고문, 전 대우차 회장), 이영기(PM, KDI 대학원)	
2004	우즈베키스탄 (정규)	우즈베크의 산업개발과 수출진흥 정책	김도훈(산업연)
		우즈베크의 개발모델과 한국의 개발경험	고일동(KDI)
		우즈베크 산업화 과정의 거시금융정책	박원암(홍익대)
		한국 사례로 분석한 우즈베크 재정개혁	유일호(KDI 대학원)
		산업정책과 무역자유화정책의 조화전략	안덕근(서울대)

브라질 수출가공지역 (Export Processing Zones) 개발정책과 실제: 한국사례와 지식전수의 시사점

- 브라질 KSP 사업의 진행과정
- 브라질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 총 론

제1장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및 수출증진 정책과
대브라질 정책 제언

제2장 브라질의 EPZ 개발 정책

제3장 한국의 수출가공구 개발과 브라질에 대한 의미

브라질 KSP 사업의 진행과정

최 대 원 (한국의국어대학교)

브라질은 최근 신흥국가 중에서도 년 7%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도 국토 균형 성장 면에서는 많은 개선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GDP 규모가 세계 5위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동부지역에서는 산업시설 및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이 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경제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최근 북동부지역에 대한 경제발전정책의 일환으로 9개 수출가공지역(Zona de Processamento de Exportacao : EPZ)을 설정하여, 이중 Pecém 과 Suape 두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 하고 있다. EPZ 수행 경험이 부재한 북동부개발청(SUDENE)은 한국 측에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 운영경험에 대한 Knowledge Sharing을 요구한바, 이에 대한 한국의 경험이 정책, 제도, 운영 및 경제효용효과 유발 면에 있어서 유효한 경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사업은 2010년 브라질 북동부개발청(SUDENE)의 요구에 따라, 한국의 EPZ개발경험 및 정책에 관한 지식전수를 목적으로 2011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총 7개월에 걸쳐 추진되었다. 현재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PZ개발정책은 (1) EPZ관련 연방정부의 법, 제도 정립 및 검토, (2) 각 주의 EPZ개발정책 수립, (3) 각 시의 EPZ육성사업 투자유치 및 운영방식 개발전략 등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한 연방정부차원의 EPZ관련법과 국가EPZ위원회 구성 및 23개 주 EPZ개발계획은 수립되어있으나, 각 시의 EPZ투자 및 운영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특히 북동부 각 9개 시의 EPZ마다 잠재 및 전략투자의 분야가 일차산품 가공부터 지식산업에 이르기까지 상이하며, 실제 투자이행에 대한 기대치 및 전망은 각 주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KSP사업은, SUDENE의 요구에 따라, (1), (2)항에 중점을 두고 2011년 지식전수사업을 진행하였다. 즉, 브라질 SUDENE의 요구에 부합하여, (3)항이 전개될 수 있는 필수적인 Framework를 제공하고, 정책자문을 통한 기본적인 법, 제도의 개선을 유도하는데 사업의 주요 목적을 두었다.

동 KSP사업은 SUDENE 사무국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다음과 같은 10단계 작업을 거쳐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본격적인 사업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1월에 걸쳐 6개월 간 수행되었다.

- (1) 수혜국의 KSP사업 정식 요청(2010년) : 브라질 북동부개발청(SUDENE)은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지식전수 사업을 요청하였다.
- (2) 실사단 방문(2011년 4월): KDI KSP 실사단이 SUDENE측을 방문하였다.
- (3) 공개입찰 및 연구진 구성(2011년 7월): 공개입찰을 통해 최대원 박사(PM, 한국외국어대학교 브라질연구센터 소장) 및 이화여대 마재신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권기수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미정 박사 등이 참여하는 연구진이 구성되었다. ITI가 동 사업의 회계 주관을 담당하고 KIEP 및 KOTRA가 각각 연구 및 연수협력기관으로 참여하였다.
- (4) PM의 수요조사(2011년 8월): PM이 현지 수요 조사를 위해 SUDENE 사무국 및 Pernambuco주에 위치한 Suape산업단지와 Jaboatao EPZ개발지, 그리고 Ceara주지사의 초청으로 Pecém의 EPZ개발지를 방문 시찰하고, 브라질리아의 EPZ국가위원회(CZPE)의 사무총장과 수요조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5) 연구 분야 합의(2011년 9월): SUDENE측과 수요조사에 대한 수렴작업을 진행, (a) 한국과 브라질의 투자유치정책, 수출진흥정책의 비교, (b) 브라질 북동부지역의 EPZ개발현황에 대한 실사적 분석 및 CZPE를 중심으로 한 법, 제도 등에 관한 한국과의 비교분석, (c) 한국과 브라질의 EPZ개발정책 및 운용방식에 대한 비교분석 등을 골자로 하는 연구 분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 (6) MOU체결(2011년 10월): 이를 토대로, KDI와 SUDENE간의 MOU가 체결되고, 이에 따라 최대원 PM과 SUDENE의 Dr Guilherme가 쌍방의 사업추진 및 협력책임자로 지정되었다. 10월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 (7) 브라질연수단 방한 - 중간보고회, Roadshow 및 산업시찰(2011년 11월) : MOU에 따라, 브라질 북동부의 9개 주 차관급으로 구성된 10인의 연수팀이 구성되고, 이들의 방한이 11월말부터 12월초 1주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방한 첫날, 한국연구진의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열렸으며, 브라질연수팀과 토론을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같은 날 한-브라질 소사이어티의 협력 하에 워커히호텔에서 Roadshow가 개최되었다. 이후 총 4일에 걸쳐 KOTRA의 협력 하에 인천, 대불, 마산, 울산, 대덕 등 주요 FTZ 및 Innopolis 등에 대한 산업시찰이 이루어졌다.
- (8) 브라질 현지 고위급정책대화(2012년 1월) : 브라질연수팀의 설문지에 대한 답변 및 현지 산업단지 시찰후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보고서 초안(Final Draft)이 완성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진(최대원 박사-PM, 마재신 박사, 권기수 박사, 이미정

박사)의 브라질 현지고위급정책대화가 최경림 주브라질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SUDENE 사무국에서 개최되었다. 브라질 정부 측에서는, SUDENE 청장보(장관보), 국가 EPZ 위원회의 사무총장(차관급), 북동부 9개 주의 차관급 정책입안자 등 약 20명의 고위급인사가 참석하여 정책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동 KSP사업의 권고안에 따라 브라질 국가 EPZ 위원회(사무총장 Dr Gustavo Silva 차관)는 현행 EPZ법을 개선하고 제도를 보강하기 위해 EPZ의 수출의무조항에 대한 법조문을 전면 개정할 예정임을 동 고위급정책대화 시 발표하였다. 이와 아울러, 동 권고안에 따라, SUDENE 사무국 역시 각 주의 EPZ 개발계획에 상응하는 Flexible Framework를 설정,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9) 브라질 현지 최종보고회 (2012년 1월) : 브라질 현지 최종보고회가 국가통합부 Dr Sergio 차관 및 최경림 한국대사의 배석 하에, SUDENE 장관보, 현지 EPZ 주요 전문가, 브라질 EPZ연합회 Dr Braga 회장 및 민, 관, 학계 고위급인사등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Pernambuco주의 수도인 Recife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회의결과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90%가 매우 만족, 또는 성공적 회의로 평가했다. 현지 참석자들의 여비 등 경비는 동 KSP사업에 대한 브라질 정부 측의 Co-financing형식으로 이루어졌다(현지 언론 보도자료 참조).

(10) 브라질 주정부 공식 초청에 따른 PM의 EPZ산업단지 시찰 및 고위급후속대화 (2012년 1월): 브라질 5개 주 및 국가 EPZ 위원회의 PM에 대한 공식요청에 따라, PM은 Pernambuco, Alagoas, Bahia, Sergipe, Maranhao, Ceara주 및 브라질리아의 국가EPZ위원회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각주의 주요 산업시찰 후 KSP 등을 통한 한-브라질 경제협력 및 지식전수사업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각 주의 장관, 차관 및 보좌관 등과 진행했다. 동 고위급 최종보고회의의 주요 내용은 각 주의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국가EPZ위원회의 사무총장은 KSP 2011사업을 한-브라질 경제협력차원에서 일차적으로 매우 성공적이며, 정책적 차원에서 유용하다고 평가하면서, KSP 2012년 후속 EPZ사업에 대한 중점 요구 사항 및 기대효과를 PM 및 동 위원회의 고위관리와 협의했다.

브라질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권 기 수 (대의경제정책연구원)

1. 시사점

동 KSP사업은 대 브라질 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서, 2012년 1월 SUDENE 최종 보고회의 직후 브라질의 EPZ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현지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90%가 매우 만족(평점 5점, 최고 평점 5 기준), 또는 성공적 사업(평점 4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연방정부의 EPZ 개발정책총괄기관인 국가 EPZ 위원회의 사무총장(차관급)은 KSP 2011사업을 한-브라질경제협력차원에서 일차적으로 매우 성공적이며, EPZ개발을 위한 각 부처 간 Multiple정책입안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유용했다고 평가하면서, KSP 2012년 후속 EPZ 사업에 대한 중점 요구 사항 및 기대효과를 PM과 협의, 전달하였다.

동 KSP사업 보고서는 브라질의 EPZ 개발정책 수단 중 핵심인 80%수출 의무조항이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의 “FDI, 수출장려정책” 및 FTZ, FIZ 등의 “법적, 제도적 비교연구”를 통해 정확히 지적하고, 이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법적, 제도적 검토를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이에 대한 전면 검토 작업을 시행할 것을 고위급정책대화 시 시사했으며, 2012년 KSP후속작업이 속개될 경우 이에 관련된 제반사항의 지식전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EPZ개발에 대한 현재 브라질의 상황을 보도하면서, 동 KSP사업이 추구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 및 지식이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동 KSP사업이 한-브라질 EPZ경제협력 및 정책대화의 토대가 되길 피력하였다.

2. 기대효과

2011년 8월 브라질 북동부개발청(SUDENE)과의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최근 2~3개월 동안 브라질 주정부 및 연방정부와 고무적으로 형성된 EPZ정책을 중심으로 한-브라질경제협력의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활용, 유지,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한국정부(기획재정부) 및 KDI KSP사업본부의 시의적절한 지원이 향후 브라질의 EPZ 및 산업단지 개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브라질 현지 언론(State of Pernambuco, State of Alagoas, State of Bahia, State of Sergipe, State of Maranhao) 등의 동 KSP사업에 대한 보도 자료는 KSP사업의 중요성과, KSP PM의 각 주 장관 및 차관과의 면담 내용 및 주요 산업시찰 등을 다루고 있으며, 한국과의 KSP심화를 비롯한 정책대화 및 경제협력을 기대, 희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 간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ODA사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으며, 브라질의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에 비추어 볼 때, ODA차원의 사업은 심화되기 힘들다 할 수 있다. 물론, IDB 등 국제기구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사업이 진행되고 있긴 하나, 한국과의 직접적인 사업 협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 KSP이 대 브라질 사업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브라질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보여준 2011년 KSP사업에 대한 호응과 지지는 단순한 EPZ개발정책에 대한 지식전수차원을 넘어 경제협력차원으로까지 확장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브라질과 한국의 산업간 산업내보완성(intra-industrial complementarity)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협력 촉매 역할을 KSP 사업이 충분히 해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의 비영리적인 KSP사업은 브라질 정부에게 한국 경제협력의 원천이 대정부협력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 사업의 PM을 각 6개 주의 장관급 및 CZPE 사무총장 등 고위급인사들이 차례로 초대해 한국의 경제발전정책에 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은 민간기업차원과는 다른 지식 전수 및 경제협력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브라질의 EPZ들이 아직 초창기에 있어, 한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수반될 경우, 이에 대한 양국 간의 경제협력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음을 부언할 수 있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대덕 Innopolis, KOTRA, 한국법제처,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등 다양한 부처 간의 협력 사업이 수반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판명되며, KSP사업의 모델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총론

최대원 (한국의국어대학교)

수출가공무역지대(EPZ)는 해외에서 교역이 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과의 자유로운 교역의 장으로서, 자체적인 세관통관 시스템을 갖춘 지대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해외투자유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국제수지 개선, 기술이전 장려, 일자리 창출, 사회, 경제발전 장려 및 수출 경쟁력 증가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브라질정부는 최근 국가균형발전 및 신산업정책의 일환으로 EPZ 개발을 통한 저개발지역의 경제발전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26주중 현재 20여개 주가 EPZ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중 몇 개 지역은 입주기업의 신청이 진행되는 등, 브라질 경제발전 모델에 전환점을 줄 수 있는 EPZ 개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한국의 산업발전이 수출진흥정책에 힘입은바 크며, 이에 대한 수출가공지대의 견인차 역할이 지대하다고 가정할 때, 브라질의 EPZ개발을 통한 수출드라이브정책은 한국의 경험 및 사례로부터 많은 지식의 전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제조업중심의 한국 EPZ 수출정책과 원자재가공업중심의 브라질 EPZ 수출정책은 그 성격 및 정책의 구성요소가 상이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재가공업중심에서, 부품수입이후 완제품수출형식의 제조업중심으로 EPZ수출전략이 전이될 경우, 한국의 경험은 브라질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한국의 EPZ 개발 경험의 현재 브라질 전수라는 단순한 정책요소 이전차원보다도, 브라질경제의 특수성내에서, 한국정책의 성공적 요소의 전이 가능성을 진단하는데 있다. 특히 한국의 사례는 EPZ가 FTZ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고도화가 진행된 반면, 브라질은 EPZ의 부재상황에서, 기존의 내수시장중심의 산업시스템 고도화와 최근의 신산업정책(Plano Brasil Maior)에서 볼 수 있는 수출진흥정책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중첩된 상황에 있다.

따라서 EPZ도입을 통한 경제발전정책에 있어 시계열적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한국의 사례가 브라질의 산업시스템에 함입되기까지는 EPZ 정책이외의 산업, 무역, 기술, 인력 정책에 대한 제반 비교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일 단계 연구작업차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으며, 브라질의 EPZ 개발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는 KSP 및 여타 대 브라질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및 수출증진 정책과 대브라질 정책 제언

권 기 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마 재 신 (이화여자대학교)

< 요약 >

한국과 브라질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한국에서 FDI는 1998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양국에서 FDI 정책 경험은 매우 상이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1997년까지 FDI는 미미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적 지배를 우려해 FDI보다는 해외차입을 선호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 FDI 정책은 직접적인 유치보다는 자유화 혹은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FDI 정책은 크게 바뀌었다. 한국 정부는 거의 모든 분야를 외국인투자자에 개방했으며, 포괄적이며 적극적인 FDI 유치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FIPA)을 제정한데 이어 투자유치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설립하고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Invest Korea를 출범시켰다. 특히 한국 정부는 급변하는 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3년마다 FDI 정책을 갱신해오고 있다.

그에 반해 브라질에서는 오랜 FDI 역사에도 불구하고 FDI에 초점을 맞춘 특별한 법이나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브라질에서 FDI는 외국 자본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외자법(Foreign Capital Law)의 대상이다. 또한 브라질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와 같은 외국인 투자 정책을 총괄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는다. 2004년부터 외국인투자유치 전담기구가 공식적으로 가동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그 서비스 범위나 수준은 제한적이며 낮은 편이다.

한국과 브라질의 FDI 정책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해 브라질 정부가 FDI 정책 추진 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브라질은 체계적인 FDI

유치 전략과 정책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체계적인 FDI 유치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위원회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셋째, 브라질은 외국인투자 유치 기구를 현대화하고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브라질은 FDI 유치 수단으로 EPZ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다양하고 유연한 경제특구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보다 많은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FDI 유치 정책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수출증진 정책 경험과 이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196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경제위기의 기간을 제외하면 급속도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 동 기간에는 또한 수출이 급증했다. 고도경제성장과 수출의 급증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고도성장의 초기에는 특히 공격적인 수출증진정책이 수출증가로 귀결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으로 불린다.

정부는 수출증진을 위해 조세 상의 인센티브, 관세 환급, 수출금융, 수출보험의 제공과 더불어 자유무역지역의 설립과 같은 다양한 수출증진정책 수단들을 제공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출상품의 구성이 바뀌어 왔다.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경공업이 수출을 주도했으나,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에 의해 점차 중화학공업의 수출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술집약산업이 수출을 주도하게 되었다.

브라질은 경제발전전략으로서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으나, 2000년대에는 대외 지향적 전략을 추구한다. 브라질은 관세 환급, 수출금융 및 수출보험과 같은 수출증진정책 수단들을 이용해 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브라질의 수출액은 급증해 왔고, 무역의존도는 2010년 48%까지 상승했다.

한국의 수출증진정책 경험은 브라질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첫째, 브라질정부는 대외 지향적 발전전략과 수출증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발전, 그리고 수출상품 구성비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브라질정부는 현행 관세 환급제도, 수출금융 및 수출보험제도가 더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 수출증진정책의 적극적인 추구는 경우에 따라 자원배분상의 비효율성, 금융부문의 왜곡, 그리고 조세수입의 상실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1절 서론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수출은 한 나라 경제 발전의 중요한 두 개의 축이다. 한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은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가 빠른 경제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관련 정책 경험은 매우 상이했다.

먼저 한국에서 본격적인 FDI 정책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97년 이후 부터다. 그 이전까

지 한국에서 FDI 정책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투자 분야 개방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FDI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한국 정부는 거의 모든 분야를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했으며, FDI 유치 전달기구를 설치하고 3년마다 FDI 정책을 갱신하는 등 적극적인 FDI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이에 따라 FDI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FDI 정책에 소극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처음부터 수출 증진에 적극적이었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980년과 1998년의 경제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다. 고도경제성장 시기는 또한 수출의 증가율이 매우 높은 시기이기도 했다. 수출액은 1963년 8,700만 달러로부터 1980년 175억 달러, 그리고 2010년에는 4,664억 달러로 증가해 왔다. 1963 (1971)년의 경우 수입액은 수출액보다 무려 6(2.3)배가 더 많았으나, 수출액과 수입액 사이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998년 이래 지속적인 무역흑자가 기록되고 있다. (수출액+수입액)/GNI로 정의되는 무역의존도는 1970년 39%에서 1990년에는 58%로, 2010년에는 105%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1인당 GNP는 1960년 100달러 이하에서 1980년 1,688달러, 2010년에는 20,000달러를 상회하게 되었다. 그 자체로서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빠른 수출증가와 고도 경제성장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경제가 기록한 수출 급증의 이유 중 하나는 적극적인 수출증진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초반 - 1980년대 초반에는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서 산업정책과 수출증진정책이 동반하여 추구되었다. 한국정부는 1960년대 초중반부터 '수출제일주의'의 표어 하에 수출증진을 추구했다. 한국정부는 조세 및 금융상의 인센티브 제공, 자유무역지역의 설립 및 수출증진을 목표로 하는 기관의 설립 등을 통해 수출증진을 도모해 왔다. 이와 같이 한국경제성장의 경험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공격적으로 구사해 온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1960년대에 한국정부는 그 당시 한국경제에 비교우위가 있던 섬유 의류와 같은 노동집약적 상품의 수출증진을 추구했다 (오원철 (1996)).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상품의 구성도 바뀌어 왔다. 1960년대 한국의 수출은 경공업에 의해 선도되어 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중화학공업제품에 의해, 그리고 1980년대부터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는 산업정책이 구사되면서 기술집약 산업에 의해 선도되는 모습으로 수출상품의 구성이 바뀌어 오게 된다. 과거에는 수출보조금이 적극적으로 지급될 수 있었으나, 현재의 WTO체제하에서는 WTO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까닭에 직접적인 수출보조금은 제공이 곤란하다.

본 장은 한국의 경험을 통해 브라질이 FDI 정책 및 수출 증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은 제2절에서는 먼저 한국의 FDI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본 절에서는 브라질에 유용한 정책 사례로 FDI 유치 기구인 Invest Korea 운영 경험, 외국인투자지역 (Foreign Investment Zone) 운영 경험, 2009년 신외국인투자유치정책 등 3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본 절에서는 한국 정부가 FDI 유치를 위해 도입한 3가지 경제특구 중 다른

장에서 소개되지 않은 외국인투자지역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3절에서는 한국정부가 취한 수출증진정책과 그 성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브라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제2절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

1. 한국의 FDI 정책

가. 한국의 FDI 정책 개괄

한국의 FDI 정책의 역사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960년에서 1983년 기간으로 FDI가 제도화 되는 시기다. 한국 정부는 수출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FDI 유치의 필요성을 인식, 1960년 처음으로 외자유치법(FCIA)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시기 FDI는 한국 정부의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외국자본의 국내 산업 지배를 우려해 FDI 보다는 국제기구나 상업은행의 차관을 선호했다. 그 결과, 1962년에서 1986년 사이 한국에 유입된 외국자본 중 FDI 비중은 3.9%에 불과했다.(Ahn, 2001)

두 번째 시기는 1984년에서 1997년 경제위기 직전까지다. FDI의 부분적 개방화 혹은 자유화 시기라 불리던 기간이다. 1980년대 초 한국 정부는 2차 오일 쇼크에 따른 대외경제 환경 악화 및 국내 산업 고도화를 위해 FDI 필요성을 재인식했다. 이에 따라 1984년 외국인투자 허용 업종이 열거방식(positive system)에서 금지제한업종 열거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되는 등 외국인투자가 일부 개방되었다. 1989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부과하던 투자 조건(수출, local contents 준수, 기술 이전 등)을 폐지했다. 1990년대 들어 한국은 WTO 출범과 OECD 가입(1996)을 계기로 FDI를 더욱 개방했다. 한국 정부는 1993년 FDI 자유화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1997년에는 외국기업의 우호적 M&A를 허용했다.

세 번째 시기는 1998년 이후 현재까지다. 1997~1998년 발발한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FDI 정책은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그간의 개방화를 통한 수동적인 FDI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FDI 유치 전략으로 변모한다. 먼저 대분의 외국인투자 업종을 개방하고,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도 허용(1998년)했다. 또한 외국인투자 정책을 전담할 최상위 기구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설립했다. 2009년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되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전담기구로 1998년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를 설립했다. KISC는 2003년 Invest Korea로 확대 개편되었다. 2003년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FEZ)을 설립했다. 당초 3개로 출범한 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3개가 추가로 지정되어 6개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또한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년마다 외국인투자정책을 갱신해오고 있다.

나. 3가지 정책 사례

첫 번째 정책 사례는 외국인투자 유치 전담 기구인 Invest Korea의 운영 경험이다. 한국 정부는 1998년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설치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KISIC는 2003년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해 Invest Korea로 재편되었다. Invest Korea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 인큐베이팅 서비스, 정착지원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맨 제도는 2006년 외국인투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또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사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 홈닥터 제도도 도입되었다.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826건의 고충이 처리되었다. 또한 Invest Korea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체 건물에 Invest Korea Plaza를 2006년에 설치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96개 기업이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며 이들 기업을 통한 FDI 유치 규모는 26억 달러에 달했다. 이밖에 Invest Korea는 2006년부터 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정착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하며 적극적인 FDI 유치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Invest Korea는 한국의 FDI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 Invest Korea를 통한 FDI 유치 비중은 2006년 43.3%(총 FDI 유입 대비)에서 2010년에는 60.4%로 증가했다.

〈표 1-1〉 Invest Korea를 통한 FDI 유치 규모

(단위 : %, 백만 달러, 신고액 기준)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FDI(A)	11,248	10,515	11,711	11,484	13,070
IK통한 FDI(B)	4,192	4,741	4,929	7,393	7,892
비중(B/A)	43.3	48.0	54.3	64.4	60.4

출처 : KOTRA

두 번째 정책 사례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경험이다. 한국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이전, 고용증대 등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행정규제의 적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지역적으로 고정된 사전적 개념이 아닌 외국투자가가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을 유치협상을 통해 지정하는 사후적 개념이다.

외국인투자지역은 크게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구분된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 또는 일반 지방산업단지 중에서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일정구획을 미리 임대 또는 분양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임대목적 부지로 운용된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는 1994년 충남 천안이 처음으로 지정되었다. 2011년 6월 현재 단지형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5억 3,300만 달러에 달했다. 반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대형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기호에 맞추어 투자가가 원하는 지역, 시기,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 단위로 지정하는 지역이다. 2009년 말 현재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FDI 유치 규모는 누적기준으로 37억 7,900만 달러에 달했다.

세 번째 정책 사례는 2009년 한국 정부가 실시한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의 방향을 종전의 투자금액 중심, Catch-All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유치 활동으로 전환했다. 이의 일환으로 중점유치 산업 및 분야와 중점유치 기업을 선정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전략, 신 성장 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 등 국가의 산업 및 발전 전략에 기초해 녹색기술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산업구조고도화 및 경제기여도가 큰 분야를 중점유치산업 분야로 선정했다. 또한 중점유치 분야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타겟팅 계획을 작성하여 100대 중점유치 기업을 도출하였다.

이 같은 전략에 기초해 정부는 부처별 중점 유치기업 유치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지자체-Invest Korea의 연계체제를 구축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Invest Korea, 경제자유구역별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로 중점유치기업별 투자유치지원단을 구성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등 인센티브 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현금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중점 유치 분야로 한정 일원화하여 중점분야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투자규모 기준의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소규모 투자도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경우 지원 범위에 포함시켰다. 특히 현금지원의 규모가 주변국 대비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현행대비 2배로 확대했다.

〈표 1-2〉 신성장동력 관련 중점 유치분야

3대 중점유치 산업 (Target Industry)	17개 중점유치 분야 (Target Sector)
녹색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 융합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 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콘텐츠·소프트웨어, 녹색금융, MICE·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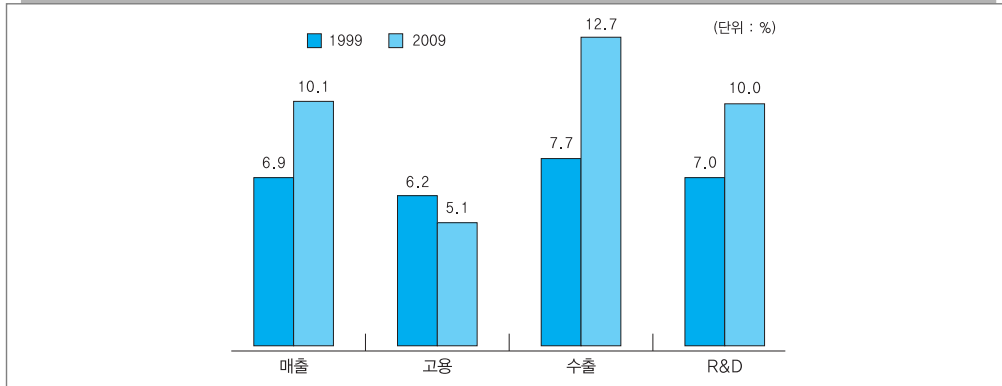
출처: 지식경제부

다. FDI 성과 :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

FDI는 고용 창출, 수출 증대 및 R&D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의 빠른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FDI는 199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는 평가다.

지난 6년간 FDI 유치 규모는 100~110억 달러에 머물렀으나 2010년에는 전년도 대비 14% 증가한 13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그림 1-1] 매출, 고용, 수출, R&D에서 외국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출처 : KOTRA

먼저 FDI가 한국기업의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그 비중은 1999년 6.9%에서 2009년 10.1%로 3%포인트 증가했다. FDI는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9년 현재 한국의 총 고용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1%에 달했다. FDI는 한국의 수출에서도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제조업부문의 총 수출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현재 13%에 달한다. FDI는 기업의 R&D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조업 분야를 기준으로 한국의 총 R&D 지출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7%에서 2009년 현재 10%로 증가했다.

2. 브라질의 FDI 정책

브라질은 다른 개도국과 비교해 독특한 FDI 역사를 갖고 있다. 브라질에는 이미 100년 전부터 외국계 다국적기업이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FDI 역사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이렇다 할 외국인투자법이나 투자협정(BIT)을 갖고 있지 않다.

브라질에서 외국인투자는 1962년 제정된 법률 제 4,131호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 법은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 관련법이라기보다는 외국자본을 규제하는 법에 가깝다.

1990년대 들어 브라질에서는 외국인투자 규정과 관련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먼저 1995년 개헌을 통해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었다. 또한 국내외자본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둘째, 브라질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보진흥법, 자동차 제도 등을 도입했다. 셋째, 마나우스자유무역지대(ZFM)의 세제 인센티브 제공 시한을 2013년까지로 연장했다. 마지막으로 1988년 헌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FDI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장기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FDI를 적극 유치했다. 특히 최근 들어 브라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FDI 유치 정책은 포괄적인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대표적으로 산업기술무역정책(PITCE), 성장촉진계획(PITCE 1-2), 생산개발정책(PDP), 더 큰 브라질 계획(PBM) 등이다.

브라질은 최근 거시 경제적 안정, 높은 발전 잠재력,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등에 힘입어 신흥시장 중 대표적인 FDI 유치국으로 부상했다. 2010년 FDI 유치액은 사상 최대인 484억 달러에 달했다. FDI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대 초반 1%대에서 2.4%로 증가했다.

〈표 1-3〉 브라질의 FDI 유치 추이

(단위 : %, 백만 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금액	10,143	18,145	15,067	18,822	34,585	45,058	25,949	48,462
GDP대비	1.83	2.73	1.71	1.76	2.63	2.84	1.8	2.4

출처: 브라질중앙은행(BCB)

그러나 이 같은 FDI 유입 급증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FDI 규모는 브라질의 잠재력에 비하면 아직까지 크게 낮은 상황이다. 브라질이 보다 많은 FDI를 유치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외국인투자 유치 기구의 개선이다. 1990년대 외국인직접투자가 러시를 이루었을 때 브라질에는 단일화된 외국인투자유치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FDI 유치는 주로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교부가 맡아 했으며, 여타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구들이 각개 약진 식으로 FDI 유치를 위해 활동해 왔다. 2000년대 들어 체계적인 FDI 유치 노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브라질 정부는 2001년에 민관합동으로 브라질 투자청(Investe Brasil)을 설립했다. Investe Brasil의 주요 활동은 사업개발,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간 협력 조정 등이었다. 그러나 Investe Brasil은 성과 부진으로 2004년 9월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다.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FDI 유치 전담업무는 개발상공부(MDIC) 산하의 브라질수출진흥청인 Apex Brazil로 이관되었다.

둘째, FDI의 일부 지역 편중의 문제다. 현재 브라질에서 FDI는 상파울루 등이 위치한 남동부지역에 전체의 85%가 집중되고 있다. 그에 반해 북부, 북동부, 중서부 지역에 대한 FDI 유치는 매우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 같이 편중된 FDI를 분산시키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셋째, 브라질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을 가로막는 높은 세제부담, 복잡한 관료적 절차, 인프라 부족 등 브라질 비용(Brazil Cost)의 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 환경의 정비도 절실한 과제다.

마지막으로 내수지향형 위주의 FDI를 수출 주도형 FDI로 전환시키는 것도 주요한 과제다.

제3절 한국의 수출증진정책

1. 수출증진정책의 장단점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대외 지향적 발전전략과 대내 지향적 발전전략이 대비될 수 있다. 대외 지향적 발전은 또한 시장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와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출증진정책의 경우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 경제성장과 후생증진의 측면에 있어서 대외 지향적 경제발전전략은 다음과 같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규모의 경제를 가정할 시, 국제무역증진으로 인한 확대된 상품 판매 기회에 따라 평균 생산비가 저하되고, 이윤이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경쟁의 격화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산성 증진이 기대될 수 있다. 또한, 자원배분 상의 효율성의 증진, 외국 생산자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커짐에 따라 기술진보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대외 지향적 발전전략에 따른 이익과 더불어, 정부 주도에 의한 수출증진은 다음과 같은 이익을 추가로 가져다 줄 수 있다. 첫째, 수입 시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한 반 수출적 편향(anti-export bias)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둘째, “유치 수출업자 보호론 (infant exporter argument)’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비용이 많이 든다. 수출의 액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의 단위당 평균 비용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수출의 초기단계에 잠정적인 보조를 해 줌으로써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Findlay (1984 : 12)). 셋째, 전략적 무역정책 (strategic trade policy)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수출업자들이 정부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되면, 일정 조건 하에서 그 수출업자는 세계시장을 선취하게 되고, 외국의 경쟁업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며, 세계시장에서 독점이윤을 구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한 수출증진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따르게 된다. 첫째, 정부지출이 수출에 집중되는 만큼, 이에 따라 다른 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이 희생된다. 둘째,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자원배분 상의 비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조세상의 인센티브 제공은 조세수입(tax revenue)의 상실을 의미한다. 넷째, 수출증진정책의 추구는 국내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준다. 즉, 수출관련자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수출가 관련되지 않는 부문과 납세자들에게는 손실을 입히게 된다(Mah (2011)).

수출증가가 경제성장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지만, 실제 그러한지는 검증해 봐야 할 대상이고, 많은 경험적 분석이 행해져 왔다. 경험적 연구의 초기 단계에는 회귀분석이 행해졌고, 198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수출증진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 검증이 자주 행해져 왔다. Koh and Mah (2012)는 한국의 자료에 대해 공적분 검증과 오차수정모형을 적용했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섬유 이외 부문의 수출구성비 증가와 경제성장

간에는 양방 간 인과관계 (bi-directional causality)가 존재한다. 또한, 무역자유화의 진전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존재한다. 소수의 연구들은 수출증진정책의 사용이 실제 수출증진으로 귀결되는지를 검증했다 예를 들어 Mah (2007b)는 공적분 검증을 통해 관세 환급 제도가 1975~2001년의 기간 중 한국의 수출증진에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였다.

2. 수출패턴

한국의 경제발전기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산업정책은 사실상 수출증진정책과 동반하여 추진되었다. 수출증진정책은 수출제일주의의 슬로건 하에서 1964년경부터 추구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유형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조세감면과 수출금융과 같은 조치들이었다. 1960년대에는 당시 한국 경제에 비교우위가 있던 섬유 의류사업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 수출의 증진을 목표로 했다(오원철 (1996)).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추구되던 1970년대에는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이 기록되었고, 또한, 이는 고도의 수출증가율과 동반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시기 한국경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시기였다고 표현할 수 있다. 1990년대 초중반에는 경상수지의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1998년 경제위기 발생 이후에는 지속적인 경상수지의 흑자가 기록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 특정 산업 및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보다는 R&D정책을 통한 수출지원이 행해졌고, 이는 전기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과 같은 기술집약적 상품의 수출증가에 결과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수출의 구조변화 추세를 보자면 1968년의 경우 총 수출액 4억 6천만 US\$ 중 섬유 의류의 수출이 1억 9천만\$로서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했고, 전기전자산업은 약 4퍼센트에 그쳤다. 1980년대 전반까지는 섬유 의류산업이 한국 수출의 최대 수출산업에 해당했으나, 1980년대 후반 이래 전기전자산업은 한국의 수출을 선도하게 되었다. 1991년에는 총 수출액 719억\$ 중 섬유 의류산업 수출액은 138억\$로서 약 19퍼센트로 감소했으며, 전기전자산업의 수출액은 170억\$로서 24퍼센트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총 수출액 중 전기전자산업의 수출이 30퍼센트 내외를 차지했고, 섬유 의류산업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3퍼센트 미만에 그치게 되었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호). 이와 같이 한국의 수출 중 개별 산업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자면, 노동집약적 상품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자본집약적이거나 기술집약적인 상품 수출의 비중이 점차 커져 왔음을 알 수 있다.

3. 수출증진정책 수단

가. 변천과정

196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은 소비재의 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입대체전략을 추구했으며, 상공부는 수입허가제에 의해 수입을 철저히 규제하였다. 상공부는 비로,

PVC, 시멘트와 석유정제품을 초기 경제발전과정에서 발전시켜야 할 주요 산업으로 선택하였고, 이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절한 인프라스트럭처가 구비된 산업단지를 건설하였다. 1964년경부터는 수입대체전략 대신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이 추구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산업정책의 수단으로서 조세 및 금융상의 혜택들과 함께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산업단지의 부지를 개발했고, 이를 그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였다.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은 196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은 1960년대 후반에 완공된 포항제철(현재의 POSCO)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산업정책은 본격적으로 경공업 중심으로부터 중화학공업육성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임금수준이 상승하게 되었고, 노동집약산업 생산물의 가격경쟁력 저하를 가져와, 이런 추세를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정부가 절감하게 되었고, 따라서 정부는 1970년대 초에 경공업을 성장의 엔진으로서 포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당시 국가안보의 강화 필요성에 따라 안보와 관련이 있는 중공업을 육성시킬 필요성을 정부는 고려하였다.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은 1971년에 입안되었으며, 1973년 정부는 중화학공업 드라이브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한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투자기금이 1974년에 만들어졌다. 정부는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철강, 조선, 기계, 전자, 비철금속, 석유화학의 6개 산업을 선택하였다. 정부는 이 산업들을 전후방연관효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와 외화가득의 기준에서 선택했다.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은 특혜가 제공되는 정책금융, 선택적인 보호, 새로운 업체의 진입에 대한 규제 및 조세감면과 같은 정책수단들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중화학공업 부문은 빠르게 성장해 왔고, 제조업에서 중화학공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의 39퍼센트에서 1980년에는 54퍼센트로 증가했다.

과도한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의 추구로 인해 중화학공업의 가동률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의 시기 급속히 하락하였고, 1980년의 경우 실질 GDP증가율은 음수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화학공업합리화정책이라는 이름하에 디젤, 타이어, 기계와 조선 산업에 대한 생산설비증축 계획이 1980년을 전후한 시기에 연기되었다. 1980년대 초반 한국 산업정책의 방향은 다시 한 번 바뀌게 된다. 즉, 정부는 경제발전에서 R&D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선진국경제를 모방하는 단계에서 이제 혁신을 통해 세계경제를 선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R&D정책에 대한 강조와 그를 통한 기술집약 산업의 발전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금속, 그리고 소형항공기와 같은 산업들의 경우 R&D가 중요하고,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들을 전략적 산업으로 선택하였다. 1980년대는 R&D정책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수출증진정책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구사되는 시기였다.

1983년부터 한국정부는 특정 산업 지향의 지원전략으로부터 R&D에 대한 기능 지향적 지원으로 산업정책의 큰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한 정책변화는 1985년 12월 공업발전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정부는 첨단산업개발을 위한 5개년 계획을 1989년 발표하여, 첨단사업 발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1995년부터는 IT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사되기 시작했다. R&D지원정책은 1990년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IT산업발전

치중되었다. 1998년 이래 정부는 지식기반사회 건설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차세대 성장의 선도할 산업들로서 IT와 생명기술 (biotechnology)을 포함한 수개 산업을 지정하였고, 이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주로 조세상의 혜택이었다.

현재도 한국정부 산업정책의 방향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기 보다는 기술집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간접적으로 R&D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R&D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1980년 1,800억 원에서 1990년 6,510억 원, 2000년 3조 4,520억 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실제 동 시기 민간부문의 급성장으로 인해 한국의 총 R&D지출 중 정부의 R&D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64퍼센트에서 1990년 19퍼센트로 급격히 감소했다. 2000년에는 25퍼센트로 다소 증가했으나, 1980년대 초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은 편이다(Mah (2007a : 78~82)).

위와 같은 변천과정에 드러나 듯, 한국의 수출진흥 정책수단들은 조세상의 특혜, 금융상의 특혜, 중간재 수입에 대한 저 관세, 자유무역지역과 수출지원기관의 설치 등을 포함했다.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의 시기 수출보조비율은 계산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Balassa 등 (1982)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31퍼센트에 달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한 또 다른 경제인 대만의 12퍼센트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국정부가 사용해 온 주요 수출진흥 정책 수단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나. 조세상의 특혜

1964년 이래 수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조세의 80퍼센트 감면과 같은 특혜가 수출기업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했다. 1973년 이래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의 일환으로서 선택된 중화학공업 업종에 대해서는 최초 이윤 발생연도로부터 첫 3년간 법인세 면제, 그리고 그 다음 2년간 세금 반액 감면과 같은 혜택이 주어졌다. 이들 중화학공업은 대체로 수출에 중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위주 업체에 대한 보조금 제공에 해당했다. 현재 조세상의 특혜는 수출업체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으며, 외국인투자업체와 R&D활동에 대해 주어진다.

일반적인 조세 상의 특혜와 더불어 관세 환급 (duty drawback)이 수출업체들에게 제공되어 왔다. 관세 환급은 수출되는 상품의 생산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출업자들에게 수출 인센티브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 환급의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 은행, 수출기업들이 부담하는 행정상의 비용이 과대할 수도 있다. 현 WTO체제 하에서 일반적으로 수출보조금은 금지되고 있지만,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해당하는 관세 환급은 과도하지 않은 경우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WTO회원국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관세 환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관세 환급 제도를 1975년부터 사용해 왔으며, 1980년대 중후반 한국의 관세 환급 제도는 대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상품별로 관세 환급되는 경우에는 현저히 행정 부담이 더하지만, 그러한 경우가 1990년대 후반 한국의 관세 환급 중 4/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관세 환급은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관세 환급액/수출

액으로 정의되는 환급율은 1975년 0.3퍼센트에서 1990년에는 2.6퍼센트로 증가되었으나, 1990년대 말 이후 무역흑자의 지속으로 말미암아 관세 환급율은 하락하여 2009년에는 0.8퍼센트로 하락하였다. 관세 환급액/수입관세징수액의 비율은 1990~2009년의 기간 중 17~27퍼센트였으며, 2009년의 경우 22퍼센트에 해당했다. 다음 표는 관세 환급의 추세를 나타내 준다(Mah (2011)).

〈표 1-4〉 관세환급의 추세

관세환급액 (조원)	관세환급액/수출액 (퍼센트)	관세환급액 /관세징수액	연도 (퍼센트)
1975	0.1	0.3	n.a
1990	1.2	2.6	24.0
2000	2.2	1.0	21.0
2009	3.2	0.8	21.6

출처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2005; 관세청, 관세연감, 각연도; <http://mosf.go.kr>, 관세환급실적, 2010.9.28.

다. 금융 상의 특혜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재무부는 당시 상업은행들을 철저히 규제하였다. 저리의 정책금융이 특정, 특히 수출 중심의, 기업들에게 제공되었다. 현재는 수출보험이 수출 진흥과 관련된 가장 특징적인 금융상의 특혜라 볼 수 있다. 정부는 1988년 말까지 대부분의 금리를 규제해 왔다. 낮은 금리의 대출이 선택된 기업들에게 제공되었는데, 1973년 이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수출의 비율이 높은 중화학공업 업체들에게 정책금융이 제공되었다. 1980년 정부는 정책금융을 줄이겠다고 결정했고, 은행의 민영화를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현재 정책금융은 중소기업에만 제공되며 수출진흥의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수출금융은 1961년 이래 수출과 관련된 많은 단계에 대해 제공되어 왔다. 1960년대~1980년대의 기간 중 수출업자들은 많은 액수의 이자율 보조금을 받았다. 수출금융은 현재도 널리 이용되는 수출진흥의 수단들 중 하나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들에게 대출을 행해 왔으며, 수출금융은 특히 산업플랜트, 기계류와 조선과 같은 자본재에 주로 제공되고 있다. 외화 획득률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계약액의 100퍼센트까지 대출이 행해진다. 2007년과 같은 경우 수출입은행에 의해 지원된 수출의 비율은 총 수출액의 19퍼센트를 차지했다.

수출보험 (현재 무역보험)제도는 수출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수출을 진흥할 목적에서 1969년 수출보험법에 의해 한국에 도입되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수출보험기금을 설정하였다. 1969~1972년의 기간 중 수출보험이용률, 즉, 총 수출 중 수출보험에 의해 부보된 (insured) 비율은 1퍼센트 미만이었고, 1980년대에는 3퍼센트 내외였으나, 정부가 수출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1992년 수출보험공사 (현재 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한 이후 수출보험 이용률은 급격히 증가했다. 수출보험이용률은 2009~2010년 연속으로 30퍼센트를 상회하여 한국은 세계에서 수출보험제도를 가장 활발히 이용

하는 국가에 속한다. 보험금지금액 (claims payment)/보험료수입 (premium revenue)으로 정의되는 손실률은 1991년까지 100퍼센트 이하였기에 수출보험의 수출인센티브로서의 성격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현저하지 않았다. 손실률은 2003~2004년의 경우 325퍼센트에 이르기기도 했으나, 2008~2009년의 경우에는 회수금 (recoveries)의 증대로 인해 손실률이 122퍼센트까지 감소하기도 했다(Mah (2011 : 14-17)). 정해진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수출보험제도의 경우 WTO에 의해 수출보조금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보험의 활용률은 계속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수출진흥정책의 기타 수단들

위와 같은 조세 및 금융 상의 조치들과 더불어 한국정부는 과거 수출자유지역의 운영, 환율인상, 중간재에 대한 저관세를 적용과 같은 정책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수출증진을 도모했다. 1960년대에 정부는 수출증진을 위한 기관들을 설립했는데, 이는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와 같은 기관들이었다. KOTRA는 수출을 위한 마케팅과 기술도입과 같은 측면을 통해, 무역협회는 무역인력양성, 연구조사와 해외시장개발 등을 통해 수출증진에 기여해 왔다. 이들 기관들은 현재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1965년 이래 대통령이 참석하는 수출진흥 월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수출을 독려했으며, 상공부는 매년 무역의 날에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기업들을 포상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을 독려했다 (Mah (2007a : 78)).

과거 적극적인 수출진흥정책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WTO체제로 이행된 이후 1990년대 말 이래 한국정부는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수출보조금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현재 한국정부의 수출증진정책은 수출에 대한 간접지원, 즉, 국제마케팅 행위에 대한 지원, 수출상품전시회 지원, 과 더불어, 수출보험 (현재의 무역보험)제도의 운영, 관세환급제의 시행과 같이 WTO체제 하에서 과도하지 않은 경우 인정되는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그리고 수출가공구에 해당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의 수출지원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4. 브라질의 수출증진정책

가. 변천과정

브라질은 1차산품의 수출을 통해 세계경제를 접촉하기 시작했다. 1920년대를 전후한 시기 이후에는 공산품의 생산이 급증하게 되었다(Haggard (1990: 163-175)). 브라질경제는 1920년-1990년의 기간 중 연평균 6.2%의 실질 GDP증가율이라는 매우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브라질 경제는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을 추구했다. 아마도 그 자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브라질은 국내시장을 목표로 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다양한 보호무역정책들이 구사되어 왔으나, 수입대체공업화전략은 수출증진을 위한 조세 및 금융상의 지원과 동반 추구되었다(Barbosa (1998:70); Saavedra-Rivano (1998:179)).

수출증진정책은 1965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으며, 1968년에는 수출인

센티브들이 현저하게 적극 구사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여러 차례의 환율인상조치들이 행해졌다(Carvalho and Haddad (1982 : 149)). 그러나 그와 같은 수출증진정책 수단의 구사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전반적으로 수입대체공업화전략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으며, 공산품수출을 도모하였다(Haggard (1990 : 179)).

1960년대 중반 이래 브라질의 수출은 급증하였다. 예를 들어, 1968년~1973년의 시기는 “브라질의 기적”으로 불리게 되었다(Haggard (1990 : 181)). 1955년 14억\$이었던 수출액은 1965년에 이르러도 별 차이가 없었으며, 공산품의 수출비중은 16퍼센트에 불과했다. 반면, 그 다음의 10년간 수출은 급증하게 되었다. 1975년 수출액은 79억\$로서 1965년의 5배에 이르렀다. 그리고 공산품 수출액은 24억\$에 이르렀다. 이는 동 기간 중 연평균 33퍼센트에 달하는 것이었다(Carvalho and Haddad (1982 : 149)). 1970년대 후반의 기간 중 철강, 화학,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고, 그 과정상 대외부채가 증가했으며, 1980년대 초반 외채위기가 발생하였다. 외채위기 발생 이후 1980년대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 이후 무역자유화와 같은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이 추구되었다(Barbosa (1998 : 86)).

나. 수출증진정책의 현 상황

최근 브라질의 최혜국 (MFN) 관세율은 2008년 11.5%에 해당했으며,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US\$ 10,000 정도에 해당하는 브라질의 발전단계로 볼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수입관세율은 수출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브라질은 수출금융, 수출보험과 같은 많은 종류의 수출증진정책 수단들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출보조금들은 2002년 12월 철폐되었다. 현재는 대체로 WTO체제에서 인정되는 수출인센티브들이 제공되고 있다. 브라질은 1966년 제정된 관련법에 의해 수출시 그 전 수입되었던 부품에 대해 부과했던 수입관세를 반환해주는 관세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출가공구 설립도 수출증진정책으로서 추진되어 왔다. 수출가공구 내의 입주업체들에게는 80%이상 수출의무가 부과되어 왔다 (WTO (2009 : 59-61, 64)). 수출가공구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브라질은 또한 생산자들과 수출업자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수출금융, 수출보증, 수출보험 등을 제공해 오고 있다. 수출금융프로그램 (PROEX)은 브라질의 주요 수출증진정책 수단 중 하나이다. 이는 브라질은행 (Banco do Brasil)에 의해 운영되는 중앙정부의 제도로써,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을 제공하며, 2007년의 경우 브라질 총수출의 약 2.7%에 해당하는 44억\$의 수출을 지원했다. 브라질개발은행 (BNDES)에 의해 운영되는 BNDES-EXIM프로그램은 미리 열거된 상품들이 관련되는 경우 수출신용을 제공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2007년 42억\$의 수출 (총 수출의 약 2.6%)에 대해 수출금융을 제공했다. (WTO (2009 : 62-64)) 브라질 정부는 2010년 하반기 중에 정부의 수출부문 지원을 집중시키고, 증가시키기 위해 수출신용기관인 브라질수출신용기구 (EXIM Brasil) 설립을 결정했다(자료 : <http://gpmbusiness.worldpress.com/2010/09/11>, 2010.09.11).

브라질은 또한 수출신용보험제도 (SCE)를 통해 수출보험을 제공해 왔다. 현재 단기 거

래 시 발생 가능한 상업적, 정치적 위험을 커버해 주기 위해 동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2009년 현재 5개의 민영 전문 기관들이 설립되어 있다. 그 중 하나인 브라질수출신용보험 회사(SBCE)이며, 여기에는 2개의 공기업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SBCE에 의해 커버된 수출액은 브라질 총수출의 1.4%에 해당했다. SBCE는 정부를 대신하여 동 제도를 운영하며, 1999년 관련법에 의해 만들어진 수출보증기금을 통해 운영이 이루어진다. (WTO (2009: 65-65)) 동 회사의 보험료수입액 (premium)은 2009년의 최초 8개월 동안 12.5백만\$에 해당했다(<http://www.bnamericas.com/news/insurance,2009.10.23>). 그러나 이는 한국의 수출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무역보험공사가 수취하는 보험료 수입의 10퍼센트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액수로서 활발히 동 제도가 브라질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출증진기관으로서 브라질무역투자진흥공사(APEX-Brasil)가 2003년 설립되었다. 이는 개발공업무역부(MDIC)에 소속된 정부기관으로서 주로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조율하며 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브라질의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수출기업들의 세미나 개최, 시장조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마케팅과 광고, 무역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한다(WTO (2009: 66-67); <http://www.apexbrasil.com.br>, 2011.12.29). 수출증진정책들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시행되며 브라질의 수출액은 급증해 왔다. 예를 들어 2003-2007년의 기간 중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22퍼센트에 이르렀다. 서비스무역을 포함한 경우의 무역의존도는 지난 20년간 1991년 31.4%에서 2000년에는 40.7%, 그리고 2010년에는 47.9%로 급상승세를 보여 왔다(WTO (2009, Ch. 1);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 retrieved December 29, 2011).

제4절 정책 제언

1.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을 위한 정책 제언

한국과 브라질에서 FDI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한국에서 FDI는 1998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양국에서 FDI 정책 경험은 매우 상이했다. 일례로 한국에서 1997년까지 FDI는 미미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적 지배를 우려해 FDI보다는 해외차관을 선호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 FDI 정책은 직접적인 유치보다는 자유화 혹은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FDI 정책은 크게 바뀌었다. 한국 정부는 거의 모든 분야를 외국인투자자에 개방했다. 한국 정부는 FDI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Invest Korea를 설립했으며 포괄적인 FDI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에 반해 브라질에서 FDI는 항상 환영받았다. 브라질은 다른 개도국과 비교해 FDI 역사가 매우 길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서 FDI 등 외국자본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다.

FDI 법제와 관련해서도 한국과 브라질은 매우 대비되는 특징을 갖는다. 한국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FIPA)은 모든 FDI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FIPA의 제정 목적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지원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에

반해 브라질에서는 FDI 유치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FDI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브라질에서 FDI는 외자법(Foreign Capital Law)의 대상이다. 외자법은 기본적으로 FDI보다는 외국 자본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1-5〉 한국과 브라질의 FDI 정책 비교

한국	브라질
- 1997년까지 FDI에 폐쇄적	- 전통적으로 FDI에 개방적
- 포괄적인 FDI 법 제정	- FDI 법이 존재하지 않음
- FDI 정책의 컨트롤타워 존재	- FDI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음
- 적극적인 FDI 유치 정책 추진	- 직접적인 FDI 유치 정책보다는 간접적인 성격의 포괄적 산업정책 추진
- FDI 유치 수단으로 수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구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적극 활용	- 아직까지 수출가공지역(EPZ) 활용은 초기 단계
- 중앙 및 지방정부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잘 발달된 외국인투자 유치 전담기구 구축	- 연방정부 차원에서 FDI 유치 전담기구가 있으나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은 미흡

이러한 상이한 정책 경험 공유는 양국이 FDI 정책을 발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브라질 정부가 FDI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브라질은 체계적인 FDI 유치 전략과 정책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브라질에는 직접적인 FDI 유치 정책이 없다. 대신에 브라질은 2004년부터 간접적인 형태의 산업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FIPA)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FDI 유치 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FDI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해왔다. 브라질의 경우 최근 많은 FDI 유치에도 불구하고 UNCTAD의 평가에 따르면 FDI 유치 성과는 잠재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FDI 유치를 통한 FDI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FDI 유치 정책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체계적인 FDI 유치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위원회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외국인투자정책 최고 결정기구인 외국인투자위원회는 FDI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12명의 정부 각료와 16명의 고위급 지방 및 광역자치체단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009년 한국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FDI 유치에 집중하기 위해 부처별 FDI 유치 책임제를 도입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켰다. 그에 반해 브라질에서는 FDI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 FDI 유치 전담기구로 있는 Apex Brazil은 FDI 정책을 수립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셋째, 브라질은 외국인투자 유치 기구를 현대화하고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잘 발달된 외국인투자 유치 전담기구인 Invest Korea를 두고

있다. 2004년 설립된 Invest Korea는 정책 수립, 투자유치 활동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해 투자자와 중앙/지방정부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또한 Invest Korea는 사후 서비스, 인큐베이팅 서비스,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FDI 유치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이후 외국인투자의 재 투자율이 크게 늘었다. 브라질도 2004년 Apex Brazil에 외국인투자 기구를 설립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력도 부족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도 아직까지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브라질은 FDI 유치 수단으로 EPZ 및 다양하며 유연한 경제특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수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다양하고 유연한 제도 도입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그에 반해 브라질은 마나우스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 EPZ를 투자 유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1988년 브라질 정부가 처음으로 EPZ를 도입한 이후 2011년 현재 브라질에서는 22개 EPZ 설립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22개 EPZ 중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보다 많은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FDI 유치 정책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적극적인 FDI 유치 정책에도 불구하고 FDI 유치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행정 절차의 개선, 세제부담 경감,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한국인들의 국제화, 시장개방 확대 등을 주요 투자환경 개선사항으로 지목하고 있다(KOTRA 2009). 브라질의 투자환경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평가다.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한다. 먼저 한국기업들의 경우 높은 세제부담, 노동비용 상승, 노무관리, 인프라 부족, 관료적 절차의 복잡성 등을 경영상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목한다(KIEP 2011). 일본기업들의 경우 노동비용 상승, 높은 세제부담, 환율의 변동성 심화, 노무관리, 복잡한 통관절차 및 열악한 물류 수준, 원료비용 상승 등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적한다(JETRO 2011).

2. 수출증진 정책을 위한 정책 제언

고도경제성장기에,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중반까지의 시기에, 한국정부는 수출기업들에게 조세 및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출증진기관을 설립했다. 그에 따라 수출액이 급증했다.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수출증진정책은 수출액의 증가에 기여했다. 특히 제조업 제품 수출의 비중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급상승했다.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자본집약재와 기술집약재의 수출 비중은 197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수출액의 증가는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귀결되었고, 이와 같이 한국의 경제성장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으로 불려 왔다. 이와 같은 한국의 경험은 브라질 경제성장의 가속화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즉, 브라질 정부는 수출증진 정책들을 구사해 왔지만, 세계무역체제 하에서 문제가 없는 범위 하에서 수출증진정책의 적극 구사에 의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수출증진에 의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수출증진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의 고도성장기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월례 수출진흥확대 회의가 수출진흥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수출증진정책이 경제성장으로 귀결되었지만, 또한,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 경제구조와 수출상품의 구성이 변화해 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초반 이래 한국 정부는 선택된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부터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과 같은 보다 기능 지향적인 지원으로 산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경공업으로부터 중화학공업, 그리고 1980년대 이후 특히 기술집약 산업의 발전이 두드러졌고, 해당 산업 제품들의 수출이 증가했다. 즉, 지난 50여 년간 한국에서는 기술집약산업 수출/노동집약산업 수출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험에 의하면 중진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액 자체의 증가와 더불어, 정부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집약적인 제품의 수출상품 구성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증진정책 수단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수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생산자의 비중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대중의 교육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직접적인 수출보조금을 대체로 금지하고 있는 WTO체제 하에서 허용되고 있는 수출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 WTO의 보조금협정에서 수출증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부분의 조세상의 인센티브는 금지되나, 일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지 않고 있으면서 수출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인센티브로서 관세 환급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수출상품의 생산비를 저하시킴으로써 수출증진정책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으며, 한국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이를 적극적으로 구사해 왔다. 그렇지만, 관세 환급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 금융기관과 수출기업들이 관세 환급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것이 수출증진에 미치는 효과는 관세 환급 제도의 실제 사용 방식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브라질 정부 또한 관세 환급 제도를 운영해 왔다. 브라질정부는 관세 환급 절차의 단순화와 투명한 증진을 포함하여 관세 환급 제도의 사용을 강화함으로써 수출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세 환급 제도와 더불어 한국에서는 수출보험제도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1990년대에도 한국은 수출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세계에서 동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에 해당한다. OECD 수출신용에 관한 협약과 배치되지 않는 수출보험은 WTO보조금협정에서 금지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수출보험제도는

한국정부에 의해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에도 수출보험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에 대한 브라질정부의 지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수출 보험 활용율은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수출증진 목적에서, 또한 WTO 규정에 합치하는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브라질 정부는 수출보험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수출입은행은 수출과 관련된 생산자 및 수출업자들에게 여러 유형의 수출금융을 지원해 왔다. 현재 한국의 수출금융은 상업은행들의 시중 이자율 수준이기 때문에 WTO 보

조금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브라질 정부 또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들에게 수출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의 총 수출액에서 이러한 수출금융에 의해 지원되는 수출의 비중은 한국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낮다. 따라서 WTO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브라질정부는 수출증진을 위해 수출금융이 더 큰 규모로 행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매우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구사했다. 대체로 동 시기는 한국경제의 고도경제성장기와 겹치는 시기였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적극 개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는 위 의시기에 금융 산업을 장악하였고,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정책금융을 시중은행들을 통해 수출관련 산업 등에 속하는 일부 선택된 기업들에게 제공했다. 이는 자원배분 상의 비효 율성을 낳았으며, 은행들과 일부 대기업들의 자산-부채비율을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비록 1998년을 전후한 시기 한국경제의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상반되는 의견이 있으나 (예를 들어, Chang, Park, and Yoo (1998))와 Mah (2002)는 그러한 상반되는 해석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부의 과도한 수출증진 관련 금융지원도 구조적인 이유의 하나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 하여는 항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서울 : 기아경제연구소, 1996.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호.

Ahn, Choong Yong, "New Direction of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the Multi-Track FDI Era: Inducement and Aftercare Services, 2008".

Ahn, Choong Yong, "A Search for Robust East Asian Development Models after the Financial Crisis: Mutual Learning from East Asian Experiences",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12, No.3, North-Holland.

Ahn, Hyeon-ju and Jai S. Mah, "R&D Policies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Intensive Industries of Kore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37, Issue 3, August 2007:364-79.

Bae, Jin-Young, "Incentive Structure and Its Changes in the Korean Industrial Policy Regimes from 1962-1997", Journal of the Korean Economy, Vol.2, No.2, Fall 2001:297-331.

Balassa, Bela, et. al., Development Strategies in Semi-industrial Economie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1982.

Barbosa, Fernando de Holanda, "Economic Development: the Brazilian Experience", in Akio Hosono and Neantro Saavedra-Rivano, ed., Development Strategies in East Asia and Latin America, Macmillan Press : London, 1998:69-87.

Brander, J. A. and B. J. Spencer, "Export Subsidies and International Market Share Rivalr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18, No.1/2, February 1985:83-100.

Carvalho, Jose L. and Claudio L. S. Haddad, "Brazilian Export Growth: Estimating the Export Supply Response, 1955-74", in Anne Krueger, Trade and Employ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icago, 1982 : 149-58.

Chang, Ha-Joon,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 St. Martin's Press: London, 1994.

Chang, Keunho and Jinsoo Kim, Economic Effect of Duty Drawback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Further Reform, Korea Institute for Public Finance: Seoul, 1997 (in Korean).

Cho, Yoon Je and Joon Kyung Kim, Credit Policies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KDI), 1997.

Choi, Kwang and Jin-Kwon Hyun, eds., The Fifty Years History of Tax Policy in Korea (in Korean), Vol.I, KIPF: Seoul, 1997.

Cooper, Richard N., "Fiscal Policy in Korea", in Haggard, Stephan et al. eds., Macroeconomic Policy and Adjustment in Korea, 1970-1990,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4:111-144.

CUTS Centre for Competition, Investment & Economic Regulation, Investment Policy in Brazil- Performance and Perceptions, 2003.

ECLAC, Foreign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4, 2005.

-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sian Executives Poll,"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8 June 1998, P.36.
- Findlay, Ronald, "Growth and development in trade models", in Jones, Ronald and Peter Kenen,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1, 1984.
- Haggard, Stephan, Pathways from the Periphery,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1990.
- Haggard, Stephan and Susan Collins, "The Political Adjustment in the 1980s", in Haggard, Stephan, et.al. eds., Macroeconomic Policy and Adjustment in Korea, 1970-1990,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4:75-110.
- Hyun, Jin-Kwon, "Profit Tax", in Choi and Hyun (1997).
- Jeong, Kap-Young, "Effects of Korean Industrial Policy on Market Concentration", in Park and Wilkinson (1995).
- JETRO, "A Survey of Business Performance of Japanese Companies in Latin America", 2011 (in Japanese).
- KIEP, The 20 Years of MERCOSUR: Performance and its Implications, 2011 (in Korean).
- Kim, Jeongryum, From a Least Developed Country to a Developed Country, 2006 (in Korean).
- Kim, June-Dong and Sang-In Hwang,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ve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cy Crisis", 1998.
- Kim, Wan-Soon and You-il Lee, "Korea's FDI-Led Economic Liberalism: A Critical View", Asian Perspective, Vol.32, No.1, 2008, pp.165-192.
- Koh, Sae Ran and Jai S. Mah, "The Effect of Export Composition on Economic Growth: The Case of Korea", Journal of Developing Areas, 2012 (forthcoming).
-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K-sure), K-sure Annual Report 2010, K-sure: Seoul, 2011.
- KOTRA, Invest Korea Annual Report 2010, 2011.
- KOTRA, Investing in Korea, 2009.
- Kwon, O. Yul, "Causes for Sluggish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A Foreign Perspective", The Journal of the Korean Economy, Vol.5, No.1 (Spring 2004), pp.69-96.
- Lee, Jaymin, "Dynamic Comparative Advantage and Korea's Industrial Policy", in Park, Tae-Kyu and Roy K. Wilkinson, eds., Industrial Policy in Korea and the EU, Yonsei University Press: Seoul, 1995.
- Lee, Sunghoo, Sidong Kim, and Sung-Ho Han, Industrial Policy of Korea, KIET: Seoul, 1989 (in Korean).
- Lim, Joo-Young, "Tax Support System", in Choi and Hyun (1997).
- Mah, Jai S., "Regulatory Lessons from the South Korean Currency Crisis: Comment on Zalewski",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36, No.3, September 2002:795-803.
- Mah, Jai S., "Export Promo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Journal of World Trade, Vol.40,

-
- No.1, February 2006:153-66.
- Mah, Jai S., "The Effect of Duty Drawback on Export Promotion: The Case of Korea", *Journal of Asian Economics*, December 2007.
- Mah, Jai S., "Export Promotion Policies, Export Compos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Law and Development Review*, 2011.
- Mah, Jai S., "Government-led Export Promotion in Light of Distributional Fairness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45, No.4, December 2010:877-894.
- Mah, Jai S. and Yunah Song, "The Export Insurance System of Korea: Its Implications on the Trade Regulations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Vol.35, No.4, August 2001:603-614.
- Milner, Chris, ed., *Export Promotion Strategies: Theory and Evid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Harvester Wheatsheaf: N.Y., 1990.
- Nam, Chong-Hyun, "Export promotion strateg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in Milner (1990): 165-183.
- Oh, Wonchul, *The Korean Model of Constructing the Economy: The Engineering Approach*, Ki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eoul, 1996 (in Korean), Vol.1.
- Saavedra-Rivano, Neantro, "From Promising Beginning to Divergent Paths: Brazil and Korea", in Akio Hosono and Neantro Saavedra-Rivano, ed., *Development Strategies in East Asia and Latin America*, Macmillan Press: London, 1998: 177-93.
- Sakong, Il and Youngsun Koh (editors), *The Korean Economy: Six Decades of Growth and Development*, 2010.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Investment Policy Review Brazil*, 31 January 2005.
-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rade Policy Review - Korea*, WTO : Geneva, 2000, 2008.
-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rade Policy Review - Brazil*, WTO : Geneva, 2009.
- Youn, Won Bae, "Financial Liberalization", in *The Dictionary of Economics*, Pakyoungsa: Seoul, 1998 (in Korean).
- EIU Viewswire On-line
- KOTRA Homepage
- Invest KOREA Homepage
- Oxford Analytica On-line

제2장 브라질의 EPZ 개발 정책

최 대 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미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 요약 >

브라질 북동부지역의 수출가공구 개발 및 조성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브라질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EPZ 즉, FTZ(Free Trade Zone)와 좀 더 진보한 개념의 FEZ(Free Economic Zone)는 브라질에서 개별적으로 말하는 산업단지라기 보다는 진보된 산업클러스터 구성 요소의 일부다. 다시 말해서 브라질은 아직까지 개별적인 산업단지 조성 외에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된 산업단지의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못하다. 특히 주 정부와 같은 지방정부의 힘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지방정부와는 완전히 다르고 그 주체적 역량이 매우 강한 편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지도력이 지나치게 강조되어도 안 되고, 오히려 체계적 기반을 잘 마련하여 그 체계에 적응시키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다.

둘째, 브라질의 EPZ 경험은 이제 초기단계이다. 지정 이후 2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어려운 것이 실제의 브라질 현실이다. 따라서 세부적인 제한 요소를 따지는 것보다 일단 EPZ 운영이 시작할 수 있도록 유통성 있고 긍정적인 요소들을 확충하고, 제한 요소들을 줄이는 체계를 만드는데, 협조하는 방법이 우선과제라고 본다.

셋째, 현재 한국의 산업단지 건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입지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입주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도 커다란 과제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PZ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입주기업이 원만히 생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브라질의 경우 이러한 지원을 관리회사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유리한 점은 대부분의 관리회사가 중앙정부관할이 아니라 초기에만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민관합작 형태에서 민간 기업에게 이양하는 관리 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최근 한국의 지원형태 위주의 유연한 경영방식이 비교적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본다.

넷째, 한국은 오랫동안 수출지향 정책을 써 왔기 때문에 세계 분업 편입이라든가 외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빠른 편이다. 반면, 브라질의 산업체계는 수입대체산업화 패턴에 익숙해 있어 외부적 요소들을 수용하는데 많이 더딘 나라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한국의 산업단지조성 경험은 브라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고, 이러한 경험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제안들을 그룹화 하여 요점들을 제안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브라질 쪽에서 실무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케이스 별 제안 방법이나 운영 전문가가 직접 제안을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한국과 브라질의 EPZ 법령, 행정조직, 인센티브 및 규정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브라질에 대한 시사점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브라질의 EPZ 내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와 운영의 간편화 같은 장점들은 한국과 유사하다. 즉 라이선스가 필요 없고, 통관지역이 존재함으로써 인해서 관세가 인하되어 운영상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중고품을 포함하여 기계, 장비, 도구 등의 수입절차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다른 관세제도들과는 반대로, 수입 시 세금면제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수출을 위한 최대한도의 기한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되지 않는다. 다른 제도와는 다르게, 취소나 변경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신용등급도 상향조정되고, 최소 기한 20년간 투자혜택이 보장된다.

반면에 한국과 비교 시 목격되는 단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EPZ에 설치된 기업들의 혜택이 법률 11.508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한적이고, 명시된 혜택외의 다른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둘째, 수출의무규정에 따라, 내수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길 원하는 EPZ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셋째, 원스톱서비스(One-Stop-Service)의 부재로 인해 EPZ 제안서 제출 및 승인절차가 복잡하여 중소기업의 유치가 지연될 수 있다. EPZ는 수출성장 및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도구로서, 이의 성공은 단지 할당된 인프라,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 및 법적 안정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사회적 구조내의 전략적 행위 통합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제1절 서론

브라질의 EPZ⁵⁾는 해외투자유치, 고용창출, 수출경쟁력 향상, 기술전파, 국제수지 강화, 지역불균형 감소 및 국가경제의 발전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 EPZ를 통해 주지사들은 수출 발전 및 다각화 및 신산업정책 및 통상정책 수립을 추구한다. EPZ는 또한 정부의 기관을 통해 효율적인 감독을 수행하며, 주변지역 및 환경관리 인프라를 제공하였다. 최근,

5) 포르투갈어로는 ZPE로 표기.

브라질에는 사전 운영단계의 23개의 EPZ 프로젝트가 존재하는데 그 중 9개 프로젝트⁶⁾가 북동부지역에 위치해있다. 브라질 북동부 EPZ는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분야로의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10년간 국가 경제성장률 평균을 초과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역동성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거대 국제시장에 위치한 특별한 지리적 위치, 좋은 환경, 화산, 허리케인, 지진 등의 부재에 기인한 지질학적 안정성, 거대한 구조 및 인프라 프로젝트 등은 세계의 경쟁지역들과 비교하여 브라질 북동부의 EPZ가 짧은 시간 내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 인프라의 현대화 및 확장 뿐 만 아니라 비즈니스 클래스의 성숙도, 저렴한 수준의 노동력 등에 힘입어 북동부지역 경제는 브라질경제로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본장에서는 현재 북동부 개발 노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수출가공구역(Export Processing Zone, EPZ)의 조성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제언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장에서는 브라질과 한국의 EPZ에 관한 배경, 법령, 행정조직과 인센티브 및 의무규정 등을 고찰한 후, 이를 비교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장의 결론에서는 비교분석의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하여, 브라질 정부의 향후 정책수립, 개정 및 제고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제2절 브라질 북동부 지역 수출가공구 개발현황

1. 북동부지역 사회·경제 현황

북동부지역은 9개의 주-마랑영(Maranhão), 삐아우이(Piauí), 쎄아라(Ceará), 히우그란 지두노르찌(Rio Grande do Norte), 파라이바(Paraíba), 페르남부쿠(Pernambuco), 알라고아스(Alagoas), 세르지피(Sergipe), 바이아(Bahia) - 로 구성되어 있고, 5개의 지역 중 가장 많은 주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전체국토의 19%를 차지하고, 인구는 약 5천3백만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한다. 브라질 5개의 지역 중 세 번째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전체 GDP의 13%(US\$ 2900억)를 차지한다(IBGE, 2010). 반면, 북동부는 가장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브라질 지역 중 HDI(Human Development Index)가 낮고, 높은 빈곤도를 보이며 인구비중이 높는데 비해 산업에 투입할 만한 노동력이 현격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십여 년 동안 북동부의 산업은 기존의 양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근대적인 산업 방식 고수와 함께 대토지 소유 등 전통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농·목축업의 경우 건조지역에 잘 견디는 염소사육을 비롯한 꿀, 사탕수수 재배가 확장되고, 관개시설 확충을 통해 열대과일을 대단위로 재배하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니치마켓을 찾기 시작했다. 제조업 부문에서도, 경공업은 비롯한 중화학 공업, 통신 IT 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산기반 구축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추세는 기존의 낮은 생산성 극복과 같은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6) 즉 Assú (RN), Barra dos Coqueiros (SE), Ilhéus (BA), João Pessoa (PB), Macaíba (RN), Parnaíba (PI), Pecém (CE), São Luis (MA) e Suape (PE) 등이다.

하다. 특히, 제조업분야의 변화는 괄목할 만한데, 생산 품목이 확장되면서 북동부 수출실적에 커다란 변화를 보이게 하고, 기존의 commodity 와 같은 기초 상품군에 치중하던 수출 산업을 자동차, 석유화학, 금속 등 진일보된 수출품목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보다 세계적 추세에 편승하여 역동적이고, 복합화적인 다양한 산업부문들이 생겨나면서 IT, 통신, 교육, 건강, 관광, 문화, 운송, 물류, 금융 등으로 주력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정 두드러지는 점은 북동부에 투자가 증가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 유치 증가를 유발하는 데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다른 아닌 세계전쟁이다. 세계전쟁은 지방 정부가 자기지역의 경제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 투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세제혜택을 더 많이 주는 투자유인 방법이다. 그 밖에 이러한 생산 환경 변화와 함께 노동력 공급문제도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데, 북동부 자체 역량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에 일자리를 찾아서 개발지역으로 이주하던 추세가 줄어들고 오히려 역 이주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 EPZ 조성 배경

브라질의 EPZ는 일종의 산업 특구의 의미를 지니며,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은 세금유예와 자유로운 환전,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원래 EPZ 계획은 1988년 7월에 만들어진 기본법체계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했고, 지금까지 하나의 EPZ도 운영도 되지않았다. 단지 2007년부터 연방 정부의 EPZ 재조성이 구체화되면서, 이 시도가 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브라질에서 허가받은 EPZ는 총 22개로서, 그중에 열 두 곳은 사르네이(José Sarney)정부 때, 네 곳은 이파마르(Itamar Franco)대통령이, 또 여섯 곳은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이 중 다섯 곳은 새롭게 지정되었다.

현재 브라질의 모든 EPZ는 조성 초기단계에 있으며, 네 곳-임비투바(SC), 페오필로오토니(MG), 아라과이나(TO), 히우그란지(RS)-만이 EPZ 부지에 적합한 초기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 있다.⁷⁾

[그림 2-1] 브라질 EPZ 조성 현황



7) EPZ 조성에 필요한 초기적 인프라 건설은 EPZ구역을 구분하는 담장과 외부에서 EPZ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 내부 경비시스템, 국제정 건물 건설 등의 단계를 포함한다. 관리원 설립에서부터 기본설계, 세관, 환경적 영향에 대한 심의, 인프라 건설, 투자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현재 각 EPZ는 지역 마다 단계적 절차를 밟아 가고 있다.

3. 국가적 인프라 통합과 북동부 EPZ와의 관계

브라질의 EPZ 조성은 국가적인 인프라 개혁과도 맞물려 있다. EPZ가 재착수에 들어간 시기인 2007년 브라질 연방정부는 성장촉진프로그램(PAC: 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을 통해 전 국토의 인프라 통합 계획을 추진을 발표했고, 이 계획에 따라 북동부 지역에는 산업 활성화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철도건설과 수자원공급 개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북동부횡단철도(Ferrovia Transnordestina)건설과 성프란시스코 강 유역 확장(transposição de bacia do São Francisco) 사업이 바로 그것인데, 이 두 사업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국토전체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EPZ 인프라 조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북동부횡단철도의 경우 내륙에서 항구로 연결되는 통로 개발이 미약한 상태에서 뻘아우이 주(PI) 내륙에서 뻘르남부꾸 주 EPZ에서 가까운 수아뻘(Suape) 항구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확장 건설되고 있고, 북쪽으로는 쎄아라 주(CE)의 EPZ인 뻘쟁(Pecém)항까지 직접 연결시킬 계획이다. 또한 성프란시스코강 유역 확장사업은 북동부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인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성프란시스코 강 하류의 지류를 건조지역으로 확장시켜 물 공급이 어려운 지역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산업 활동에도 연장하여 생산력을 강화시킨다는 의도가 있는데, 이 계획 역시, 쎄아라 주의 뻘쟁 EPZ까지 연결시키는 사업이다.

그 밖의 북동부 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사업들은 도로 및 철도, 공항과 항만시설의 확충 및 전력기반, 인력 확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특히, 전력부문에서 해안가와 내륙 환경을 이용하여 풍력과 태양열 발전이 증가하면서 신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의 가능성도 희망적인 상태이다.

4. 북동부 EPZ 조성과정 : 사례분석

브라질의 수출가공구역은 크게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역할은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확충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다. 현재 계획 중인 23개의 EPZ는 운영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 네 곳인-바이아 주(BA)의 일레우스(Ilhéus) EPZ, 히우그란지두노르찌 주(RN)의 아쑤(Assú), 산따까따리나 주(SC)의 임비투바(Imbituba), 뻘르남부꾸 주(PE)의 자보아평지과라라뻘스(Jaboatão dos Guararapes) EPZ는 민간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 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북동부에 지정된 EPZ는 9개가 있는데, 알라고아스를 제외하고 주마다 한곳 씩 지정되어 있으며, 유일하게 히우그란지두노르찌 주(RN)만이 두 개의 EPZ가 지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마라영 주(MA)의 성루이스(São Luís) EPZ, 뻘아우이 주(PI)의 빠르나이바(Parnaíba), 쎄아라 주(CE)의 뻘쟁(Pecém), 빠라이바 주(PB)의 산따히따(Santa Rita), 뻘르남부꾸 주(PE)의 수아뻘(Suape), 세르지뻘 주(SE)의 바하두스꼬게이루스(Barra dos Coqueiros), 바이아 주(BA)의 일레우스(Ilhéus), 히우그란지두술 주(RN)에 두 개의 EPZ가 지정되어 마카이바(Macafba)와 아쑤(Assú)가 있다.

지금부터 이 9개의 EPZ에 대해 분석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초기 조성단계에 있는 관계로 운영적인 면이나 결과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하고, 실행단계에 들어갈 경우, 보다 효과

적인 운영을 위해 각 EPZ의 입지관계와 생산연계관계, 그리고 개발 가능성 있는 산업부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가. 마랑영 주(MA)의 성루이스 EPZ

성루이스 수출가공구는 연방정부의 승인으로 1993년에 설립되었지만, 부지조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랫동안 조성사업이 중지된 상태에 있었다.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주 정부는 개발상공부(MDIC)에게 재배치를 요구했고, EPZ 위원회(CZPE)에게 바카베이라(Bacabeira)에 새로운 EPZ 설립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마랑영 주의 EPZ는 아직까지 주도인 성루이스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업특구가 위치해 있는 자리에 들어설 계획이다. 이 구역은 지정 초기에 면적 422ha로 책정되어 있었으며, 산업특구의 남쪽에 위치하기로 되어 있다. 관리회사는 AZPEMA로서 민관합작의 형태이며, 설립단계에 있다.

이 구역은 특히 이따끼(Itaqui) 항구에서 가깝게 위치하여 기존의 북동부횡단철도(구 CFN) 및 까라자스 철도, 그리고, 연방고속도로 BR-135에서 가깝다. 산업적 측면에서 1990년대 초 계획 당시에는 제철, 금속, 목재, 유제품, 섬유 등 가공업과 경공업위주의 생산을 예상했으나 현재 중화학 공업을 목표로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화학공업 위주의 발전계획은 지역 주민을 비롯해 관계당국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주요 환경보호지역으로 중화학 공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랑영 주는 성루이스 외에 비중 있는 주요 산업특구들이 존재하여 EPZ 확정을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루이스 EPZ를 그대로 설정해 놓은 이유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입주해 있는 40여개의 중화학 공업 기업들을 고려할 경우 이전가능성만 거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빠르나이바 주(PI) 빠르나이바(Parnaíba) EPZ

빠르나이바 관리회사는 Companhia Administradora da Zona de Processamento de Exportação de Parnaíba S/A이고 2010년 10월에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민관합작회사로서 빠르나이바 주정부가 90% 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주 산업연맹(FIEPI)이 소유하고 있다. 빠르나이바 EPZ 총 면적은 348.8 ha로서 EPZ 조성이 모듈형태로 구획될 예정이며, 이중 진입도로, 담장, 국세청 건물 등 기초 인프라 조성 면적은 31.5 ha로 설정되었다.

특히 빠르나이바 EPZ이 입지조건은 다른 여건에 비해 수출항과의 거리가 있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EPZ와 연결된 자동차도로나, 철도, 용수 공급지 등이 2km~5km 정도 떨어진데 비해, 항구까지의 거리가 약 25km 떨어져 있다. 비록 루이스꼬헤아 항구의 확장사업을 통해 대형 벌크선을 운행할 수 있는 터미널이 건설되고, 주변 운송환경이 철도를 비롯하여 다중방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 항구와의 거리감이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빠르나이바의 장점은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이 가능하고, 용수공급과 배수시설등 공공위생시설이 연방정부의 성장촉진프로그램(PAC)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주정부의 부담이 축소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빠르나이바는 기업농과 의약품, 기술관련 제조업부문을 개발의 주요

축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지역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작물을 활용한 제조업 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 결과 EPZ 에 입주할 예정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Vegeflora e Brasilceras Ltda(의약품) 와 Brasil Ceras Ltda(왁스수출), Parxtech(양어), Steelle(도자기제조 기구) Servtec(풍력에너지), Santos Bay Transportes(운송 및 물류) 등이 대표적이다.

다. 쎄아라(CE) 주의 빼쟁(Pecém)

쎄아라 주의 EPZ는 원래 1988년 마라카나우에 지정되어 있었지만 1990년대에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가 2009년 주 정부에 의해 다시 새롭게 설립되었다. 현재 쎄아라 주의 EPZ는 주도인 포르탈레자에서 60km 떨어진 성곤살루두아마란찌 시에 위치해 있으며, 빼쟁(Pecém) 산업항만단지(CIPP) 내 한 구역에 자리 잡을 계획이다. 2010년 9월 관리회사(EMAZP : 민관합작형태)가 설립된 이후 실제로 EPZ 운영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다른 주에 비해 비교적 실질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빼쟁(Pecém) EPZ는 330km²(33000 ha)의 항만산업단지 내부에 약 4271ha를 차지할 계획이며, 항만시설 및 대단위의 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있어 수출 여건이 거의 완벽한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호조건으로 인해 대규모의 제조 기업들이 이미 입주할 예정에 있는데, 그 중에는 동국제강(CSP)을 비롯해, Wobben(터빈제조), Hydrostec(관개 및 위생시설), Jotadois(건설), Tortuga(사료), a Refinaria Premium II da Petrobras(정유) 화력발전소, 쇼핑센터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라. 히우그란지두노르찌 주(RN) 마까이바(Macaíba) EPZ

히우그란지두노르찌 주는 2010년 개발통상부로부터 두 곳의 EPZ를 승인 받았다. 그중 하나는 마까이바(Macaíba)시이고 다른 하나는 아쑤(Assú) 시이다. 그 중 마까이바 EPZ 관리회사는 AZMAC으로서 마까이바 시청이 82.42%의 지분을 갖고 있고, AGN이 8.79%, FIERN(RN주 산업연맹)이 8.79%참여하는 민관 합작의 형태를 띠고 있다. 마까이바는 주도인 나탈(Natal)을 중심으로 9개의 시와 함께 권역을 형성하는 한 시로서 주도에서 14km 떨어져 있고, 두 개의 국제공항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

마까이바 EPZ의 면적은 125.7ha이고, 두 개의 연방 고속도로(BR-304, BR-226)가 지나가며, 나탈(Natal)항구에서 30.4km 떨어져 있다. 이러한 인프라여건 중 마까이바 EPZ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주변 산업단지와 연결할 수 있는 화물 수송 철도를 비롯하여 물류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EPZ에서 항구까지는 30km 이상 떨어져 있어 제조품 수출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 반면, 마까이바 근처에 가장 발달된 주도가 위치해 있어 도시 인구를 통한 일반 노동력 및 대학과 기술학교를 통한 기술노동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마까이바시에는 EPZ 외에 산업특구와 마까이바 선진제조센터(CIA)가있는 산업단지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교 산업단지와 연결할 수 있는 생산체인을 고려할 수 있으며, 마까이바 EPZ는 식품, IT, 섬유 의류 부문을 제조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마. 히우그란지두노르찌 주(RN) 아쑤(Assú) EPZ

북동부 EPZ가 대부분 해안가를 따라서 개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반해, 히우그란지두노르찌 주의 다른 하나의 EPZ는 북동부의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세르팅(sertão)에 위치한다고 하여 원래 이름은 아쑤 EPZ이지만 세르팅의 EPZ(ZPE do Sertão)라고도 한다. 이 EPZ는 2009년 허가를 받고, 관리회사 Empresa ZPE do Sertão Administradora Ltda.가 설립되면서 EPZ 조성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2011년 11월 24일에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 세제 혜택 실행이라는 EPZ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했다.

아쑤 EPZ는 약 1000ha의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고, 인프라공사가 끝난 후에 운영을 개시할 것이다. 아쑤는 히우그란지두노르찌 주(RN) 서부 내륙에 위치한 한 시로서 주도인 나탈(Natal)에서 207km 떨어지고, 인구 53,245명(IBGE, 2010)이다. 아쑤 EPZ의 여건은 농목축업과 광물 등 재료산업과 관련된 생산체인 형성에 유리하다. 또한 이 지역은 지금은 그 명성을 좀 잃었지만, 예전부터 브라질에서 가장 큰 내륙 유전지대로 주목받아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히우그란지두노르찌 주(RN)에는 정유시설(Refinaria Clara Camarão)이 존재한다. 단지 물류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못하다는 점이 정유능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바. 빠라이바 주의 EPZ - 산타히타(Santa Rita)

빠라이바 주의 EPZ는 주도인 조앙페소아 권역 내 산타히타시 일부 지역에 조성되고 있다. 1989년 설립 이래 아직까지 지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만 관리회사 CINPAR-Cia. de Desenvolvimento e Incorporações da Paraíba가 설립되어 있다. EPZ 면적은 240ha이고, 까베텔루 항에서 25km 떨어져 있으며, 조앙페소아(João Pessoa) 공항에서 8km 떨어져 있다.

빠라이바 주 EPZ는 북동부 횡단 철도를 통해 광물 자원 발굴지에서 항구로 연결시키는 프로그램과 관계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원자재와 농산물 가공 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외 섬유, 식품, 시멘트, 화학에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술 수준이 높은 산업 부문으로는 주변의 대학과 과학기술센터 등을 중심으로 전자, 정밀기계, 광학, 생명공학, 과학기기, 정제화학 등도 있다.

사. 빠르남부꾸 주(PE)의 자보아땡두스과라라빠스(Jaboatão dos Guararapes) EPZ

자보아땡 EPZ 계획은 2009년 연방 EPZ위원회(CZPE)로부터 허가 받았고, 주정부와 시정부의 외에 빠르남부꾸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설회사인 Moura Dubeaux Urbanismo가 관할하고 있다. 1988년 첫 번째 EPZ 관련법을 기초로 작성된 계획서에 의하면, 빠르남부꾸 주가 EPZ를 수아빠 항구 내에 조성하겠다고 신청했지만, 법적으로 허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무산되었다가 2007년 룰라대통령에 의해 기존의 법을 갱신함에 따라 2009년 초에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다. 무엇보다도 빠르남부꾸 주 EPZ의 특징은 새롭게 개정된 법체계를 처음 적용한 케이스로서 운영에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를 이끄는 민간 합작 사업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초기의 합작 시도를 무산하고, 현재 자보아땡 EPZ의 관리

회사 ZPE Administradora S.A. 는 완전한 민간기업이다.

자보아멩 시는 주도인 헤씨피와 수아삐 항구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자보아멩 EPZ는 실제로 수아삐(Suape)의 배후지에 위치해 있으며, EPZ 총 면적은 198ha이다. 이는 자보아멩 EPZ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운영된 다기보다 수아삐산업항만단지(CIPS)의 한 부품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자보아멩 시는 국제공항(Recife/Gararapes - Gilberto Freyre)에서 2km거리에 있고, 주도인 헤씨피(Recife)에서 15km 떨어져 있으며, 수아삐단지(CIPS)에서는 29km 떨어져 있다. 이와 같이 자보아멩 EPZ는 수출항과의 거리로 인해 그다지 좋은 입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아삐의 부차적 역할을 감안하면 항구에 이르는 수송 인프라가 다중 적으로 확립된다면 그다지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보아멩 시의 주요 경제활동은 관광, 상업, 공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Coca-Cola, Unilever, Basf, Nestlé, Vitarella 생산공장 외에 Wal-Mart 공급센터와 같은 주요 물류센터가 있으며, 그 외 다양한 운송회사가 활동하고, 앞으로 의약품과 생명공학 관련 공장들이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수출품목으로는 전기재료, 식품, 음료, 포장, 종이, 광물 관련 상품, 의류, 화학 등 다양한 제조업 발전 가능성이 있다.

아. 세르지삐 주의 바하두스꼬께이루스(Barra dos Coqueiros) EPZ

현재 세르지삐 주정부는 과감한 산업계획(PSDI-Programa Sergipano de Desenvolvimento Industrial)를 통해 다양한 제조기반을 만들기 위해 기업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EPZ 조성도 이러한 정책 수행의 발판이 되고 있다. 바하두스꼬께이루스 EPZ 관리회사도 대부분의 다른 북동부 관리회사 - Companhia Administradora da Zona de Processamento de Exportação de Sergipe -와 같이 민관합작 형태를 갖추고 있다.

바하두스꼬께이루스 시는 세르지삐(Sergipe) 주도인 아라까주(Aracaju) 권역내에 있는 도시로서 시 내부에 항구가 있고, 대도시 근처에 인접해 있어 제조뿐만 아니라 노동력 공급, 수출에 매우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세르지삐 항구에 위치한 삐트로브라스(Petrobras)가 운영하는 해양터미널(TMIB)은 2400m 해안을 따라 설치되어 있고, 최고 10m 홀수의 선박도 입항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바하두스꼬께이루스 EPZ는 50km 근방에는 다양한 산업단지들이 위치해 있고, 이러한 제조업 기반 하에 식품, 섬유, 의류, 구두와 같은 경공업뿐만 아니라 광업, 석유화학, 등의 중화학 공업 관련 기업들도 다양하게 이식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PZ를 통해 추구하려는 산업부문에는 기술수준이 높은 수출상품들을 고려하여 유전 발굴과 개발에 필요한 기기와 기계, 석유 운송 관련 기기와 시스템 등 보다 석유 관련 제조 분야를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자. 바이아 주(BA)의 일예우스(Ilhéus) EPZ

바이아 주의 EPZ도 다른 주와 거의 마찬가지로 1989년 제정되어 20년 동안 잊혀져 있

다가 회복된 경우이다. 관리회사도 처음에는 일예우스 시가 주도하는 공기업(ZPE_CIMAZE)이었다가 최근에는 시정부가 허가한 민간 컨소시엄 회사(ZPE Bahia S/A.)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3365ha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 책정되었고, 초기단계에는 225ha 내 제조공장 부지를 96개로 나눌 예정이다.

일예우스 EPZ는 브라질의 새로운 물류 중심지를 꿈꾸며, 계획 중인 바이아주 동-서 횡단철도(Ferrovia Fiol) 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물류체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항만, 공항, 도로는 물론 부족한 철도건설을 통해 다중 수송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예우스 EPZ 주변을 중심으로 주도 살바도르(Salvador)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까마짜리 석유화학단지(Pólo Químico de Camaçari)의 역할과 비슷한 제조업 공간을 만들려는 목표가 있다. 일예우스 EPZ를 통해 개발시킬 제조업 부문에는 철강부문으로서 바이아 내륙에 위치한 철 생산지인 까에찌떼(Caetité)와 일예우스 항구를 연결시켜 철강 산업을 확충하고, 이와 비슷하게 목재, 금속, 대두, 섬유, 의류, 식품 등 원자재 가공 이외의 각종 제조업부문으로 확대하여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제3절 브라질 EPZ의 법령, 행정조직과 인센티브 및 규정

1. 브라질의 EPZ를 위한 법적 근거 : 최근의 법제화

EPZ에 관한 브라질 최초의 법령 2.452은 1988년 제정되었다. 이후 19년이 지난 2007년, 법령 Lei n^o 11.508, (20.07.2007)에 의해 개정되었고 이 법은 룰라 전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법령 n^o 6.814 (06.04.2009)에 의해 재규정된다. Lei 6.814에 따르면, 행정부는 지역불균형 감소, 국제수지 강화, 기술전파 촉진 및 브라질 경제 사회발전을 위하여 EPZ를 저개발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한, 국가수출가공무역지대위원회(CZEP)와 그 권한을 규정하는 법령 n^o6.634가 2008년 11월 5일 제정되었고, 세관관리, 통관수속, EPZ내 제품의 세관통제를 규정하는 규범령 RFB n^o952 제정을 비롯하여, 국가수출가공무역지대위원회(CZEP)를 결성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형성하였다.

EPZ의 설치는 주 혹은 시의 제안과 CZPE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의 법령을 통해 실현된다. EPZ는 해외 수출 제품생산을 위한 기업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교역지대이고, 세관 통제를 위한 일차적인 지역으로 정의된다. 동법에 의하면, ZPE는 수송인프라를 지원받게 되고, 자체 통관수속시스템을 보유하게 되며, 항구 및 공항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략적 위치에 설치될 수 있다.

2. 행정조직 : 국가수출가공무역지대위원회(CZPE)

연방정부 차원에서 브라질 EPZ 프로그램은 EPZ국가위원회(CZPE)와 국세청 두 기관이 지휘한다. 또한 CZPE는 개발상공부와 재무부, 국가통합부, 환경부, 기획부, 정부부의 대표들로 구성된 연합체로서 개발상공부에 통합되어 개발상공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다. CZPE의 주요 권한은 EPZ 설립계획 승인과 EPZ 내 입주산업계획 승인, 결의안을 통해

EPZ 운영방안을 규정하고, 인프라 시공의 시작과 종료 준수기한을 조절한다. 국세청은 개별적으로 EPZ 내에 사무소를 두고, 보세구역 내 출입 물품들의 세무조사, 통제, 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국세청은 또한 통관절차(alfandegamento) 계획안을 검토 하여 승인된 초기 계획안과 일치하여 기반 시설이 완성되면 세관절차 실행을 허용하며 EPZ운영을 허가한다. CZPE는 장관의 감독하에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사무총장직을 둘 수 있다. CPZE의 권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들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

- I. EPZ 설치 제안 분석 및 대통령의 최종판단과 결정에의 귀속
- II. 기존에 설치된 시설 확장 등을 포함한 산업계획 분석 및 승인
- III. EPZ 정책보다 더 나은 정책강령 추진
- IV. EPZ 내에 기업 설치 허가
- V. 메르코술 (MERCOSUL) 표준 명명법 분류에 의거하여 EPZ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 승인
- VI. EPZ내에서 운영되도록 인가된 회사에게 최대 20년까지, 현행법률 11.508/2007 적용 기한 결정
- VII. VIII번 사항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 구분 기준 설정
- VIII. 할부 상황에 있어서 긴 시일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VI번에서 결정된 같은 기한을 한 번 더 연장
- IX. EPZ 설치 제안 제출 및 산업프로젝트 절차 확립
- X. 각각의 EPZ에 대한 행정적 권한 및 책임(의무) 설정
- XI. 산업 프로젝트 발표 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요구 조건 설정
- XII. 산업 프로젝트의 기술적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매개변수 승인
- XIII. 국가 산업에 미치는 EPZ 제도의 영향을 모니터할 수 있는 메커니즘 설립

특히, CZPE는 각 주의 EPZ 계획안 제안 시 설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운영에 관련된 지침을 제시하고, 산업계획 검토 절차에서는 계획안이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한 지의 여부를 판단, 국가 산업정책에 근거한 메카니즘 설립과 정책 오리엔테이션과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EPZ 내 산업이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20% 내수 공급을 중지하는 등 국내 판매 비중을 조절하거나 수출 비중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투자유인과 규제조치

가. 세제인센티브

브라질 EPZ에 입주하는 기업들 중 수출이 이루어질 경우 절차에서 발생하는 과세가 유예된다. 특히, 브라질 세제 중 수입세(II), 공산품세(IPI), 사회복지지원 기여세(Cofins), 사회통합 기여세(PIS/PASEP), 재화 및 용역 수입자에게 부과되는 수입관련 사회통합 기여세(PIS/PASEP-Importação), 수입관련 사회복지지원 기여세(Cofins-Importação), 해상운송 부가세(AFRMM)의 유예에서 수출 시 면제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특히, 북동부 지역 EPZ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마나우스 면세지역과 함께 10년 동안 75%의 소득세(IR) 감면과 수출입 시 유통세(ICMS) 유예도 있다. 특히, 연방 기관의 허가 면제를 통해 수출입 시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외환 자유를 통해 수출시 수익 100%도 해외 유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제품이 기계, 장구류, 도구, 장비류 등과 관련된 것이라면 신규 제품 뿐 아니라 사용된 제품에 있어서도 면세혜택이 적용될 수 있고, 그것들은 EPZ 내에서 운영되도록 허가된 기업들의 고정자산으로 병합되어야 한다. 사용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산업 조립 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기업의 사회자본통합의 구성요소여야 한다.

나. 환율 인센티브

법률 11.508/2007은 국가통화위원회에 의해 설정된 한도를 이행하는 기업에게 그들의 수출에 있어 100%의 외환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외환자율권을 부여한다.

법률 11.508/2007이 공포된 시기에는 EPZ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러한 혜택들이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가통화위원회의 결성과 함께 법률 n^o3.719/2009로 인해 많은 수출기업에게 이러한 혜택이 부여되었다. EPZ의 경우, 법정 규정상 기간이 20년이지만 한 번 더 똑같은 기간 연장을 가능케 함으로써 혜택을 유지하는데 큰 기회를 제공한다.

다. 행정적 인센티브

법률 11.508/2007에 의거하여, 위생, 국가안전, 환경 등의 통제를 제외하고는 EPZ에서 운영되는 수출입기업들은 관련 주 기관들의 허가나 인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허가 및 인가의 면제는 다음과 같은 수출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브라질과 지불협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로 수출되는 상품들
- 국가의 수출규제상품에 해당하는 것들
- 수출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상품들

라. 기타 혜택

Lei 11.508/2007에 따르면, EPZ에 설치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재정적 혜택 및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SUDAM, SUDENE과 중서부지역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
- art 9^o da MP n^o 2.159-70 de 2001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해외교역촉진) : 해외 시장조사와 브라질 제품 수출장려책 등과 관련된 비용지불을 위한 해외로의 송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 Lei ^o8.248 de 1991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정보화, 자동화에 관한 법률) : 정보기술 분야 R&D활동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정보 및 자동화 제품들의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음
- Arts. 17 a 26 da Lei n^o11.196 de 2005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Programa de Inclusao Digital) : 각 주와 국가재정정책위원회(Confaz)의 결정에 따라, 수입과 국내시장구매 측면에서 EPZ내의 기업들은 ICMS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 EPZ 설치 제안

EPZ 설치 제안은 CZPE 강령 n°002에 따라 주 혹은 시가 연합하거나 각각 제출되어야 하며, 각각의 위원회는 분석 작업 이후의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EPZ 설치 제안은 CZPE 프로토콜에 의거하여 평가된다. 법령 n°6.814 de 2009에 따르면 EPZ 설치 제안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 I. 가용성의 증명을 포함한 EPZ의 총 구획을 한정
- II. 세관관리, 세관 감시 및 통제 및 국가안보, 식물 및 환경보호를 위한 설치, 구조, 장비류 등에 따른 분리된 구역의 설정
- III. 항구, 공항 접근로 및 통관 경계선 설정
- IV. 인프라 확충 공사 및 비용에 관련된 보고서
- V. EPZ 내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 가능한 기본적인 에너지, 통신, 교통 인프라 가용성 증명
- VI. 시설 설치 시간계획서
- VII. EPZ 설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의 가용성 증명
- VIII. 환경적인 관점에서, 유수의 환경단체에서 지정한 산업 설치 계획에 이용될 수 있는 선택된 지역범위의 확정
- IX. 지원자의 실무수행 기간 중:
 - a) 적절한 시기에 유수의 기관과 함께 환경 라이선스를 요청한다.
 - b) EPZ 설치 후 90일 이내에, EPZ 관리부 역할을 할 특수한 기능의 법인 설치 및 통관 당국에게 도움을 주고 EPZ 내에 설치될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설치
 - c) CZPE에 의해 사업소유자의 계획이 승인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EPZ의 관리부가 그 소유권이나 토지영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CZPE는 제안서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고려할 것이다:

- 정부자산에의 부합도, 특히 생산적개발정책 포함 여부
- 수출을 위한 EPZ의 특별한 지리적 위치
- EPZ내 운영에 관심있는 기업들의 총투자 가치

CZPE는 제안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술적인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요구사항, 조건, 요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PZ의 설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 I. EPZ 설치 공포 이후 EPZ의 관리부가 12개월 이내에 설치 제안서에서 예상한 공기 계획표에 따라 설치공사 착공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
- II. 설치 제안서에서 예상한 설치공사완료시점 1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바. 산업설치계획의 승인절차

EPZ 내에 기업 설치 요청은 제안서에 의해 결정될 것이고, CZPE 강령 n°003에 규정

되어 있는 요구사항에 따른다. CZPE로 제출된 제안서는 프로젝트 승인을 결정할 EPZ 관리부의 법적 대표에 의해 확인된 서류에 따라야 한다. 프로젝트 제안서에는 메르코솔 표준 명명법의 구분에 따라 생산될 상품의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산업설치 제안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안자의 일반 정보; 프로젝트의 특징; 재정적-경제적 측면; 시장 연구 등. 특히 산업설치 제안서에는 자본재와 input이 어디서 공급되는지를 절대적인 가치로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각각이 국내에서 공급되는 것들인지 혹은 수입되는 것들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산업 제안서 분석은 전문가들과 CZPE 강령에 의해 정해지며, 프로젝트의 분석에 있어서, CZPE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고려하게 된다: 정부자산에의 부합도, 특히 생산적 개발정책 포함 여부; EPZ내 운영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총투자 가치 등. 공장 설치를 포함하여, 산업 제안서의 승인은 CZPE의 권한이다. 승인 이후, 투자자들은 CZPE에 의해 결정된 90일 내의 기한 내에 기업을 구성해야 한다. 상기 명시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프로젝트 승인의 폐지를 의미한다.

사. 산업단지관리원

EPZ 관리회사는 국영, 민영, 혼합경영으로 나뉘며, EPZ 운영은 국세청 허가 이후 해당 지역의 세관 절차 수립 이후에만 가능하다.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 승인된 22개의 EPZ중 7개의 EPZ가 국세청 허가(alvará)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절차는 6~12개월이 소요된다. 그 밖의 15개의 EPZ는 EPZ 관리원 선정과 함께 인프라 및 물류, 기업 조사 등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연구 중에 있는데, 인프라(항만, 도로, 철도 등)기반 조성 여부에 따라 실행 시기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EPZ 요구사항

가. EPZ 운영 및 설치를 위한 일반적인 요구조건

- EPZ는 저개발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 CZPE에 의해 확립된 EPZ의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 주 혹은 시에서는 교통, 전력, 공공안전 등과 같이 EPZ 내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재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 주에 의해서 완성된 제안서는 art. 2º da Lei 11,508/2007과 법령 6.814/2009의 사항과 엄격하게 부합되어야 한다. EPZ 설치 제안은 CZPE에 의해 심사될 것이고, 승인된 후 대통령에게 설치 추천을 할 것이다.
- 관리부는 지역관세 행정, 감시, 통제활동에 필요한 것들 및 장비, 설치를 위한 비용 조달에 노력해야 한다.
-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EPZ 지역은 브라질 주정부 수입관리부서에 의해 승인된 통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EPZ 내에서 생산된 상품은 국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상품과 그 영향은 CZPE의 행정 비서에 의해 감시될 것이다.

나. EPZ 내에서 운영될 기업들에 대한 요구사항

- EPZ내의 기업설치는 프로젝트 제출과 그에 따른 CZPE의 승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수출적 특성에 기인하여, EPZ에 설치된 법인은 제품과 서비스 판매의 1년 총 수입이익 중 해외로의 수출에 기반한 수입이익이 최소한 80%를 유지하여야 한다.
- EPZ에 설치된 기업은 인센티브 혜택을 위하여 EPZ 외 지역에 지사나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 이미 존재하는 산업플랜트를 EPZ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 무기, 폭발류, 방사선 물질의 생산은 유수의 기관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상품들의 경우에도 규정에 의해 생산금지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 CZPE에 의해 설치 제안서가 승인되었다면 관심 있는 자들은 CZPE가 규정한 90일 이내의 기한 내에 기업을 설립하여야 한다.
- 설립된 기업은 CPZE에 그들의 책임을 서약하여야 한다:
 - I. 각각의 제안서를 검사한 후 CPZE에 의해 지정된 추가적인 조건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 II. 법률에 지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 해외로의 수출에 기반한 1년 수입이익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5. 산업특별통관전산시스템

이 제도는 상품의 입고, 정박, 출고의 세관통제로 특징지어진다.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RFB의 컴퓨터 시스템에 상호 연결되어 각각의 기업이 정보처리과정을 통해 통제가 가능해지는 시스템이다.

규범강령 RFB N^o757 de 25/07/2007에 따라 산업특별통관전산시스템(RECOF)은 혜택 수혜기업들이 제품 수출 또는 국내 시장에 대한 제조 업무에 적용하는 세금, 상품에 대한 지불을 면제 받으면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제조업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 I. 다음과 같은 섹터의 IN RFB N^o 757/07의 첨부 I 에 리스트되어 있는 조립제품
 - a) 항공
 - b) 자동차
 - c) 정보통신
 - d) 반도체 및 첨단 기술의 전자, IT, 통신 부품
 - II. 이전 항목에 언급된 제품 조립에 사용되는 부품의 변형, 가공 및 조립
 - III. 수입된 것들과 똑같은 상태로 판매될 부품의 포장 및 재포장
 - IV. 첨부 1에 리스트 되어있는 항공산업의 해체 및 재수출을 위한 중고제품
- 제도의 적용은 유지보수 의무를 규정한 RFB에 관심을 보인 기업들의 사전 허가에 따라 좌우된다.

제4절 비교 및 정책적 제언

브라질은 최근 신흥국가 중에서도 년 7%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도 국토균형성장면에서는 많은 개선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국가경제규모가 GDP 대비 세계 5위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북동부지역에는 산업시설 및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이 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책이 경제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최근 이 지역 (SUDENE)에 대한 경제발전책으로서, 7개 수출가공지역 (ZPE: Zona de Processamento de Exportacao)을 설정하여, 이중 Pecém과 Suape 두 지역에 대한 시범적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EPZ 수행경험이 부재한 주정부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 운영경험에 대한 Knowledge Sharing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한국의 경험이 정책, 제도, 운영 및 경제효용효과 유발 면에 있어서 유효한 경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지 EPZ 입주계획업체와 주변산업단지에서 입주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브라질 EPZ 협회, 브라질 개발상공부산하의 CZPE(Conselho Nacional de ZPE, 수출가공지역국가위원회) 차관보와의 사전접촉에 따르면, (i) 연방세제와 주 세제 간의 상치조항에 관한 조율 (IPI, Cofins, PIS/PASEP, AFRMM등); (ii)수입관세혜택 범위에 관한 적용범위의 확정성 및 적합성; (iii)특정산업육성에 대한 정책의 정향성 및 차등 incentive제도의 유효성; (iv)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L)과의 상치성; (v)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외적 인센티브의 실현성; (vi) 인력수급에 대한 지방정부 (주 Estado를 의미)와 연방정부의 구체적 협력 메카니즘 및 노동력 확보와 이주정책; (vii) 주변산업과의 후방연관(backward linkage) 및 육성산업과의 전방연관(forward linkage); (viii) 통관시스템에 관한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제도 및 법, EDI, web-based Single Window system, standards, data security management, payment system, interoperability with e-government system; (ix) 물류시스템과 e-trade의 연동성; (x) 수출 및 내수반입율의 적정선과 차등가능성; (xi)예외조항적용의 실제; (xii) 투자적격심사의 주체; (xiii) management office (수출가공지역관리청)의 PPP(public and private sector partnership); (xiv)대외 외환관리에 관한 특혜; (xv) EPZ와 SEZ의 호환성 및 전환정책사례 (한국 및 중국)등, 일련의 knowledge sharing program의 구체적 정책자문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2011년 8월에 발표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분석해보면, 동법과 상호 연관성이 있는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대외무역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에 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법, 외국인토지법, 항만공사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환경영향평가법, 고용법, 전자정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등 30~40개 관련법령에 대한 상호연관성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된 반면, 현 브라질의 EPZ법령은 기타법령과의 관계가 전혀 정비되지 않아, 법률간 충돌(conflict of law)의 개연성이 다분하며, 분쟁해결 메카니즘(dispute resolution mechanism)의 부재에 따른 부작용이 투명성 저하 및 비효율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산재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법, 제도, 운영방식, 기술유발 효과 등을 정확한 한국사례의 발전과정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브라질 북동부지역의 수출가공구 개발 및 조성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브라질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EPZ 즉, FTZ(Free Trade Zone)와 좀 더 진보한 개념의 FEZ(Free Economic Zone)는 브라질에서 개별적으로 말하는 산업단지라기 보다는 진보된 산업클러스터 구성 요소의 일부다. 다시 말해서 브라질은 아직까지 개별적인 산업단지 조성 외에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된 산업단지의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못하다. 특히 주 정부와 같은 지방정부의 힘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지방정부와는 완전히 다르고 그 주체적 역량이 매우 강한 편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지도력이 지나치게 강조되어도 안 되고, 오히려 체계적 기반을 잘 마련하여 그 체계에 적응시키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다.

둘째, 브라질의 EPZ 경험은 이제 초기단계이다. 지정이후 2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어려운 것이 실제의 브라질 현실이다. 따라서 세부적인 제한 요소를 따지는 것보다 일단 EPZ 운영이 시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고 긍정적인 요소들을 확충하고, 제한 요소들을 줄이는 체계를 만드는 데, 협조하는 방법이 우선과제라고 본다.

셋째, 현재 한국의 산업단지 건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입지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입주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도 커다란 과제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PZ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입주기업이 원만히 생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브라질의 경우 이러한 지원을 관리회사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유리한 점은 대부분의 관리회사가 중앙정부관할이 아니라 초기에만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민관합작 형태에서 민간기업에게 이양하는 관리 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최근 한국의 지원형태 위주의 유연한 경영방식이 비교적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본다.

넷째, 한국은 오랫동안 수출지향 정책을 써 왔기 때문에 세계 분업 편입이라든가 외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빠른 편이다. 반면, 브라질의 산업체제는 수입대체산업화 패턴에 익숙해 있어 외부적 요소들을 수용하는데 많이 더딘 나라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한국의 산업단지조성 경험은 브라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고, 이러한 경험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제안들을 그룹화하여 요점들을 제안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브라질 쪽에서 실무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케이스 별 제안 방법이나 운영 전문가가 직접 제안을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한국과 브라질의 EPZ 법령, 행정조직, 인센티브 및 규정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브라질에 대한 시사점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브라질의 EPZ내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와 운영의 간편화 같은 장점들은 한국과 유사하다. 즉 라이선스가 필요 없고, 통관지역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관세가 인화되어 운영상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중고품을 포함하여 기계, 장비, 도구 등의 수입절차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다른 관세제도들과는 반대로, 수입 시 세금면제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수출을 위한 최대한도의 기한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수입 라이선스

가 요구되지 않는다. 다른 제도와는 다르게, 취소나 변경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신용 등급도 상향조정되고, 최소 기한 20년간 투자혜택이 보장된다.

반면에 한국과 비교 시 목격되는 단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EPZ에 설치된 기업들의 혜택이 법률11.508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한적이고, 명시된 혜택외의 다른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둘째, 수출의무규정에 따라, 내수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길 원하는 EPZ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셋째, 원스톱서비스(One-Stop-Service)의 부재로 인해 EPZ 제안서 제출 및 승인절차가 복잡하여 중소기업의 유치가 지연될 수 있다. EPZ는 수출성장 및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도구로서, 이의 성공은 단지 할당된 인프라,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 및 법적 안정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사회적 구조내의 전략적 행위 통합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Abrazpe, <http://www.abrazpe.org.br/>
- Adece(Agência de Desenvolvimento do Estado do Ceará S.A.) 2011, “Um Novo Ceará : com mais oportunidades de negócios” Conselho Estadual de Desenvolvimento Econômico/Governo do Estado do Ceará.
- Agrosoft Brasil, “Obras da Ferrovia Oeste-Leste mudam a paisagem e a economia em 20 municípios”, 16/12/2011, <http://www.agrosoft.org.br/agropag/220191.htm>
- Almanaque Abril 2011, Editora Abril, São Paulo, 2011.
- Arquivo da categoria da logística, 23 de agosto de 2011, <http://fernandofinancas.wordpress.com/category/logistica/>
- Banco do Nordeste, 2011.
- Barros, Haroldo, Questionário respondido pelo Assessor da SEDETEC(Secretaria de Estado de Desenvolvimento Econômico e da Ciência e Tecnologia do Governo de Sergipe.
- Brasil Portais, "Empresas nacionais se interessam pela ZPE de Parnaíba 30/ago/2011.
- Cais do Porto.com, 12/março/ 2010, <http://www.caisdoporto.com/v2/listagem-materias-detalhe.php?id=18&idMateria=300;>
- Ceará, Governo do Estado, “Proposta de Relocalização da ZPE do Ceará, 2009.
- Daewon Choi,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Export Subsidies, Investment Policy: The Case of EPZ Development in Brazil”,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011.
- Diário do Nordeste; Banco do Nordeste, Maio/2011, pp.29-30
- DNIT, Mapa Multimodal de Pernambuco, 2009
- Globo Blogs, “PAC-RN, Refinaria e Pré-Sal”, 12/ago./2009, <http://oglobo.globo.com/blogs/petroleo/posts/2009/08/12/pac-rn-refinaria-pre-sal-213323.asp>
- Jornal O Mossoroense, Mossoró, RN, 26/11/2011 e Sexta-feira,
- Jornal O Mossoroense, Mossoró, RN, 12 de Agosto de 2011, <http://omossoroense.com.br/regional/5687-criador-de-proposta-da-zpe-do-sertao-sera-agraciado-hoje-com-titulo-de-cidadania-potiguar>
- Maranhão Maravilha, sábado, 17 de dezembro de 2011, <http://maranhaomaravilha.blogspot.com/>
- Milani, Edison José & Araújo, Lauri Medeiros de, “Recursos Minerais Energéticos: Petróleo”, Geologia, Tectônica e Recursos Minerais do Brasil, CPRM, Brasília, 2003, p.543.
- Ministério de Desenvolvimento, Indústria e Comércio Exterior, ZPE: Legislação Básica, 2011, MNIC/SECZPE.
- _____, Manual ZPE 2009
- Neto, Mirocles Campos Veras, “ZPE Parnaíba- PI”, Apresentação realizada em Fortaleza(27/05/2011).
- Nota Técnica, Companhia de Administradora da ZPE de Parnaíba-PI
- Portal Tambaba, http://www.tambabatur.com.br/tambabatur_como_chegar.asp

Santos, Abdelaziz Aboudo, “Maranhão um estado de oportunidade”, Secretário de Estado do Planejamento e Orçamento, Governo do Maranhão, outubro, 2008.

Secretaria do Desenvolvimento, Industria e Comércio ? Sedinc, 2011

Sedetec, Governo de Sergipe, Aracaju, out. de 2011

Silva, Anieres Barbosa & Gomes, Rita de Cássia da Conceição, “Dinâmica e Organização do Espaço Metropolitano de Natal/RN: Uma Leitura a Partir do Setor Terciário”, IX Coloquio Internacional de Geocrítica, Porto Alegre, 28 de maio - 1 de junho de 2007, Universidade Federal do Rio Grande do Sul

Transporte Intermodal e Potencial Logístico de Escada, 02/05/2009, PE Desenvolvimento, <http://pedesenvolvimento.com/2009/05/02/transporte-intermodal-e-potencial-logistico-de-escada-parte-i/>

Tribuna do Norte, 09/dez./2009, <http://tribunadonorte.com.br/noticia/criacao-da-zpe-do-vale-do-acu-e-aprovada-pelo-mdic/134144>

VBA Tecnologia e Engenharia S/A, Secretaria da Infraestrutura/Governo do Estado do Ceará, 13/jul./2010

ZPE Bahia e Complexo de Logística Intermodal Porto Sul, “Oportunidades de Investimento, Salvador, Bahia, 03 de agosto de 2011

ZPE - ZPE de Barrados Coqueiros-SE, Apresentação em PPT, SEDETEC, Governo de Sergipe, Aracaju, outubro, 2011; Banco do Nordeste, 2011, pp24-25.

<http://abrazpe.org.br/index.php/noticias/89-implantacao-do-projeto-da-zpe-de-assu-foi-deferida-na-receita-federal>

<http://paduacampos.com.br/blog/?p=12847>

<http://oglobo.globo.com/blogs/petroleo/posts/2009/08/12/pac-rn-refinaria-pre-sal-213323.asp>

<http://www.portalcorreio.com.br/noticias/matler.asp?newsId=149233>

<http://historiadaparaiba.blogspot.com/2010/01/atividades-economicas-da-paraiba.html> , “Atividades econômicas da Paraíba Agricultura, Pecária, Indústria, Comércio e Recursos Minerais”, História da Paraíba,

<http://www.paraiba.pb.gov.br/10531/ricardo-pede-apoio-ao-ministerio-do-desenvolvimento-para-distrito-industrial.html>

<http://www.caisdoporto.com/v2/listagem-materias-detalle.php?id=18&idMateria=300>

<http://pensargrandeilheus.blogspot.com/2009/04/zpe-complexo-intermodal-siderurgia-e.html>, domingo, 5 de abril de 2009

<http://www.skyscrapercity.com/showthread.php?t=1286173>

<http://www.mpx.com.br/pt/nossos-negocios/geracao-de-energia/empreendimentos/Paginas/energia-Pecém.aspx>

<http://www.martins-rn.com.br/comocheGAR.htm>

<http://investirnoriograndedonorte.wordpress.com/cidades/macaiba/zpe-macaiba/>

제3장 한국의 수출가공구 개발과 브라질에 대한 의미

마 재 신 (이화여자대학교)

< 요약 >

해외자본 유입과 수출증진의 한 수단으로서 한국정부는 마산에 수출자유지역이라는 이름의 첫 수출가공구를 설치했다. 이는 1970년에 설치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수출가공구 사례들 중의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다. 만족스러운 입지조건, 조세상의 인센티브, 낮은 임차료, 적절한 인프라의 존재,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마산지역을 수출실적, 외국인투자의 유치, 고용증진, 그리고 기술이전과 같은 측면에서 성공적인 결과로 이끈 요인들이다. 1973년에 두 번째 수출자유지역이 이리, 현재의 익산에 설치되었다. 무엇보다도 부적절한 입지조건과 변화하는 경제여건변화에 대한 비효율적인 대처와 같은 요인들이 익산지역의 사례를 실패로 이끈 셈이다.

2000년도에 수출자유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개명되고, 현재는 제조업형과 물류형이라고 하는 두 유형의 자유무역지역이 존재하며, 전자가 수출가공구의 성격을 반영한다. 현재 5개의 제조업형 자유무역지역과 6개의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이 존재한다. 상공부, 현재의 지식경제부가 수출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동 관리원은 원스톱서비스를 입주기업들에게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정부는 조세 인센티브, 수입관세 면제, 낮은 임대료와 같은 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다.

한국의 수출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난 과정은 마산지역이라는 성공 사례와 익산지역이라는 실패사례를 보여 준다. 또한, 최근 조성, 가동되고 있는 대불과 군산지역의 사례는 과거와 같은 경공업이 아니라 중공업 위주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는 점에서 수출가공구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준다.

수출가공구를 설치, 운영해 온 한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의미를 브라질 측에 제공해 준다. 첫째, 브라질은 투자기업의 시간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한, 상황변화에 민첩하게 정책목표를 전환해 줘야 하며, 수출가공구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통비용을 줄이는 측면에 주목하여 수출가공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당국 사정에 적합하도록 투자자들에게 실제 매력에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수출실적요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출가공구의 산업구조는 브라질 및 지역경제의 비교우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수출가공구의 산업구조는 인근 지역 산업단지의 산업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일곱째,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데네 지역의 입장에서는 고용증진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설치된 수출가공구가 안정화된 단계에 이르면 수출가공구의 목표를 점차 선진기술의 이전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1절 서론

수출증진과 해외자본 유치의 한 수단으로써 한국정부는 수출자유지역이라고 불린 한국 최초의 수출가공구를 마산에 설치하였다. 이는 그 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수출가공구들 중의 하나로 불리게 된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은 60만 6천 평방미터의 면적 위에 1970년 설치되었다. 좋은 입지조건, 조세상의 인센티브, 낮은 임대료 수준과 적절한 인프라 및 행정 서비스의 제공 등은 수출실적, 해외직접투자의 유입, 고용창출, 기술이전과 같은 측면에서 마산수출자유지역을 성공사례로 만들게 했다. 두 번째 수출자유지역이 이리 (현재 익산)에 설치되었으나, 부적절한 입지조건과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으로 인해 익산의 경우는 수출가공구로서 실패 사례에 속하게 되었다. 2000년 수출자유지역들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며, 그 이후 여러 자유무역지역들이 추가되었다. 현재 제조업 중심과 물류 중심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자유무역지역들이 존재하며, 전자가 전형적인 수출가공구의 성격을 반영한다. 2011년 12월 현재 다섯 개의 제조업 중심 자유무역지역과 여섯 개의 물류형 자유무역지역들이 존재한다.

상공부, 현재의 지식경제부가 수출자유지역들의 운영 등을 관할해 왔다. 수출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사업신청부터 생산과 수출에 이르기까지의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리고 정부는 조세상의 혜택과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포함한 많은 혜택을 입주기업들에게 제공해 왔다. 1996년 이래 중앙정부는 관리원의 권한을 강화해 주었으며, 이는 입주희망기업들의 시간비용을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한국의 지난 40여 년간에 걸친 수출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의 역사를 볼 때, 마산지역과 같은 성공사례와 익산지역과 같은 실패사례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개발되어 운영 중인 대불자유무역지역과 군산자유무역지역과 같이 경공업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중공업 중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수출가공구의 사례들이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 장은 수출자유지역의 설치배경, 행정조직,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의무규정들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다. 또한, 동아시아의 다른 수출가공구 운영사례들인 중국과 대만

의 사례를 간략히 설명한다. 제 3절은 수출증진, 해외직접투자유입, 고용증진, 기술이전과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한국 수출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들의 실적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수출가공구 경험으로부터 정책적 제언을 도출한다.

제2절 배경, 행정조직과 인센티브 및 의무규정

1. 배경

1960년대 초중반부터 한국정부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하였고, 수출증진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였다. 본격적인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1973년경부터 추진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일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추구되었다. 그리고 당시 지방 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967년부터 전국 11개 지역에 공업단지를 착공하였는데, 1970년대 말에는 목포, 이리의 2개의 단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성이 완료되었다(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95 : 46-47)).

또한, 1965년 이래 서울시 구로동에 조성된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일명 '구로공단')의 성공이 한국정부로 하여금 이와 유사한 효과를 겨냥하여 수출자유지역 (export free zone: EFZ) 설치를 결심하게 했다고도 볼 수 있다. 구로공단에는 1967년까지 31개의 수출기업들이 입주하여 수출을 선도했다. 구로공단의 업종은 섬유, 완구, 전자부품 등 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이었다. 한국정부는 구로공단의 수출주도 역할을 이어받되, 더 높은 기술수준을 갖춘 외국인, 특히 일본계, 투자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수출자유지역 설치를 결심했다(김도훈 (2011)).

1960년대에 고도경제성장이 시작되긴 했지만,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따라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했고, 그 일환으로서 임해지역에 특수수출지역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1960년대 말 제기되었다. 1967년 여름 당시 전경련회장 등 기업가들이 대만 카오슝 EPZ를 방문했을 때, 방문단은 감명을 받았다. 1969년 1월 청와대의 수출진흥확대 회의에서 당시 전경련회장이 우리나라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해안지대에 특수자유지역을 만들어야 함을 제시하자, 당시 박정희대통령은 세밀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볼 것을 전경련 측에 지시했다. 전경련의 관련 프로포절을 반영하여, 1969년 7월 당시 경제기획원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한국무역협회 (1970: 85);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95: 50-51)). 또한, 미국으로부터 해외원조가 1970년 종결됨에 따라 추가적인 외자 도입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유치가 당시 정부의 관심을 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목적의 수출자유지역 설치가 추진되었다(이상철 (2008 : 58)).

마산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1969년 7월 국립건설연구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지선정조사단을 구성하였으며, 그 내부의 입지선정반에서 일단 8개 지역(울산, 포항, 인천, 부산, 마산, 삼천포, 여수, 목포)을 적격후보지로 선정했고, 입지선

정의 기준을 (1) 절대요건 변수 (용지, 항만, 국방상 문제), (2) 중요요건 변수 (용수, 동력, 노동력, 수송 및 통신), (3) 기타 관련 변수 (공항, 관련 산업 및 시설, 구역관리)로 나누고, 이들에 대해 각각 3점, 2점, 1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5개 지역 중 인천은 국방상의 문제로, 울산, 포항은 이미 중화학공업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부산은 용지 매수의 어려움 때문에 제외하였다. 1969년 8월 설립추진위원회는 서류조사와 현지조사를 거친 후 마산을 수출자유지역 예정지로 결정하였다 (한국무역협회 (1970: 85);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95: 50-51)).

마산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주요 이유는 양호한 항만 조건, 공항에 인접, 용수 및 전기의 개발 잠재력이 충분, 주변에서 우수한 노동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부산의 국제공항 및 항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었다 (한국무역협회 (1970: 99-100)). 작업반은 마산수출자유지역에 대해 125개의 공장 유치, 외자 유치액 3천만 달러, 수출액 1억 달러, 고용규모 25,000명, 연간 고용소득은 1천만 달러, 외국기술자 유치 연 200명 이상의 목표를 세웠다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95: 53, 85, 99)).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은 606,131m²의 면적에 건설되었다. 마산수출자유지역 면적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익산지방공업단지의 일부를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하였고, 1973년 1월 익산 수출자유지역관리청이 설치됨으로써 익산수출자유지역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2000년부터는 수출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개칭되면서 제조업생산과 더불어 물류기업 유치도 중요성을 두기 시작하게 되었다. 생산형 자유무역지역은 2011년 9월 초 현재 마산, 대불, 군산, 동해, 울춘에 설치되어 있으며,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은 6개소에 지정되어 있다. 수출가공구의 원래 의미를 계승하는 형태는 생산형 자유무역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과 유사한 제도로써 2003년부터는 경제자유구역(Economic Free Zone)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는 전국을 대상으로 기업정책 및 규제를 일시에 개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선진적 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그리고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2003년 당시 3개(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를 설치했으며, 현재는 6개 경제자유구역 (초기 설치된 3개+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이 설치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비교해 보자면 양자 모두 외국인투자 유치가 목표들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두 지역 모두 조세감면 혜택과 임대료감면 혜택은 동일하다. 자유무역지역은 지역 내로 수입되는 상품 및 자본재에 대해 수입관세가 유보되나,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수입되는 자본재만 기업 설립 후 3년간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은 한정된 지역에 생산과 물류 등 기업생산 활동에 특화되나, 경제자유구역은 광범위한 지역이며, 의료, 교육, 방송, 금융 등 복합주거지역으로서의 도시공간이 형성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1)).

2. 법령 및 행정조직

1969년 8월 마산이 수출자유지역으로 설치된다는 결정이 내려진 후, 당시 상공부가 그 소관부처가 되었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정부, 민간단체, 학계 대표들로 구성된 수출자유지

역설립추진위원회와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정부실무자들은 이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던 전경련의 실무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수출자유지역 내에 기업들이 입주하여 생산할 수 있는 기본 여건 조성은 모두 건설부에서 추진하도록 했으나, 수출자유지역의 관리운영은 상공부가 책임지도록 하였다. 수출자유지역의 관리측면에 있어서 입주업체의 입주신청에서부터 생산, 수출 및 송금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가능한 한 단일 창구화하여 해당 수출자유지역 관리소장이 담당, 처리하여 one-stop-service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였다(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95: 97); 김도훈 (2011)).

1970년 1월 1일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 고용의 증대 및 기술의 향상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 제 2조에 의하면 수출자유지역은 “관계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된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으로 정의되었다. 입주 업체는 역내에서 수출품의 제조, 가공 및 조립작업을 행할 수 있으나, 제품은 원칙적으로 전량을 수출하도록 규정(제 14조) 하였다(한국무역협회 (1970: 85);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95: 53)).

수출자유지역 내 입주허용 업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1991년의 개정안은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상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996년의 통상산업부 고시에서는 “입주우선업종이 아니더라도 관리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할 수 있음.”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수출자유지역 관할 사무소의 결정권을 강화해 주고 있다. 이는 입주희망 기업체의 입주 관련 시간과 노력을 경감해 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수출자유지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들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차관급들, 한국외환은행장, 학자들이 위원인 수출자유지역심의위원회를 두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공부차관이 맡았다(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 제 3조). 또한, 수출자유지역의 관리운영은 상공부장관 산하의 행정관청인 수출자유지역관리청이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 5조). 또한, 수출자유지역 내에서의 노동문제는 실질적으로 노동쟁의를 배제하였다(동법 제 18조).

2000년 기존의 수출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Zone (FTZ))으로 바뀌게 되며 일부 자유무역지역들이 추가되었다. 2004년에는 관세자유지역들이 자유무역지역에 추가되었다. 따라서 현재 자유무역지역들은 생산 중심형과 물류형으로 대별될 수 있다. 원래 의미의 수출가공구는 수출자유지역으로부터 생산 중심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국제교역활동의 촉진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며, 규제개혁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실천하는 제도로써 기능하도록 하였다(김도훈 (201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 1조는 자유무역지역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있던 “고용의 증대 및 기술의 향상에 의하여”라는 표현이 빠지고,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이 보장되는”이라는 표현과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라는 표현이 추가된다. 서비스산업과 지역개발의 측면

이 추가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이 생산 중심형 수출자유지역에 추가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센티브

가. 인프라의 제공

수출자유지역에는 운송 및 생산의 간접적인 지원을 위한 철도, 항구, 고속도로, 용수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선하여 제공되었다.

나. 조세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95: 97-98); 김도훈 (2011))

수출자유지역에서는 관리행정측면에서 다른 부처 소관 업무들을 수출자유지역의 관리소장이 대신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인 편의성이 보장되었다. 또한, 수출자유지역의 초기에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지원이 행해졌다 :

- 입주업체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설비, 원자재, 반제품에 대해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면제 (1991년부터 50% 감면)
- 입주업체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기업체로 간주되어 사업개시일로부터 처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면제되며 그 후 3년간은 소득세 50% 감면 (1995년부터는 각각 4년간과 그 후 2년간으로 변화)
- 영업세 완전 면제
- 입주기업체의 외국인 개인소득세 면제.

2000년 이후의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입주기업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세상 혜택이 주어진다 :

- 역내로 반입된 상품이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 주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 면제 혹은 환급. 단,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 감면. 구체적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 업종, 혹은 외국인 투자금액 1,000만 불이상인 제조업종이거나, 외국인 투자금액 500만 불이상인 물류업종인 경우 다음과 같은 내국세 감면 혜택을 받음; 법인세와 소득세 5년간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15년간 100% 감면.

다. 홍보

마산 수출자유지역과 당시 상공부는 초기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우선 인접국인 일본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물인 투자유치 홍보책자를 일본어 및 영문으로 발간하고, 이를 우리나라 해외공관을 통해 배포하는 한편, 현지 외국 신문지사를 통해 입주안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청은 투자유치단을 결성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투자유치설명회를 1970년 8

월-9월 중 12일만에 걸쳐 개최했다 (이상철 (2008: 68)). 이와 같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마산 수출자유지역을 초기에 대외적으로 알려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라. 금융/외환 측면

수출자유지역 내 입주기업체는 투자원금과 이윤에 대한 해외송금이 보장되었다. 투자원금은 2년 거치 후 매년 20% 범위 내에서 송금이 가능하였고, 이윤의 송금에는 제한을 받지 않았다. 2000년 이후 가동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들은 전의 수출자유지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자의 이익배당금 및 원금의 해외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에게 별개의 환율 상의 특혜가 제공된 적은 없다.

마. 토지임대료

수출자유지역의 경우 입주기업체는 수출자유지역 내 토지 및 공장건물을 주변지역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차하거나 매입할 수 있었다. 임차의 경우 10년을 기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었으며, 인근 토지임차료의 약 10-20%밖에 되지 않는 매우 싼 임차료가 책정되었다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95: 98); 김도훈 (2011)).

2011년 6월 현재 자유무역지역 경우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하며,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예상 하에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고도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지(표준공장)임대료의 경우 특히 신규 외국인투자 금액이 1,000 (500)만\$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 지분 30% 이상으로서 신규 외국인 투자 금액이 100 (50)만\$이상일 경우,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서비스 업종에 신규로 외국인 투자금액을 50 (25)만\$이상 투자하는 경우나, 기계, 자동차, 또는 공정상에 연관된 분야의 업종에 신규로 외국인투자 금액을 50 (25)만\$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10년간 임대료가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러한 혜택은 연장가능하다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2011: 3)).

바. 노동 및 고용

수출자유지역의 설립 초기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 18조에 의해 역내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군사원호대상자 취업규정을 배제했고, 역내에서의 노동쟁의는 노동쟁의조정법 중 공익사업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쟁의를 배제하였다 (한국무역협회 (1970: 85)). 이러한 조치를 통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억압하는 대신 투자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다.

사. 기타 인센티브들

입주기업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들이 1970년 이래 추가로 부여되어 왔고, 이는 입

주기업체의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에 기여했다.

- 입주허가 절차와 공장건축허가업무처리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수출자유지역관리소에서 일괄 처리
- 무역업등록 절차 면제
-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 등록, 면허 등 면제
- 생산제품의 수출입시에는 검사 없이 신고와 세관의 확인만으로 즉시 통관 가능
- 1970년대 후반 이래 역외 반입허가 신청 시 관리소를 경유하던 절차를 생략하여 통관업무를 간소화함
- 수입제한품목의 역내 수입 승인
- 수출자유지역 내에 세관, 우체국, 통신, 은행, 보험 등 관련 업무가 가능하도록 지원 시설 설치
- 정부가 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해 줌: 기숙사, 운동장, 보건센터, 공동식당 등.

자유무역지역과 다소 유사한 형태인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즉,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경영환경, 특히 외국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금지원 (외국기업이 사용하는 부지조성 자금지원, 임대료 감면, 의료/교육/주택/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 지원), 규제완화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정형곤, 나승권 (2008: 44)).

4. 의무규정

197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 9조는 수출자유지역 내에서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는 기업체이거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한 기업체이거나 한국민과 정해진 비율이상의 투자비율(한국인의 투자비율은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음.)로 공동으로 투자한 기업체여야 하되, 통상산업부 장관은 수출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의 기업체도 수출자유지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자유지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자는 (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는 기업체, (나) 수출전망이 확실할 것, (다) 외화가득들이 높을 것, (라) 제조기술이 우수할 것, (마) 노동집약도가 높을 것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시행령 제 8조). 그 중 ‘노동집약도가 높아야 한다’는 조건은 지금의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1970년대 초반 한국경제에서는 많은 잠재실업이 농촌부문에 여전히 존재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용효과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1971년 중 수출자유지역에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서 전자제품, 섬유류, 기계, 전기기기, 완구 등 22개 업종을 확정 공고하였다 (한국무역협회 (1972: 213);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95: 152)). 선정된 22개 업종들 중 상당수는 노동집약적인 업종들인데, 이는 당시 고용증진이 수출자유지역설치 목적의 하나였음을 반영한다.

수출자유지역 내 입주허용 업종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96년 개정안에 따르면 허용 업종은 10개가 명시되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 및 회계용 기기; 전기 등 가전 제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와 그 부품; 의료용 기기; 측정용 정밀기기; 사진 및 광학기

기; 시계; 자동차, 선박 및 그 부품; 항공기 및 그 부품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95: 154)). 허용업종들을 보면 대부분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정밀기기와 같이 기술집약적인 업종으로서 수출자유지역의 주요 목적이 1970년대와는 달리 기술이전에 놓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출자유지역이 2000년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개명됨에 따라 2000년 1월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법률 제 6142호), 2004년 3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법률 제7201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 11조는 외국인투자기업;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투자자, 즉, 매출액 중 50% 이상 수출의 경우,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에게 관리권자는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이를 보면 국내기업들의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 여전히 수출이 주목적 중의 하나라는 점, 그리고 물류와 지역개발의 측면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흥미있다. 또한, 이를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과 비교해 보자면 ‘수출’과 ‘기술’에 대한 조건은 유지되고 있으나,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노동집약도가 높을 것’과 같은 조건은 생략되었으며, 2000년대에 무역 흑자가 지속됨을 반영하여 ‘외화가득율’의 조건이 역시 생략됨이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의 수출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은 정부에 의해 조성되었고, 관리 되어 왔다. 정부는 조세, 임대료 등에 있어서 입주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한 대신 일정량을 수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어 해외투자유치와 수출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정부의 목표는 설치 초기 노동집약적 업종의 기업들의 유치를 포함하여 고용증진효과를 중시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고도기술이전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5. 대만과 중국 경우

가. 대만의 카오슝 수출가공구

대만의 카오슝 수출가공구는 세계에서 수출가공구로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이에 대한 설치 논의는 195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1963년 대만 정부는 카오슝 수출가공구 설치를 결정했고, 그해부터 인프라가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1965년 카오슝 수출가공구 관리원을 설치했다. 중앙정부가 수출가공구의 운영 및 관련 법규를 관할하도록 결정되었다 (Wang (1981: 29~31)).

대만의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는 수출가공구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며, 그 산하 수출가공구 관리원은 대만의 수출가공구를 관리한다. 정부는 해외직접투자유치, 국제무역의 활성화, 고용 기회 확대, 선진기술 도입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일반적인 투자인센티브와 더불어 수출가공구 내의 입주기업들에게는 기계류와 설비재, 원재료와 소비재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면제; 부동산취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들이 주어진다.

고용증진이 카오슝 수출가공구의 설치목표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노동집약 업종이 카오

송 수출가공구 내의 입주 업종으로 허용이 되었다. 그 기준은 노동비용이 생산비용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Wang (1981: 34)). 수출가공구 설치의 초기 단계에서는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들은 전량 수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자료: EPZAT, <http://en.epza.gov.tw>, 2011.10.15, WTO, G/SCM/N/155/TPKM, 2007.9.5; Invest in Taiwan, <http://investintaiwan.nat.gov.tw>, 2011.10.22).

나. 중국의 경제특구

중국의 경제특구들은 중국경제개방 초기에 설치되었으며, 자본주의 체제적인 성격을 중국에서 시험해 보는 실험실의 의미로 고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출가공구에 대한 검토가 1977년부터 행해졌고, 홍콩의 기업인들이 광둥성의 한 지역에 자신들이 투자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요청함으로써 경제특구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행해지게 되었다.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당시 조자양, 등소평과 같은 정치지도자들의 지지가 있었고, 따라서 경제특구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되었다 (Crane (1990: 20-35)).

1979년부터 1980년 사이에 광둥성과 복건성의 심천을 비롯한 4개 지역에 경제특구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이 경제특구들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수출가공구들에 비해 더 넓은 면적에 건설되었다. 현재 경제특구들은 대체로 초기 건설된 4개와 해남도, 그리고 상해 푸둥지구와 천진시 빈하이지역, 이상 7개를 지칭한다 (Zeng (2011: 5)). 1979년에 제정된 경제특구에 대한 첫 규정에 의하면 경제특구의 일상적 관리는 신설된 각 성별 경제특구청의 책임이라는 것이었다. 1980년대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권한이 점차 이관되어 가는 과정을 거쳤다 (Crane (1990: 51-55)).

경제특구의 초기부터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가 면제되었으며, 현재는 경제특구 내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그러한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경우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왔다. 현재도 경제특구 내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 특히 투자 규모와 기술 유형에 따라, 에 대해 조세 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초기부터 현재까지 특구 내의 기업으로서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10퍼센트라는 혜택이 주어진다 (Crane (1990: 32, 130); WTO (2010: Ch. III, para. 198)). 초기에는 경제특구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전량 수출의무가 있었으나, 1983년부터는 그러한 의무사항이 완화되었다. 그리고 초기에는 합자기업의 설립만이 허용되었으나, 1983년 9월 이후 이는 완화되어 전액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도 허용되기 시작했다 (Ge (1999: 56)).

제3절 운영

1. 마산의 사례

1970년 4월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청이 개청, 1971년 3월 제 1호 입주기업체가 가동을 시작하였고, 특히 가동 후 처음 15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1995년의 경우 단위 면적당 수출에 있어서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전국 산업단지 평균의 24배를 기록하였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한정된 공간과 여타 지역의 발전을 반영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이 한국의 총수출과 FDI유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후반 이래 다소 감소했다.

가. 수출

마산수출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 (이하 ‘마산지역’)의 수출액은 1972년 9.7백만\$에서, 1973년 70.4백만\$, 1975년 174.8백만\$, 1980년 628.1백만\$, 1990년 1,405.4백만\$, 2000년 4,442백만\$, 2010년 3,774백만\$로 증가해 왔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4년 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나, 1980년대 이후 그 비중이 3% 이하로 내려가고, 2010년에는 0.8% 수준이다 (아래 표 참조). 마산지역은 무역수지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와서 한국경제가 과거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던 시기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데 기여해 왔다. 마산지역의 무역흑자액은 1980년: 3억\$, 1990년: 7억\$, 2000년과 2010년에는 각각 13억\$을 기록했다.

〈표 3-1〉 연도별 수출 추이

(단위 : US\$백만)							
	1972	1973	1975	1980	1990	2000	2010
마산지역수출액(백만\$, A)	10	70	175	628	1,405	4,442	3,774
한국 총수출액(억\$, B)	16.2	32.3	50.8	170	650	1,723	4,664
A/B (%)	0.6	2.2	3.4	3.5	2.2	2.6	0.8

출처 :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95: 59-60)), <http://www.ftz.go.kr>

마산지역의 수출에서 개별 산업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전기/전자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1970년대 수출에서 전기/전자산업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례적인 것이며, 그 이유는 아마도 일본인들에 의한 투자가 중요했고, 일본이 1970년대 이래 전기/전자산업의 생산에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출대상국별로 보면, 1975년 대일 수출은 84백만\$, 대미수출은 66백만\$을 차지했다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95: 315)). 2010년에는 대일, 대미 수출은 대폭 감소하여 각각 마산지역수출의 5% 미만에 불과하며, 대중국 수출과 대홍콩 수출이 각각 26%와 12%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 브라질 수출은 2.5%를 차지한다. 1974년부터는 수출자유지역 내 생산물의 국내반입이 허용됨으로써 내국수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00년 마산 수출자유지역 총수출의 2.5%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증가하여 2010년에는 8.6%에 이르렀다 (출처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http://www.ftz.go.kr/masan>, 2011. 8. 23).

나. 해외직접투자 유입

마산지역내의 가동업체는 1971년 6개에서 시작하여, 1973년 71개, 1974년 98개로 가

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그 후 1983년까지 80-97개 사이의 업체가 가동하는 안정세를 보였다. 그 후 다소 감소하여 1985년 77개, 1995년 72개, 2011년 5월 현재 98개가 가동되고 있다. 단독투자 : 합작투자의 비율은 대체로 7:3 정도를 유지해 왔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구성을 보면 일본에 대한 극심한 의존도가 마산수출자유지역의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말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업체의 수는 각각 55개사와 43개사로서 마산지역의 초기에 비해 내국인업체의 비중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그중 단독투자기업이 15개사, 합작기업의 수는 40개사로서 합작기업의 비중이 현저히 커졌다. 과거에 비해 대일 의존도는 현저히 저하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표는 마산지역 내의 외국인투자 유입 추세를 보여준다. 1975년 83백만\$, 1995년 181백만\$, 2005년 202백만\$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138백만\$로 감소하였다. 외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6년까지는 90% 이상에서 다소 하락세를 보여 1995년에는 77%센트, 2010년에는 64%로 감소세이다.

〈표 3-2〉 마산수출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 해외투자유입액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내자	외자	합계
1973	4 (4.9)	79 (95.1)	83
1975	6 (6.9)	83 (93.1)	89
1985	29 (23.4)	96 (76.6)	126
1995	54 (23.1)	181 (76.9)	235
2005	77 (27.7)	202 (72.3)	278
2010	77 (35.8)	138 (64.2)	215

출처 :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95: 118); <http://www.ftz.go.kr>, 2011.8.13.

한국으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유입 총액은 1975년: 207백만\$, 1985년 532백만\$, 1995년 1,970백만\$, 2005년 11,586백만\$, 2010년 13,072백만\$이므로, 마산지역으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의 경우 무려 1973년: 24.8%, 1975년: 40.0%에 달했다. 그 비중은 1985년에도 18.0%에 달했으나, 1995년: 9.2%, 2005년: 1.7%, 2010년: 1.1%로 감소해 왔다. 즉, 1980년대까지는 지역 면적에 비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1980년대 이래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다. 고용

마산지역내의 총 취업자 수는 1973년 21,240명에서 증가세를 보이다 1987년 36,411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그 후 생산자동화와, 보다 자본집약적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이 반영되어 취업자 수는 감소하여 1995년 말 14,736명, 2010년에는 8,665명을 기록하였다. 마산지역의 규모의 한계로 말미암아 역외가공이 계속 확대되어 왔고, 역외가공수탁업체의 고용인원은 1976년 수탁업체 수 94개에 고용인원 4,518명에서 1995년 294업체에 7,068명으로 증가해왔다. 따라서 역외가공업체의 고용인원을 합한 총

고용 효과는 1987년 약 36,000명으로서 정점에 이르렀으며, 1995년 경우 마산지역의 고용효과는 약 22,000명에 이르렀다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95: 189-191, 195)). 2007년의 경우 마산지역의 역외가공업체 수는 314개, 이들 업체의 고용인원은 5,330명에 이르러 (김도훈 (2011)),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고용효과는 20,000명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라. 기술이전

마산지역의 기술이전 경로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외국인 기술자의 초빙, 해외파견 연수교육, 숙련 기능공의 역외배출, 역내위탁업체가 그것을 맡은 업체에 대한 생산기술지도, 원자재 및 부자재의 국산대체에 의한 기술정보제공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73~1997년 기간 중 총 해외연수인원은 12,184명, 외국인 기술자초빙인원은 7,605명에 달해 상당한 기술이전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역내업체로부터 역외업체로 기술이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95: 63, 192); 정수원 (2000: 12)). 마산지역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퇴직 후 국내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함에 따른 기술이전효과도 컸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마. 연관효과와 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

주요 대기업들을 포함하여 기계, 금속, 전자, 자동차 등 1,2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한국 최대 규모 산업단지인 창원공단이 마산지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창원공단 등 지역경제와의 연계효과가 클 수 있다. 1991년 6월 기준으로 한 이인선 (1992)의 조사에 따르면, 마산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 70개 중 52개사가 하청 (역외가공)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344개의 역외 하청기업과 계약 체결을 맺고 있었다. 정수원 (2000)에 따르면, 마산지역 입주기업체들이 1996년 중 생산과정에서 국가 전체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액수는 8,179억 원으로 마산시의 그 해 1년 예산 4,000억 원의 약 2배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공헌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부문은 국산 시설재, 국산 원부자재 구입비로서 전체의 63%인 5,229억 원이었다. 또한, 임금 1,972억 원 등이었다.

바. 산업구조

마산지역의 경우 전기전자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전기전자산업의 수출은 마산지역의 수출 중 1975년에는 53%를 차지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80% 이상을 차지하였고, 정밀기기가 약 8%를 차지했다. 전형적인 노동집약산업은 1975년 거의 10%를 차지했으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임금인상을 반영하여 1995년에는 약 2%로 감소하였다. 비록 전자, 기계, 금속과 같은 중화학분야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생산과정을 갖는 기업들이 주로 유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익산자유무역지역의 사례

1973년 10월 이리지방공업단지의 일부가 922천m²의 면적 위에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었고, 1974년 12월말 이리자유무역지역조성이 완료되었으며, 1975년 2월 이리자유무

역지역관리소가 개소되었다. 지역명칭은 그 후 익산으로 바뀌었다. 익산 일대에 보석 가공업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1970년대 후반 다수의 귀금속보석가공수출업체들이 입주되었다. 1973년에 설치된 이리/익산수출자유지역의 경우 마산수출자유지역에 비해 그 성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자유지역 면적 자체가 현저히 축소되었다. 전라북도 1999년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요청하였다. 2005년 10월 익산지역관리원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이전했으며, 2010년 12월말로 익산자유무역지역은 지정 해제되었다.

가. 수출

익산수출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이하 '익산지역')의 수출액은 1985년 80백만\$, 1995년 132백만\$, 2005년 148백만\$, 2010년 150백만\$로서 마산지역의 수출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성과를 나타내어 수출가공구로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유지해서 무역수지 개선에 미미하지만 기여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고용인원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3,000명대를 기록했으나, 그 후 점점 감소하여 2000년대에는 2,000명에도 미치지 못하였다(출처: <http://www.ftz.go.kr/gunsan>, 2011.8.12.).

나. FDI 유입

익산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수는 1975년 6개 기업에서 매년 증가하여 1987년부터 1993년까지의 기간 동안 25-27개로 유지되다가 199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 28개사로서 마산지역에 비해 약 1/4정도에 그쳤다. 또한, 1975년의 투자액은 677만\$을 시작으로 1993년 투자액은 5,612만\$로 정점을 이루다가 점점 감소하였다(김영수(1999); 문남철(2002: 254-255)). 2000년 말 1999년 당시 익산지역의 업체당 평균 투자액은 140만\$임에 반해,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업체당 평균투자액은 320만\$였으므로, 익산수출자유지역에 투자한 업체들은 상당히 영세한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김도훈(2011)).

설치 초기 외국인투자가 총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입주 외국인투자 업체들이 이탈해 감에 따라 1989년 29%, 2000년 말 8%로 그 비중이 크게 약화되었다(문남철(2002: 255)). 1981년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수가 15개로서 총 입주업체 17개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1980년대에는 외국인투자업체들이 입주업체의 과반수를 차지했고, 또한, 일본계 기업들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외국인투자업체들이 줄어 2000년대에는 내국인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다. 고용

익산지역의 고용인원은 1987년 약 5천 1백 명으로 1980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다(문남철(2002: 268)). 그러나 1980년대-1990년대의 대부분의 기간 익산지역의 고용인원은 마산지역의 1/10정도에 불과하였다.

라. 기술이전

익산지역에 입주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단순 가공업체들로서 익산지역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화강암을 이용하기 위해 입주해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을 통한 기술이전 효과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000년의 조사에 따르면 10개 설문조사 대상 업체들 중 3개의 기업들만이 소규모 인원을 일본과 독일 등에 해외연수 및 기술자 파견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역외가공의 경우 대체로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생산과정이 역외가공의 대상이었던 까닭에 역외가공 수탁업체에 대한 생산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제공 등에 의한 기술파급효과 역시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문남철 (2002: 259)).

마.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익산지역의 주변에는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지역경제와의 연계효과를 갖기 힘든 구조였다 (김도훈 (2011)). 2010년 9월말 현재 익산1국가산업단지에는 152개사가 가동되고 있고, 그 총 고용인원은 4,224명, 생산액은 10,373억 원, 수출액은 509백만\$를 기록하였다. 이는 익산자유무역지역의 배후로서의 산업공단이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배후인 창원공단에 비해 현저히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 산업구조

1999년 경우 익산지역에는 전체 28개 입주업체 중 섬유업체가 13개로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마산지역 경우 전기전자, 정밀기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대조된다. 또한, 익산지역 내의 절반을 차지하는 섬유업종투자업체들의 평균투자액은 90만\$에 불과하여 매우 영세한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김도훈 (2011)). 2000년 말 섬유업종은 전체 입주기업들 32개 기업 중 13개 기업으로 40% 이상을 차지하였다 (문남철 (2002: 256)). 2010년 말의 경우에도 30개 입주업체 중 섬유: 11개, 전기전자: 9개 등을 차지하여 섬유업종이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역내 산업이 영세한 규모이며 노동집약적 산업이었기에 변화하는 한국경제의 비교우위에 맞지 않는 낙후된 산업에 해당했다.

위와 같이 익산지역은 입주업체의 수, 고용인원, 지역경제와의 연계효과 등의 여러 측면에서 마산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미흡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1980년대 중후반 이래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성과는 매우 저조해졌다 (김영수 (1999)). 익산지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수출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이 기대하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익산자유무역지역은 2010년말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되었다.

3. 최근 조성된 자유무역지역들

가. 군산자유무역지역

생산중심형 자유무역지역으로서 군산자유무역지역과 대불자유무역지역이 비교적 활발

히 가동되고 있다. 군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2000년 10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1,256천m²의 면적에 조성하여, 2005년 9월 건축공사가 완공되었다. 군산자유무역지역은 군산 지역이 중국시장 진출 및 국제물류 전초기지로 지목되고 있으므로, 중국시장 진출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출처: <http://www.ftz.go.kr/gunsan>, 2011.8.12.).

입지조건인 경우, 현대중공업, 한국GM, TATA대우상용차 공장,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 등이 인접해 있다. 향후 자동차 및 선박, 기계관련 기업들이 유치되는 경우 지역경제와의 연계효과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군산외항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인근 군산공항은 국제공항이 아니며, 철도망이 군산시내까지만 연결되어 있다. 군산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후 산업단지는 창원단지가 인근에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에 비해 현저히 약한 편이다. 그러나 과거의 익산자유무역지역이 갖는 내륙에 위치해 있다는 약점을 극복하고 있다.

2010년 말 기준 입주 기업 수는 30개사이며, 가동 기업 수는 18개사이다. 입주 기업 수 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는 15개사로서 반을 차지하나, 실제 가동 중인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수는 5개사에 불과하다. 2010년 말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투자액은 총 투자액의 약 14%에 불과하여, 군산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유치의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한 편이다.

2011년 6월 말 현재 고용인원은 1,000명을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그 중 80% 이상은 기계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군산자유무역지역은 기계와 자동차산업을 주요산업으로 지정해 놓고 있으며, 입주기업들 중 5개사가, 그리고 750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열교환기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수출액은 2008년 9백만\$에서 2010년에는 1.4억\$로 급증했다.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생산액은 대불자유무역지역 생산액의 약 40% 수준이다. 인근 국가산업단지에 자동차제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군산자유무역지역은 향후 자동차부품 관련하여 발전 가능성을 보인다.

2010년 말 기준으로 볼 때, 군산자유무역지역에 투자된 기업들 중의 29개사는 대부분 자본집약적인 중공업에 속한다. 이는 전기전자산업이 중심인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군산자유무역지역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이나,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대불자유무역지역에 비해 실적이 낮은 편이나, 최근 3-4년간 실적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더 발전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 대불자유무역지역

대불자유무역지역의 경우 2002년 11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5월 시설공사가 완공되었다. 대불자유무역지역은 서남권 국제경제활동의 거점지역 육성의 필요성, 해외직접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 도모를 목표로 설치되었다 (<http://www.ftz.go.kr/daebul>, 2011.8.11.). 대불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투자된 해외기계, 자동차, 철강, 조립금속제조업을 투자유치 우선 업종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주로 중공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대불자유무역지

역 지정 고시, 2009.06.05).

대불자유무역지역의 입지조건을 보자면, 무안국제공항이 인근에 위치하며 (중국 항로 있음.), 서해안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목포신항은 2-3만 톤급 4선 접안이 가능하며, 자체 내에 대불 부두 등이 갖춰져 있어서 마산자유무역지역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다만, 1988년 이래 대불산업기지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후 산업단지는 마산자유무역지역에 비해 약한 편이다.

2010년 말 기준 입주기업의 수는 35개이며, 그 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는 30개이나, 해외직접투자유입액은 4,100만 달러로서, 2011년 7월말 국내투자액은 총 투자액의 약 92퍼센트를 차지했다. 따라서 대불자유무역지역은 해외직접투자유입의 측면에서 성공적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외의 기준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실적을 보인다. 예를 들어 2011년 7월 고용인원은 3,100명, 입주율은 95%에 달했다. 그리고 2010년 수출액은 1.7억 달러,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액수는 1.2억 달러, 반입한 액수는 8천만 달러에 해당했다.

업종별로 보자면, 조선 산업은 대불자유무역지역 수출액의 98%를 차지했다. 역외가공에 관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인근 대불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조선 산업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역외가공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주기업 35개사 중 25개사는 조선 산업 관련 기업들이며, 입주기업들 중의 약 80%는 조선과 기계 산업과 같은 중공업에 해당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대비된다.

다. 기타 생산형 자유무역지역들

위에서 설명된 자유무역지역들 외에 강원도 동해와 전라남도 울춘에 제조업 중심의 생산형 자유무역지역들이 1년여 전인 2010년 조성되었다. 이 두 자유무역지역들은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실적은 미미하며,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셈이다.

라. 물류형 자유무역지역들

현재 국토해양부에 의해 관할되는 여섯 개의 물류형 자유무역지역들이 있다. 이는 광양항, 부산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평택/당진항과 포항항이다. 2011년 12월 현재 물류와 같은 한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이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 가능하나, 성과가 미미하여 무의미할 정도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제4절 정책적 제언

수출가공구의 세계적인 성공사례 중 하나로서 한국이 자주 거론되어 왔다. 그렇지만 실제 한국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모두 보여준다. 이러한 한국의 경험은 브라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1. 정책

투자기업들의 시간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그리고 변화하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목표를 적시에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2. 행정조직

World Bank (2008)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수출가공구들이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수출가공구들에 비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나,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수출가공구가 효율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출가공구의 설립 및 운영의 단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같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시될 필요가 있다.

3. 입지와 운송비용

수출가공구의 설정에 있어서 운송비용 감소 측면의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항구를 갖고 있는 해변에 수출가공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내륙에 설치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항구까지 철도 및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건설하여 운송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4. 인센티브

정부는 잠재적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상황에 따라 인프라 구축, 조세나 임대료 상의 인센티브 등이 될 수 있다.

5. 홍보

정부는 수출가공구를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홍보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6. 수출실적요구 기준

외국인투자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 브라질의 수출실적요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수출의무기준을 두지 않고 있으며, 국내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의무 기준은 50퍼센트이다.

7. 수출가공구의 규모

구역 내의 인프라 건설의 가능성 범위 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규모의 면적이 수출가공구로서 조성될 필요가 있다.

8. 산업

수출가공구의 산업구조 경우 경제의 현재 (혹은 한 단계 앞선) 비교우위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권유된다.

9. 인근 산업단지와 관계

연계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측면에서 수출가공구와 인근 산업단지 간의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10. 역외가공

역외가공에 의한 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브라질의 경우 수출가공구 인근 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생산원료로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11. 고용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실업율이 높은 지역에 설립되는 수출가공구의 경우 설치 초기 고용증진으로 인해 실업자 수가 감소함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

12. 기술이전

수출가공구에 대한 투자유치가 안정화한 단계에서는 입주 기업 선정시 선진기술 이전 측면을 특히 더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 김도훈, “수출자유지역의 설치”, KSP모듈화 컨퍼런스 발표문, 2011. 7.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자유무역지역현황 (군산-김제), 2011. 6.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http://www.ftz.go.kr/gunsan>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http://www.ftz.go.kr/daebul>
-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마산수출자유지역 25년사, 1995.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http://www.ftz.go.kr/masan>
- 문남철, “익산자유무역지대의 기능약화와 입지여건의 문제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 5권 제 2호, 2002.
- 이상철,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초기 발전과정”, 경제발전연구, 제 14권 제 2호, 2008: 51-90.
- 이인선, “마산 수출자유지역 하청제 구조와 입지분포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제 28권, 1992.12: 57-82.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http://www.ifez.go.kr>, retrieved 2011. 8. 31.
- 정수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마산수출자유지역의 발전 방안”, 무역학회지, 제 25권 제 4호, 2000.1: 3-28.
- 정형곤, 나승원,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과제, KIEP연구자료 08-03, 2008.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1970, 1972.
- Crane, George T.,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M. E. Shapr: New York and London, 1990.
- Ge, Wei, Special Economic Zone and the Economic Transition in China, World Scientific, 1999.
- Wang, Wei-ming,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Kaoshiung Export Processing Zone (KEPZ), 1965-1975, Asia and World Institute: Taipei, 1981.
- World Bank, Special Economic Zones: Performance, Lessons Learned, and Implications for Zone Development, World Bank working paper, 2008.
-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rade Policy Review – People's Republic of China, WTO: Geneva, 2010.
- Zeng, Douglas Zhihua, “How Do Special Economic Zones and Industrial Clusters Drive China's Rapid Development”,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5583, March 2011.